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Ⅱ)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이기평 | 김영미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Ⅱ)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for small business owner · self-employed persons**

연구책임자 : 이기평(부연구위원)
LEE, Kipyong

공동연구자 : 김영미(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Kim, Youngmi

2018. 10. 31.

연 구 진

총괄연구책임 한정미(선임연구위원)
이기평(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외) 김영미(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심의회원(원내) 김은정(연구위원)
백옥선(부연구위원)
최유경(부연구위원)

심의회원(원외) 맹수석(충남대학교 교수)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 대두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취약한 사회안전망 구축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1인 자영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함
 - 전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 전체 취업자 중 비율은 21%(무급가족종사자 포함할 경우 약 25%)
 - 1인 자영업자 수가 약 407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약 72% 차지
- 특히 1인 자영업자는 사실상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작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독립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자영업자에는 고용주에 대한 인적, 경제적 종속관계가 없는 전통적인 독립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 사이에 있는 종속적 자영업자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주로 독립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다루었으며 종속적 자영업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소개하는 수준에서 검토하였음

II. 주요 내용

▶ 현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현행 산재보험법은 임금근로자의 재해보호를 주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호는 특례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산재보험법상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제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제도: 독립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주와 1인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적용범위 등에서 약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로써 법령에 적용대상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의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에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높은 보험료 부담,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홍보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적용범위: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 상시근로자 수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 고용원의 유무를 기준으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가입업종을 제한하는 제도 설계는 조사대상 국가 중 일본이 유일하며, 국가별로 세부 적용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라는 용어로서 적용범위를 규정

- 보험료: 일본의 사례를 주로 검토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최저 보험료 등급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등급구간이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보험가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보험가입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가입절차: 일본의 사례를 통해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사업주의 가입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함. 이를 참고하여 우리도 보험사무대행기구 또는 단체를 통한 가입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번거로움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

▶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단기적으로는, 첫째, 적용범위에서 1인 자영업자의 가입업종제한을 폐지하거나 아예 독일처럼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로 적용범위를 일반화 함
 - 현행 우리의 고용원 유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업종제한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업종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이 부족함
 - 외국의 사례에서도 일본을 제외하면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둘째, 보험료와 관련하여 다양한 보험료 등급 구간을 설정, 최소 등급의 보험료를 더 낮게 책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선택권을 확대
- 셋째, 일본의 사례처럼 보험가입 시 보험대행기구나 업종단체를 통해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가입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제안

- 가입률 저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업주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가입절차라고 판단되기 때문
- 장기적으로는 현행 임금근로자 보호 중심의 산재보험법체계를 임금근로자, 독립자영업자, 종속적 자영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취업자’ 또는 ‘피보험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체계의 전환을 제안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정부 및 유관기관의 입법 및 정책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 다룬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자료는 향후 관련 학계와 실무계의 후속 연구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주제어 :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법, 적용범위, 보험료, 가입절차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persons is becoming a social and national task that can not be delayed any longer. In this regard,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persons are being discussed as important issues.
 - The ratio of self-employed among all the workers in Korea is very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self-employed workers who work alone occupy the majority.
 - The total number of self-employed workers in Korea is about 5.7 million, the proportion of the total employed is 21% (25% if unpaid family workers are included)
 - The number of self-employed workers who work alone is about 3.67 million, accounting for about 72% of total self-employed.
 - In particular, self-employed workers who work alone are exposed to work-related risks similar to those of wage workers, but they are not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o the need for protection for these is very high.

- ▶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for the self-employed, especially independent self-employed,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 The self-employed can be divided into traditional in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who have no personal or economic dependency on their employers, and 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who are between wage workers and in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 In this study, we mainly dealt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for in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II. Major Content

- ▶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wage workers and permits limited insurance for self-employed persons belonging to non-wage workers.
 - The special cases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The special cases system for special form worker ar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self-employed in Korea.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pecial cases system:
 - Applicable to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for in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less than 50 full-time workers and self-employed workers without employees are designed. In the range of industries that are allowed to join, the former is not limited, but the latter is limited to some industries.
- The employer can select the desired insurance grade and voluntarily sign up.
- The special cases system for special form worker:
 -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 Only the special form workers listed in the Act shall be insured.
 - It is an obligation to join, but it can be exempted by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form worker himself
 - Premiums are paid by employer and special type worker in half.
- The biggest problem of the current self-employe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s that the insurance rate of the self-employed is very low an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self are being raised.
- The causes of problems are limited coverage, high insurance premiums, and hassle of enrollment procedures.
- ▶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present system, we survey and analyzed foreign self-employe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The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In the scope of application, except for Japan, there is no system that restricts the subscription type for self-employed person in one person, depending on whether

there is an employment source in Germany, Italy or Australia. Accordingly, the design of the different coverage area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employee needs to be improved.

- Regarding the burden of premiums, we have mainly examined the case of Japan. In the case of Japan, it is evaluated that there i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insurance coverage rate by lowering insurance threshold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small self-employed businesses because the premiums of the lowest grade are relatively inexpensive and the grading ranges that the employer can select are variously designe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design of such premium class sections.
 - Regarding the enrollment procedure, the case in Japan show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make convenience for the employer in order to increase the insurance coverage of self-employed workers. The subscription system through an agency or a special affiliation organization in Japan can be a great reference for improvement of our enrollment procedure by the employer.
- ▶ On the basis of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omparative review of foreign cases, we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elf-employe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by short-term and long-term approaches.
- First, in terms of scope of application, it is proposed to abolish the restriction of the self-employed of one self-employed person.

-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sector restriction for self-employed workers with employees, the restriction on the self-employed sector is unreasonable.
-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except for Japan, the scope of application is rarely limited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employees.
-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insurance coverage of self-employed persons in relation to premiums, we suggested that the premiums of the minimum grade should be lowered.
- Third,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low self-employed participation rate is that it is a troublesome procedure for the employer to directly insure under the current system. As in the case of Japan, it is proposed that the enrollment process be greatly improved, for example, by enrolling through insurance agency or industry group when insured.
- In the long run, it proposes to shift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law system centered on the current wage worker protection to the legal system that applies to 'employed' or 'insured' including various types of people such as wage workers, in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and 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III. Expected Effects

-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legislative and policy formulation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s that are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the self-employe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as part of the polic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of the self-employed.

- The relatively detailed data on the foreign self-employe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cover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reference material for the follow-up studies of relevant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the future.

▶ **Key Words** : Small business owners, self-employed, independent self-employe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premium, Application Procedure

목차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II)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3절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분석 / 27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념	29
1. 자영업자의 개념	30
2. 소상공인의 정의	39
3. 소 결	43
제2절 자영업자·소상공인 현황	45
1. 자영업자 현황	45
2. 소상공인 현황	53
제3절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55
1. 개 관	55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	57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	76
4. 주요 특징 및 문제점	85

제3장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 97

제1절 개 관	99
제2절 일 본	102
1. 자영업자 개념	102
2. 자영업자 현황	103
3. 자영업자 재해보험제도 및 운영 현황	107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55
제3절 독 일	159
1. 자영업자의 개념 및 유형	159
2. 소상공인·자영업자 현황	164
3.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및 운영 현황	176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99
제4절 이탈리아	201
1. 자영업자의 개념	201
2. 자영업자 현황	205
3.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및 운영 현황	207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22
제5절 호 주	224
1. 개 관	224
2. 남호주의 자영업자 노동재해보험제도	225
3. 그밖의 주의 자영업자 노동재해보험제도	231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34

목차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II)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6절 국가 간 비교	235
1. 자영업자 개념정의 관련	235
2.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도입 현황 총평	236
3.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쟁점 비교	239

제4장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 259

제1절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강화 필요성 검토	261
제2절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263
1. 적용범위 확대	263
2. 보험료 등급의 다양화, 최저보험료 인하	269
3.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단체가입을 통한 가입절차 편리화	270
제3절 장기적 개선방향	273

제5장 결 론 / 275

참고문헌	281
부 록	293
1.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서 양식	295
2. 일본의 산재보험특별가입신청서 양식	296
3. 일본의 노재보험특별가입자 현황(2016년)	298
4. 일본의 전국 제2종특별가입을 위한 특별가입단체(예시)	299
5. 일본 도쿄도 노동국 일인친방 등 단체 명부(예시)	302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당초 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함)가 점차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임금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업주에게로 확대적용 되어오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산재보험제도가 사업주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확대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론적, 현실적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업유형, 고용형식 등의 다양화로 인해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에 포섭되지 않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취업환경에 있는 중간지대의 종속적 자영업자와 같이 사실상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거나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예컨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상공인, 1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수가 전체 취업자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자영업의 위기가 반복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자영업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사업주와 특수형태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특례형식으로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례형식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근로자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예외로 인식되어 제도가 설계된 관계로 적용대상이 제한되고 있고, 실제 가입률 또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라 본래 의도했던 자영업자 산재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및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국가의 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 및 비교분석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연구로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황 및 실태, 현행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제도현황 및 문제점, 관련 해외입법사례 등을 주요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현행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산재보험법 제124조에서 구성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제도와 바로 이어서 제125조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중소기업사업주 가입특례제도에서 중소기업사업주는 종속관계가 없는 독립자영업자를 상정한 제도설계로 보여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특례는 임금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의 중간적 성질을 가진 종속적 자영업자, 소위 유사근로자의 보험가입관계를 규정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 즉 독립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전반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가입 문제는 이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주제로서 다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자영업자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기에

1)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그들의 근로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연구는 제도 일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개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환경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등 상당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보험설계사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공적 산재보험보다 선호한다는 설문결과가 있다(정원석, 박정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2017.11.6., 1쪽). 반면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의 설문조사에서는 공적 산재보험 가입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문조사)

함께 다루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두 제도의 도입취지나 구체적인 제도설계 및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달리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함께 병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논의의 초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유사사례 비교연구를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대한 해외사례 선행연구가 상당히 있지만 그 내용이 개괄적이라 구체적인 적용범위, 보험료 산정방식, 운영실태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해외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이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두 번째 핵심적인 연구범위는 해외 관련 사례에 대한 심층조사로 설정하였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산재보험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현황, 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 현황, 수급자 현황, 보험료 계산을 위한 보수액, 보험요율 등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각종 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및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만, 일본을 제외한 외국의 경우 산재보험 관련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국가 간 통계 분석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련 법제도 분석을 넘어 운영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영업자 산재보험 관련 통계는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원내외 공동연구 형식으로 수행되었으며 각 연구자의 책임집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담 당
제1장 서론	이기평
제2장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분석	
제3장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제1절 개 관	
제2절 일 본	
제4절 이탈리아	
제5절 호 주	김영미
제6절 국가 간 비교	
제3장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이기평
제3절 독 일	
제4장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이기평
제5장 결론	이기평

한편, 본 연구는 과제선정 단계부터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다양한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의 협의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과제를 제안 받아 산재보험 정책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구체적인 연구수행방향을 협의하면서 수행하였으며 연구성과발표를 통해 이들 기관 및 관련 학계와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연구 진행 전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주로 외국사례분석에 중점을 두고 조사대상 국가의 전문가와의 연구협력도 빈번하게 수행되었다. 외국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이들 전문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또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노동, 사회보장, 산업안전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산관학 협력 연구의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추진 현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주요 연구 추진 현황

날 짜	주 제	세부 내용
'18.1.26.	과제발굴 회의	중소벤처분야 연구과제 발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측으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산재보험제도, 특히 관련 해외사례 조사분석을 제안 받음
'18.2.6.	정부주무부서와 협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와 과제수행의 필요성, 수행방향 등에 관해 협의하여 연구계획에 반영
'18.3.22.	과제수행 방향 논의	과제선정 후 처음 개최한 전문가 워크숍으로서 연구 범위, 방법 등 연구수행 전반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18.5.8.	해외사례검토(1):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1차 조사대상 국가로서 해당 국가 전문가들에 의한 1차 자료 조사결과 발표 및 추간 보완사항 공유
'18.5.11.	우리나라 산재보상보험법 주요 내용 개관	산업재해분야 전문가로부터 현행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의견 수렴
'18.6.21.	1인 사업장 재해현황 통계 분석	산업재해 분야 전문가로부터 1인 사업장 재해현황 통계 자료 확보 및 분석, 1인 사업장의 높은 산재비율 확인
'18.7.4.	해외사례검토(2): 독일, 일본, 프랑스	독일, 일본에 대한 추가조사 자료 발표, 프랑스에 대한 1차 조사 자료 검토
'18.7.24.	해외사례검토(3): 호주,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영국, 미국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논의,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 대한 추가조사 내용 공유
'18.10.26.	성과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고서 초안 보고회 개최를 통해 초보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18.10.29.	최종심의	최종심의 의견 수렴 후 반영, 최종 수정 후 발간

제2장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분석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념

제2절 자영업자·소상공인 현황

제3절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제2장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분석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자영업자 및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있어야 이들에 대한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향후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상공인은 글자 그대로 소규모로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나름의 정의를 두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통계청이나 관련 법령에서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가 없어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져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산재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특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 용어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관계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논하는데 있어 비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매우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의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하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논함에 있어 가장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개념부터 살펴보고 나머지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하나씩 검토하고자 한다.

1. 자영업자의 개념

자영업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자영업자란 “자신이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²⁾으로 이러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다루는 경우 이와 같은 광의의 자영업자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이나 제도의 목적에 따라 수정된 자영업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와 관련이 있는 통계상 자영업자의 개념, 관련 법령상 자영업자 개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통계실무상 자영업자 개념

자영업자 통계에서의 자영업자는 법인격이 없는 사업체, 즉 개인 사업체의 사업주와 조식이 아닌 개인 단위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의 2017년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자영업자를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특정한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작자, 배우, 프리랜서 등(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³⁾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정의를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특정한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작자, 배우, 프리랜서”라는 두 가지

2) <http://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2018. 10. 30. 검색)

3)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조사용어, 자영업자(지역별고용조사 2017년)(<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iemInputNo=0000138378698>(검색일: 2018.4.3.)) 한편, 상기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조사용어, 자영업자(문경시사회조사 2015년)에서는 자영업자의 개념을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iemInputNo=0000111630548> (검색일: 2018.4.3.)

유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개인 사업체”란 두 가지 개념적 특징을 가진다. 하나는 법인형태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자, 배우, 프리랜서와 달리 어떤 조직체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⁴⁾ 이에 따라 통계상 자영업자의 정의(범위)에는 법인사업체의 사업주를 제외한 개인사업체의 사업주와 사업체가 없이 혼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계작성 시 자영업자를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역시 자영업자의 정의 또는 범위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서도 자영업자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단독 자영업자) [Own-account worker]란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개인사업자, 작가 등 예술인, 농부·어부, 행상·노점상, 프리랜서 등이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 외에 유급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분류한다.”고 설명되고 있다.⁵⁾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Employer]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람(자영업자)이 해당된다.”고 설명된다.⁶⁾

4) 예컨대 통계청 조사용어 중에서 사업체 (어업조사 1969년)를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경영체제하에 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개개의 경제단위”로 정의하고, 조직형태로서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의 법인으로 구분하고, 이중 개인사업체에 대해서는 “주로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이 없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iemInputNo=0000094332536 (검색일: 2018.4.3.)]. 또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경제총조사 규칙> 제2조(정의) 제2호에서도 ‘사업체’를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정의하여 사업체는 하나의 조직으로 설명하고 있다.

5)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i/6/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2&cd=L053 (검색일: 2018.3.5.)

6) http://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2&keyWord=1&cd=SL3974&sT= (검색일: 2018.3.5.)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보면, 먼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정의에 공통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통계청 자영업자 정의보다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파트너(동업자)는 고용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의 범위에 개인사업자만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와 비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종사상 지위에 따라 취업자를 구분하는데, 이때 취업자는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고 이중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로 나누고 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범위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상 무급가족종사자란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 업무에 종사하며 임금 또는 급여를 받지 않는 자”⁷⁾를 말한다. 기타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지만 그 유형으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종속적 자영업자’ 등 독립적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비임금근로자를 기타 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의 통계상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취업자의 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다.

7) 통계청 조사용어 종사자 유형 구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16년)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iemInputNo=0000152675048> (검색일: 2018.4.3.)

[그림 2-1]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의 유형



자료: 통계청 통계표준용어⁸⁾

이외에 자영업자 관련 용어 사용에 있어 ‘자영업자’, ‘자영업주’, ‘자영자’ 등의 용어가

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i/6/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2&cd=L053 (검색일: 2018.4.6.)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데, 의미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자와 자영자를 혼용하는 경우⁹⁾와 자영업자와 자영업주를 혼용하는 경우¹⁰⁾가 발견된다. 다만 자영업자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대신 자영업주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영업주에 고용주와 자영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사용하여 자영자는 자영업주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¹¹⁾ 이와 유사한 용례로 “자영업주는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에 따라 자영업자와 고용주로 구분”한다고 서술한 경우가 있는데, 앞의 ‘자영자’ 용어 대신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¹²⁾

(2) 자영업자의 법적 개념

우리의 현행 법령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법령에서 자영업자 용어를 사용하면서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해당 법령에서만 사용되는 자영업자 정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

9) 예컨대 “자영자(자영업자, own-account worker)”란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이다. 지은실, 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9XXX9202081> (검색일: 2018.4.3.).

10) 예컨대, 통계청의 2016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종사자 유형 구분”에서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그리고 기타종사자”로 구분하여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서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자영업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인사업체는 경영자 모두 자영업주로 간주, - 『자영업주』에 1명 이상이 조사되면 반드시 ‘조직형태’ 문항에서는 『개인사업체』이어야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경우이다.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iemInputNo=0000152675048> (검색일: 2018.4.3.)

11) 예컨대, 통계청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영업자 현황 부분에서는 “자영업자 현황”이라는 큰 제목하에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을 설명하는 표에서는 “자영업자”로 표기하고 있으나 그 아래 지표 개념에서는 “자영업주”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를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검색일: 2018.4.3.)

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방안 연구”, 2017.9., 15쪽.

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¹³⁾고 규정하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5년 이내인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닐 것, 고용보험법 제2조상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이 아닐 것 등 고용보험가입 자격이 있는 자영업자에 포함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¹⁴⁾

이외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비용 부담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임을 규정하면서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¹⁵⁾ 자영업자에 대한 용어정의는 없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소규모자영업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은 소규모자영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매장면적과 매출액 기준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어¹⁶⁾ 앞서 언급한 보험료징수법상 자영업자 범위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

(3) 국제기구에서의 자영업자 개념

자영업자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주로 국제기구에서의 자영업자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LO 국제고용상태분류표(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에 따르면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유형은 크게 유급고용업(Paid employment jobs)에 속하는 임금근로자(Employees), 자영업(Self-employment Jobs)에 속하는 고용주(Employers),

13)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 5.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상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규정도 상기 보험료징수법상 자영업자의 적용범위 규정과 동일한 형태인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의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외에 기본적인 규정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

15)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비용의 부담)제2항“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6) 연천군 소규모자영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2014. 12. 30. 제정, 2018.3.7. 일부개정) 제2조에서 ““소규모자영업체”란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의 사업장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일반 및 간이과세업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008년 제정)제2조에서도 ““소규모자영업체”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의 사업장에서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일반 및 간이과세업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가계정취업자(Own-account workers)¹⁷⁾, 기여하는 가족종사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 및 생산자협동조합의 회원(Members of producers' cooperatives), 그리고 ‘지위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취업자(Workers not classifiable by status)로 구분하고 있다.¹⁸⁾

여기서 “자영업(Self-employment jobs)이란 보수가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로부터 파생된 이익(또는 잠재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일자리”로 정의되고, “그 재직자(incumbents)는 해당 기업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결정을 위임한다.”고 설명되고 있다.¹⁹⁾ 즉 자영

17) ‘Own-account workers’에 대한 국내 번역용어가 제각각이다.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통계프리즘, 자영업자의 일자리 추이, 월간노동리뷰, 2009년 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89쪽)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일부 문헌에서는 ‘자가 계정 근로자’(최정수, 박현정, 비공식취업통계 개발 (I), 2005년 12월, 101쪽)로 번역하고 있다.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번역하는 경우 “OECD 기준 자영업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생산자협동조합 회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방안 연구”, 2017.9., 15쪽.)이라는 번역문에서 보듯이 상위 개념인 자영업자라는 용어가 하위 개념과 함께 사용되는 불합리한 문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Worker’를 ‘근로자’ 또는 ‘노동자’로 번역할 경우 동일하게 번역되는 ‘Employee’와 혼동될 수 있어 우리말 번역 용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Cambridge Dictionary”에 따르면 ‘Worker’란 “someone who works in a particular job or in a particular way”, “someone who works for a company or organization but does not have a powerful position”, “a person who is paid for using effort to do something”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ILO 자료에서는 ‘고용주(Employers)’를 정의할 때 고용주를 ‘취업자(worker)’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Worker의 용례를 볼 때, Worker 개념은 임금근로자(Employee),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모든 비임금근로자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은 뒤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의 산재보험법에서 적용대상을 ‘Worker’로 규정하고 이 ‘Worker’에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기타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Worker’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를 의미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Worker에 대한 적절한 번역용어를 찾기가 어려우나 ‘일하는 사람’, ‘취업자’, ‘종사자’, ‘작업자’ 등으로 번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고에서는 ‘취업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들 용어를 적절히 선택한다. 예컨대 무급가족종사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에서와 같이 이미 굳어진 표현일 경우 기존 용어를 사용한다.

18) 22. The structure of ICSE-93 can thus be represented as follows:

Paid employment jobs

Employees

Self-employment jobs

Employers

Own-account workers

Contributing family workers

Members of producers' cooperatives

Workers not classifiable by status

Review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David Hunter, ILO, ESA/STAT/AC.289/35, 13 May 2015, p.7.

19) Self-employment jobs are defined as ‘those jobs where the remuneration is directly dependent upon the profits (or the potential for profits) derived from the goods and services produced. The incumbents make the operational

업자는 임금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책임 하에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로부터 나온 이익을 보수로 받는다는 광의의 일반적인 자영업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중 한 유형인 고용주란 그들 자신의 계정으로 또는 한 명 또는 소수의 파트너와 함께 자영업에서 일하면서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취업자(workers)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⁰⁾ 이때 고용된 유급종업원은 상시근로자(on a continuous basis)를 의미한다.²¹⁾ 자가계정취업자(Own-account workers)란 자영업에서 그들 자신의 계정으로 또는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파트너들과 일하고, 기준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 일할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 기간 동안 비계속적인 고용형태(on a non-continuous basis)로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자가계정취업자로 본다.²²⁾ 이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가계정취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각각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OECD 역시 이러한 ILO ICSE 분류 및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²³⁾

EU의 경우, 우선 EU 통계사이트(eurostat)에서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는 그들

decisions affecting the enterprise, or delegate such decisions while retaining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of the enterprise. Review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David Hunter, ILO, ESA/STAT/AC.289/35, 13 May 2015, p.7.

- 20) “Employers are workers who, working on their own account or with one or a few partners, in a self-employment job have engaged one or more persons to work for them in their business as employee(s).” Review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David Hunter, ILO, ESA/STAT/AC.289/35, 13 May 2015, p.7.
- 21) 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adopted by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January 1993), para.9.
- 22) “Own-account workers are those workers who, working on their own account or with one or more partners, hold the type of job defined as a self- employed job, and have not engaged on a continuous basis any employees to work for them during the reference period. It should be noted that during the reference period the members of this group may have engaged employees, provided that this is on a non-continuous basis. The partners may or may not be members of the same family or household.” 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adopted by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January 1993), para.10.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stat/documents/normativeinstrument/wcms_087562.pdf (검색일: 2018.4.6.); Review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David Hunter, ILO, ESA/STAT/AC.289/35, 13 May 2015, p.7.; OECD 또한 이와 같은 ILO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http://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1986> (검색일: 2018.4.3.)
- 23) OECD Factbook 2015-201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p.126.

의 주요 활동이 유급고용에 있지 않는, 즉 임금근로자(employees)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신이 일하는 비(非)법인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소유자라고 정의되고, 이러한 자영업자에는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 집에서와 같이 통상적인 일터 밖에서 일하는 외부취업자(outworkers);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취업자 자신의 최종적인 사용 또는 자신의 자본형성을 위해 전적으로 행하는, 생산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⁴⁾ 또한 EU에서는 자영업 활동의 특징으로 개인적 요소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과 직업적인 활동을 완수하는데 있어 독립성과 관련된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²⁵⁾

이외에 EU가 제정한 법령에서 자영업자에 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자영업 능력 및 폐업 활동에 종사하는 남녀평등대우 원칙의 적용”에 관한 Council Directive의 적용범위에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s)를 포함하면서 자영업자를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조건하에 그들 자신의 계정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²⁶⁾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EU에서 자영업 및 자영업자의 정의, 자영업자의 범위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영업노동의 형태(The self-employment form of work)는 동질의 취업자(homogenous workers)로 묶을 수 없고, 국가들 간에 자영업(self-employment)이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정의들이 존재함도 인정하고 있다.²⁷⁾

24) A self-employed person is the sole or joint owner of the unincorporated enterprise (one that has not been incorporated i.e. formed into a legal corporation) in which he/she works, unless they are also in paid employment which is their main activity (in that case, they are considered to be employees). Self-employed people also include: unpaid family workers; outworkers (who work outside the usual workplace, such as at home); workers engaged in production done entirely for their own final use or own capital formation, either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Self-employed> (2018.04.18. 검색)

25) <https://en.wikipedia.org/wiki/Self-employment> (검색일: 2018.4.9.)

26) Article 2 Scope (a) self-employed workers, namely all persons pursuing a gainful activity for their own account,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by national law. DIRECTIVE 2010/4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July 2010,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men and women engaged in an activity in a self-employed capacity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6/613/EEC.

27) 예컨대 자영업은 기업의 법적 지위, 해당 기업이 피고용인을 고용하는지 여부(고용인 대 자가계정근로자), 그리고 / 또는 해당 기업이 운영하는 영역에 따라 다양한 하위 유형들로 정의되며, 일부 국가들은 또한 자영업자 지위(self-employed status)와 종속적 자영업자(dependent self-employed)의 지위(예컨대 스페인, 이태리), 자영업자가 오직 하나의 고객을 위해 일하는 경우를 구별한다고 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Self-employment> (검색일: 2018.4.9.)

이상에서 보면,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로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를 사용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범위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EU의 자영업자 범위에 법인기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우리의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자영업자 범위와 일치한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일반적인 자영업자라는 용어 외에 산재보험제도를 논할 때 ‘종속(적) 자영업자’와 ‘독립(적) 자영업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의 중간에 존재하는, 즉 자영업자의 성질과 임금근로자의 성질을 모두 가진 특수한 취업자를 말한다. 이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라고 하는 경우 독립적 자영업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의 정의에 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이에 따라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은 첫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포함되면서, 둘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조건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²⁸⁾에 따른 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말한다.²⁹⁾³⁰⁾

2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두 번째 조건인 상시 근로자 수의 경우 소상공인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³¹⁾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다.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소상공인법상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업종별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³²⁾

[표 2-1]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의 정의에 포함되기 위한 업종별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상시 근로자 수	평균매출액 등
1. 식료품 제조업	10인 미만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2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30)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개정 2017. 10. 17.>. 중소기업 정의를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2015년 말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매출액 기준으로만 중소기업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의 폐지 이유로 중소기업 지위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 유발 방지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일부 업종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전병욱,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법률, 2017, 748쪽.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32) 통계청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만 적용하고 평균매출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99 (검색일: 2018.4.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상시 근로자 수	평균매출액 등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17.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1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인미만	
19. 수도업				
20. 농업, 임업 및 어업				
21. 광업	10인 미만	80억원 이하		
22. 담배 제조업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상시 근로자 수	평균매출액 등
29.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건설업		
32. 운수업		
33. 창고업 ³³⁾	5인 미만	50억원 이하
34. 금융 및 보험업		
35. 도매 및 소매업		
36. 정보통신업		
3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30억원 이하
38. 부동산업		
3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4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3. 숙박 및 음식점업		
44. 교육 서비스업		
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6.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관련 법령을 기초로 필자가 정리.

33) 중소기업기본법 [별표 3] 소기업 분류표에 “운수업 및 창고업”으로 함께 분류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하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운수업”만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창고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법령상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 통계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시장경기 동향조사를 위한 통계정보 보고서(2015.12)”에서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사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정의하고 있다.³⁴⁾ 이러한 통계상 소상공인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상공인은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자로 이해할 수 있다.

3. 소 결

이상의 논의에서 검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관련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으며 이들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 또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관련 용어의 정의

구 분	세부 내용	특 징
통계청의 자영업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특정한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작자, 배우,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Own-account worker]: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Employer]: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에서 제외

3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 2016년 3월 체감 및 2016년 4월 전망-”에서도 “본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정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 소상공인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구 분	세부 내용	특 징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보험료 징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 자영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	고용원의 수에 따라 고용보험적용대상 자영업자 범위 규정
소상공인 법상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고용원의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소상공인의 범위 규정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는 그들의 주요 활동이 유급고용에 있지 않는, 즉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서 자신이 일하는 비(非)법인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소유자라고 정의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생산자조합회원이 자영업자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의 범위에 포함

첫째,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자영업자 개념은 EU 등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자영업자 개념과 유사한 광의의, 포괄적인 자영업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범위에서 우리나라 통계청은 자영업자의 범위에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있지만, EU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 보험료징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없지만, 해당 법률에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셋째, 대체로 자영업자의 범위에는 개인사업자만 포함시키고 법인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의 사업주는 물론이고(대기업은 거의 법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법인중소기업의 사업주는 자영업자에서 제외된다. 즉 중소기업사업주 중 일부만이 자영업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역시 소상공인법에서 소상공인을 개인사업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자영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물론 법인형태의 소상공인은 극

히 소수일 것이지만).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개인사업체 형태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법상 개인사업체 형태의 소상공인(사업주)가 자영업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대체로 자영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별히 구분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라는 용어만 사용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논의하도록 한다.

넷째, 자영업자는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라고도 함)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또는 1인 사업주라고 함)로 구분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의 수가 몇 명까지 있는 고용주를 자영업자에 포함시킨다는 기준이 없기에 고용원이 있는 모든 고용주는 자영업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사업자만 자영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소수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자영업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종속적 자영업자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로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산재보험제도 등 사회보험제도에서 독립자영업자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뒤에서 상세히 보는 것처럼 국가별로 이들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명칭이 조금씩 상이한데, 우리의 산재보험법에서는 이들 종속적 자영업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명명하면서 별도의 산재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2절 자영업자·소상공인 현황

1. 자영업자 현황

자영업자 통계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자영업자 통계(비임금근로자 통계)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통계(순자영업자 통계)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OECD 등 국제기구의 자영업자 통계는 전자를, 국내에서는 후자를 주로 자영업자 통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통계)

[표 2-3]에서 보듯이 통계청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비임금근로자 통계에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약 25.4%이다.

[표 2-3]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비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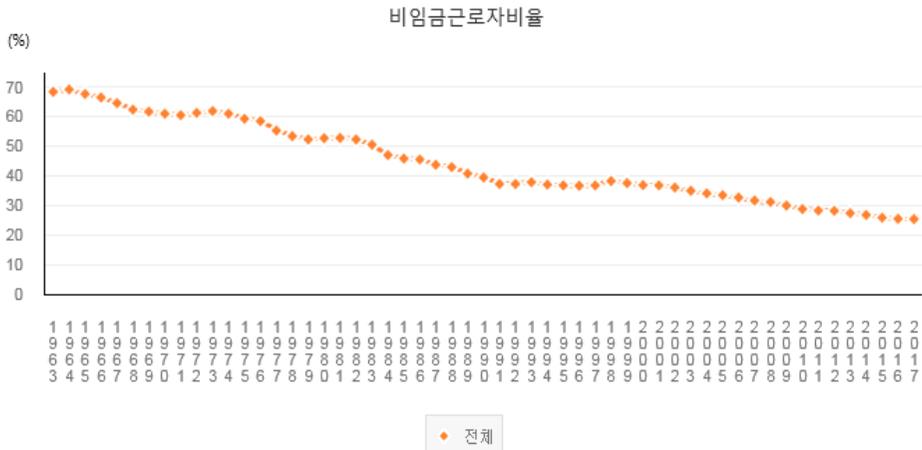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 체		31.2	30	28.8	28.3	28.2	27.4	26.8	25.9	25.5	25.4
종사상 지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5	6.5	6.3	6.2	6.3	6.1	6.1	6.1	6	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8.8	17.8	17.2	16.8	16.8	16.5	16	15.3	15.3	15.2
	무급가족종사자	5.9	5.7	5.3	5.2	5.1	4.9	4.7	4.4	4.3	4.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석: 1) 비임금근로자비율 = (비임금근로자수 ÷ 전체 취업자수) × 100.

- 2)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 3) 고용통계의 모수인구가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2000.7~2017.12) 자료를 보정한 수치임.

[그림 2-2] 비임금근로자비율 변화 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편, OECD의 각국 자영업자 수 및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을 통계할 때 상기 비임금근로자 개념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보기 때문에 OECD 통계상 자영업자 수와 비중은 우리나라 상기 비임금근로자 수와 취업자 중 비중과 거의 동일하다.³⁵⁾

[표 2-4] 각국 자영업자 비율(OECD)³⁶⁾

번호	국가	2000	2012	2013	2014	2016
1	룩셈부르크	7.4	6.1	6.2	-	
2	미국	7.4	6.8	6.6	6.5	6.4
3	노르웨이	7.4	6.9	7.0	7.2	7.0
4	러시아연방	10.1	6.9	7.3	7.2	
5	캐나다	10.6	8.9	8.8	8.8	8.6
6	덴마크	9.1	9.1	9.0	-	9.1
7	에스토니아	8.8	8.9	9.2	9.1	
8	스위스	13.2	10.4	10.4	10.0	
9	프랑스	9.3	10.0	10.2	10.2	11.8
10	스웨덴	10.3	10.5	10.6	10.3	10.0
11	호주	13.5	10.6	10.3	-	10.1
12	헝가리	15.2	11.8	11.3	11.0	-
13	독일	11.0	11.6	11.2	11.0	10.5
14	일본	16.6	11.8	11.5	-	10.6
15	이스라엘	14.2	12.7	12.6	12.5	-
16	아이슬란드	18.0	12.5	12.7	12.5	-

35)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통계상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와 비중은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영업자 수보다 많게 표시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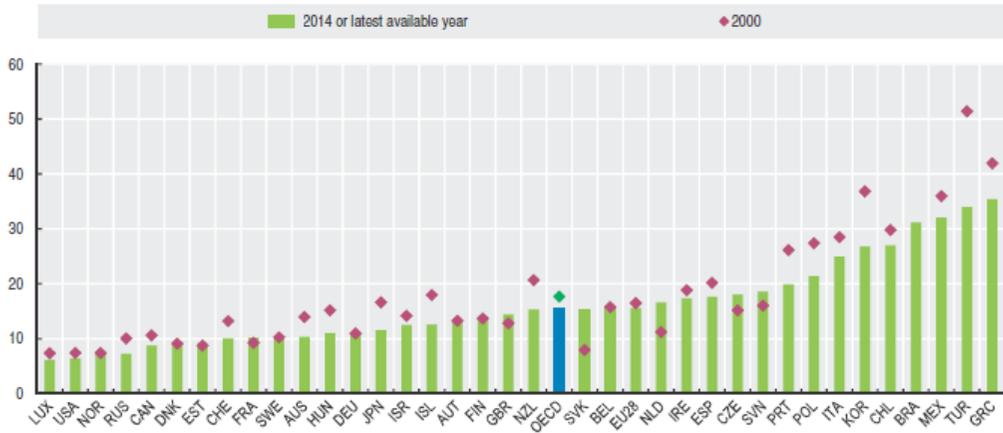
36) Self-employment rates, As a percentage of total employment by gender, OECD (2016), OECD Factbook 2015-201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factbook-2015-en> (2018. 04. 03. 검색)

번호	국가	2000	2012	2013	2014	2016
17	오스트리아	13.3	13.1	13.2	13.3	-
18	핀란드	13.7	13.6	13.5	14.1	14.0
19	영국	12.8	14.6	14.4	-	15.4
20	뉴질랜드	20.6	16.6	15.4	15.3	-
21	슬로바키아	8.0	15.5	15.6	15.4	-
22	OECD	17.7	15.9	15.6	15.4	-
23	벨기에	15.8	14.3	15.1	15.5	-
24	네덜란드	11.2	15.2	15.9	-	16.8
25	EU 28	18.3	16.6	16.5	-	-
26	아일랜드	18.8	16.7	17.1	17.4	-
27	스페인	20.2	17.4	17.9	17.7	16.9
28	체코	15.2	18.5	17.9	18.1	-
29	슬로베니아	16.1	16.2	16.9	18.6	-
30	포르투갈	26.1	22.2	22.1	19.9	-
31	폴란드	27.4	22.4	21.8	21.4	-
32	이태리	28.5	25.2	25.1	24.9	-
33	칠레	29.8	25.1	25.4	25.9	-
34	한국	36.8	28.2	27.4	26.8	25.5
35	브라질	-	31.2	31.2	-	-
36	멕시코	36.0	33.7	33.0	32.1	-
37	터키	51.4	37.1	35.9	34.0	-
38	그리스	42.0	36.6	36.9	35.4	34.1

주 1) 본 표는 OECD Factbook 2015-201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127쪽 “Self-employment rates, As a percentage of total employment by gender”표를 비율이 낮은 국가 순으로 재정리한 것임.

2) 2016년도 지표는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 ALFS Summary tables_Self-employment % of employment」 2017. 10(비임금근로자비율 = (비임금근로자수 ÷ 전체 취업자수) × 100.)을 바탕으로 작성된 통계청의 “OECD 주요국의 비임금근로자비율”을 재인용한 것임.

[그림 2-3] 국가별 2000년 대비 2014년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OECD)³⁷⁾



[표 2-4]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6.8%로 OECD 평균 15.4%, EU 28개국 평균 16.5%(2013년 기준)보다 10% 이상 높으며, 조사한 36개 국가 중 그리스, 터키,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다섯 번째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2-4]와 [그림 2-3]에서 보듯이, 각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대체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2)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순자영업자 통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영업자 통계는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통계이다.³⁸⁾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17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568만 2천명으로 전년 대비 6만 8천명

37) Self-employment rates: total, As a percentage of total employment, OECD (2016), OECD Factbook 2015-201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factbook-2015-en> (2018. 04. 03. 검색)

38) 즉 본 조사에서의 자영업자는“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검색일: 2018.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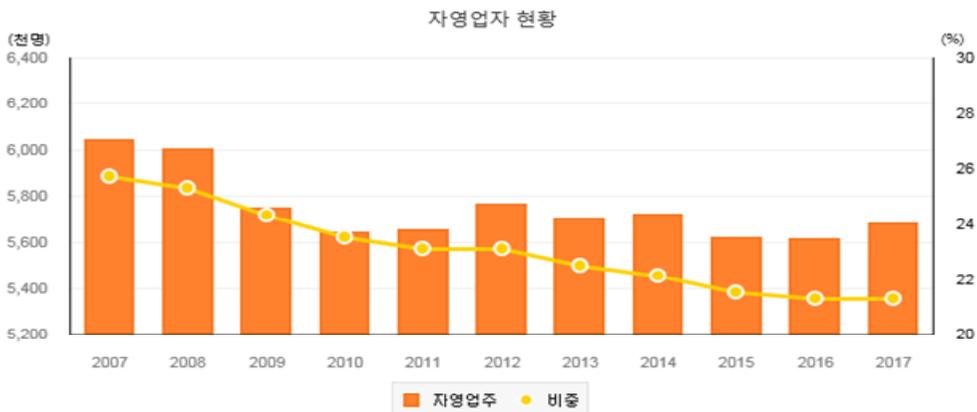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 중 비중은 21.3%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4]와 [표 2-5] 참조).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만 2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5] 자영업자 현황(1)

(단위: 천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취업자	23,561	23,775	23,688	24,033	24,527	24,955	25,299	25,897	26,178	26,409	26,725
자영업자	6,048	6,005	5,749	5,643	5,657	5,768	5,703	5,720	5,622	5,614	5,682
비중	25.7	25.3	24.3	23.5	23.1	23.1	22.5	22.1	21.5	21.3	21.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4] 자영업자 현황(2)³⁹⁾

[표 2-6]에 따라 2017년 기준 업종별 자영업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약 160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39) 2018.02.14.에 갱신된 자료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검색일: 2018.04.1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약 407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중 3분의 2가 1인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21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농림어업 82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 65만명, 운수업 61만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만명, 제조업 43만명, 건설업 41만명, 교육서비스업 33만명 순이다.

[표 2-6] 업종별 자영업자 현황(2017년도 기준) (단위: 천 명)

업 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 계
농업, 임업 및 어업	38.7	787.8	826.5
광업	0.1	0.0	0.1
제조업	211.0	221.1	432.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	1.1	1.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4	3.2	6.6
건설업	155.9	257.9	413.8
도매 및 소매업	372.8	837.9	1,210.6
운수업	32.9	577.2	610.1
숙박 및 음식점업	343.2	309.8	653.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3	54.2	72.5
금융 및 보험업	12.2	26.5	38.7
부동산업 및 임대업	45.0	114.6	159.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6.6	78.8	145.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8.5	49.9	8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	0.0	0.0
교육 서비스업	90.1	248.3	33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0.9	11.5	82.4

업 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 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6	102.2	134.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4	381.3	456.7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 가소비 생산활동	0.3	10.4	10.6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합 계	1,607.7	4,073.7	5,68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7년)

주1) 자영업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무등록 사업자 포함)만 포함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자영업자가 120만명, 7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소상공인 최대 상시 근로자 기준인 10인 미만으로 계산하면 155만명이며, 그 비율은 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2-7] 참조). 또한 고용원을 30인 미만으로 하면 자영업자 수의 비중이 99%로 늘어나게 된다.

[표 2-7] 종사자 규모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분포

규 모	자영업자수(천명)	비중(%)
1-4명	1,200	72
5-9명	351	21
10-29명	97	6
30-99명	13	1
100-299명	2	0
300명 이상	0	0
합 계	1,662	100

자료: 필자의 의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한 내부 자료.

2. 소상공인 현황⁴⁰⁾

(1) 소상공인 수

2015년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약 308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85.6%이며, 이들 사업체에 1명의 소상공인 사업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소상공인 사업주 역시 308만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8]의 자영업자 수 568만명 중 소상공인 사업주 수 308만명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그 비중은 약 54%로 전체 자영업자 중 절반정도가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 종사자수는 606만명으로,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약 1.97명이며, 이는 전체 종사자수 대비 3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8] 참조).⁴¹⁾

[표 2-8] 소상공인 현황(1) (단위 : 천개,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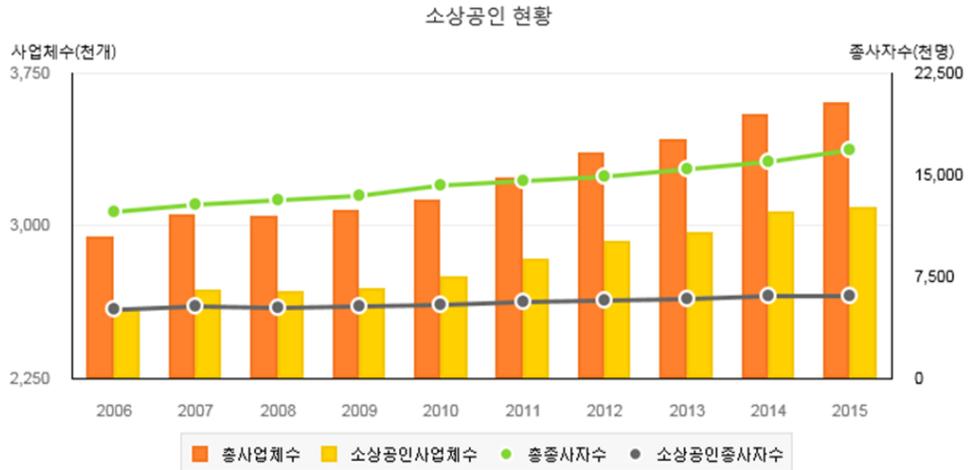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체 수	전 체	3,047	3,069	3,125	3,235	3,354	3,419	3,545	3,605
	소상공인	2,675	2,686	2,749	2,835	2,919	2,962	3,063	3,084
	(비중,%)	87.8	87.5	87.9	87.6	87.0	86.6	86.4	85.6
종사자 수	전 체	13,070	13,398	14,135	14,534	14,891	15,345	15,962	16,775
	소상공인	5,195	5,218	5,334	5,549	5,677	5,778	6,046	6,066
	(비중,%)	39.7	38.9	37.7	38.2	38.1	37.7	37.9	36.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편 및 가공

40) 소상공인 현황은 2017년에 발표예정이었던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표본문제 등을 이유로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통계작성 중지승인 고시”(2017.12.12. 중지)에 따라 발표되지 않고 있어, 최신자료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5253&pageNo=5&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2018.7.20. 검색\)](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5253&pageNo=5&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2018.7.20. 검색))

4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98 (2018.10.30. 검색). 한편, 주의할 점은 [표 2-8]의 총종사자수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수 비율 36.2%를 계산함에 있어 총종사자수가 약 1667만명인 반면, [표 2-5]의 2015년도 전체 취업자 수는 26,178천명으로 약 1000만명 가량 전체 종사자 수가 차이난다. 이는 [표 2-8] 소상공인 현황(1)의 전체 종사자 수 약 1677만명은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한 것과 달리, [표 2-5]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사업장이 없는 취업자까지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그 수가 훨씬 많게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경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종사자의 전체 취업자에 대한 비중을 계산하면 606만명 ÷ 26,178천명*100=약 23.2%이다. 또한 경활조사 통계상 전체 취업자 수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8만 ÷ 26,178천명*100=약 12%이다. 이처럼 관련 통계는 조사방법에 따라, 계산 기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통계를 평가할 때 주의를 요한다.

[그림 2-5] 소상공인 현황(2)



(2) 소상공인 경영상황

소상공인의 소득수준은 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청(2016.2.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실질월급이라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월 294만원으로 임금근로자(근로자 월평균 임금 308만원)보다 낮은 상황이다.⁴²⁾

이처럼 낮은 소득수준도 문제지만, 더욱 열악한 상황은 소상공인 창업자의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창업 후 1년 만에 40%가 폐업하고, 5년 생존율은 30%에 불과하다고 한다.⁴³⁾

이처럼 자영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실업보호, 산재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충문제가 시급한 국가·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42) 김수환·김형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20권 제1호, 2017. 4., 70쪽.

43) 김수환·김형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20권 제1호, 2017. 4., 70쪽.

제3절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개 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임금근로자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특례형태로 도입되어 있다. 즉 산재보험법 제1조의 입법목적, 즉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 동법 제6조의 적용범위, 즉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는 규정, 그리고 동법의 정의조항에서 산재보험제도상 중요개념인 근로자와 임금 등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상 개념 정의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⁴⁴⁾을 볼 때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입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입법목적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자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업 중 재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⁴⁵⁾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경우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1인 독립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본인이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임금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이 거의 유사

44)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45)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88쪽.

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임금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제도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례형식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비임금근로자는 현장실습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외파견자 등이다. 이중 앞에서 살펴본 자영업자의 정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가입제도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현행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구 분	적용대상	세부적용대상	근거 조문
일반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법 제6조
특례적용	국외사업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 보상	법 제121조
	해외파견자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	법 제122조
	현장실습생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법 제123조
	중소기업사업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법 제124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법 제125조
	자활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법 제126조

구 분	적용대상	세부적용대상	근거 조문
적용제외	(1) 공무원; (2) 군인; (3) 선원 및 어선원; (4) 사립학교교직원; (5)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②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6) 가구내 고용활동; (7) 상기 예외사례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8)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비법인인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자료: 필자정리

이하에서는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두 가지 형태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로 나눠 그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

(1) 개 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가입방식(임의 또는 강제), 적용대상(범위), 보험료 산정방식, 가입절차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실제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입률, 수급자 수 등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가입방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당연)가입대상이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의가입, 즉 산재보험의 가입여부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가입

시킬 경우 모든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정책 당국 또한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호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방식과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적용대상

2018년 4월 기준 산재보험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하 고용주)와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하 1인 자영업자 또는 1인 사업주)으로 나뉜다.⁴⁶⁾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고용주)

고용주 산재보험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보험가입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산재보험제도의 기본목적이 임금근로자의 산재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에게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둘째, 모든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정된다.⁴⁷⁾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업주 중에서도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셋째, 고용주 산재보험제도는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와 달리 업종제한이 없이 상기 2가지 요건만 갖추면 모든 업종의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농업,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고용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6) 산재보험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47) 다만 고용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간주하여 보험가입자격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모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에게 그 가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에 한해 그 가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업종은 총 14개 업종으로 [표 2-10]과 같다.

[표 2-10]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업종

번호	업종	시행일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05. 1. 1.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3	건설기계사업자 ⁴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09. 7. 1.
4	퀵서비스업자 및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사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 퀵서비스업자	'12. 5. 1.
5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⁴⁹⁾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12. 11. 18

48)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9)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제2호: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번호	업종		시행일
6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6. 7. 1.
7	1차 금속 제조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	'18. 1. 1.
8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8. 1. 1.
11	전기장비 제조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기장비 제조업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14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자료: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필자정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5.3.>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5.3.>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만 하고 있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범위에 2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동업하는 경우와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⁵⁰⁾ 둘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전속대리운전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⁵¹⁾

(4) 보험가입의 신청·승인 및 보험료 산정

1) 보험가입의 신청·승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구분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⁵²⁾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단, 보험관계는 신청서 접수일 다음날부터 성립)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보험가입신청서의 기입내용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보험가입신청서의 기입내용을 비교해 보면 [표 2-11]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유사하다.

50) 이 문제는 앞의 자영업자 정의와 연결해서 추후 검토

5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2항,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및 별지 제56호 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 서식.

[표 2-11] 고용주와 1인 사업주의 보험가입신청서 내용 비교

항 목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사업주·사업장 정보	- 성명, 주소 등 -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등	-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보험가입신청내용	- 보험료산정기준보수액, 근무 시간, 업무내용 - 특정업무 종사 여부, 특정업무 종사 경력	- 좌동 - 특정업무 종사 내용 없음
사업주 업종별 필요정보	관련 없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14개 업종 필요정보(예컨대 예술인은 예술분야, 예술활동 유형, 계약자명, 계약기간, 계약금 등을 기입)

자료: 필자정리

이 때 중소기업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⁵³⁾, 이 건강진단서는 특수건강진단기관⁵⁴⁾에서 발급받아야 하며⁵⁵⁾ 관련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⁵⁶⁾ 한편, 진단 결과 그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⁵⁷⁾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⁵⁸⁾ 예술인인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⁵⁹⁾

53)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2항.

5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사업주는 제98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5)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56)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57) 제43조(건강진단)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59)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2항.

2)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선택한 기준보수액(월)에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⁶⁰⁾ 기준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현행 기준보수액 등급표(2018.01.01. ~ 2018.12.31.까지 적용)⁶¹⁾ [표 2-12]와 같다.

[표 2-1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액

구 분	기준보수액(월) ⁶²⁾	평균임금(일)
1등급	1,714,050	57,135
2등급	2,218,800	73,960
3등급	2,593,170	86,439
4등급	2,990,670	99,680
5등급	3,388,140	112,938
6등급	3,785,640	126,188
7등급	4,183,140	139,438
8등급	4,580,610	152,687
9등급	4,978,110	165,937
10등급	5,375,610	179,187
11등급	5,773,080	192,436
12등급	6,170,580	205,686

자료: [시행 2018.01.0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7호. 2017.12.29., 일부개정

60)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61)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3항

62) 기준보수액(월) = 평균임금 × 30일이다.

산재보험료를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2018년의 경우 [표 2-13]과 같다.

[표 2-13]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⁶³⁾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석탄광업 및 채석업	281	4. 건설업	39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섬유/섬유제품제조(갑)	1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8
섬유/섬유제품제조(을)	20	운수관련 서비스업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창고업	13
펄프·지류제조업	24	통신업	11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1	6. 임업	90
화학제품제조업	16	7. 어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5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제조업	8	8. 농업	25
고무제품 제조업	21	9. 기타의 사업	
유리 제조업	1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6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0
		기타의 각종사업	10
		사업서비스업	9

6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75호,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적용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19	전문기술서비스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금속제련업	11	교육서비스업	7
도금업	1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6	0.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16/1,000	
수제품 제조업	15		
기타제조업	27		

[표 2-13]에서 보는 것처럼 업종별로 보험요율은 상이하다. 예컨대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⁶⁴⁾(여객, 화물, 대리운전 등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이 포함됨)은 20/1000이다. 이를 적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자가 1등급, 즉 최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월 기준보수액 1,714,050원(1일 평균임금 57,135원)을 선택하면 월 보험료는 $1,714,050원 \times 20/1000 = 34,281원$ (연 보험료 411,372원)이며, 최고 등급인 월 기준보수액 6,170,580원 $\times 20/1000 = 123,411원$ (연 보험료 1,480,939원)이다. 최고 보험료는 최저 보험료의 약 3.6배이다.

64) 501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내용 예시: 1)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내, 도시간에 택시 및 버스 등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2)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3) 소형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택배업, 퀵서비스업이 포함됨. 고용노동부, 2018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7, 112-114쪽.

한편, 1인 자영업자의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별도의 요율이 적용되지 않고 상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율과 같고, 이에 따라 현재 산재보험가입이 허용되는 1인 자영업의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따로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업종의 보험료율(2018년 기준)

번호	업종	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0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4	퀵서비스업자 및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사람	
5	건설기계사업자	39 ⁶⁵⁾
6	예술인	10 ⁶⁶⁾ , 767), 2768)
7	1차 금속 제조업자	19 ⁶⁹⁾
8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자	

- 65)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 다만,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1828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분류(이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19/1000임). 고용노동부, 2018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7, 107쪽.
- 66) 9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10/1000: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예품을 제작하는 사업
- 도자공예품, 유리공예품, 석공예품, 금속공예품, 목공예품, 종이공예품, 섬유공예품, 가죽공예품, 기타 공예품을 제작하는 사업. 고용노동부, 같은 자료, 178쪽.
- 67)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7/1000: 9070 예술전문서비스업: 문화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문화예술 작품의 완성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창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문학(시, 수필 등), 평론, 시나리오, 회화, 조각, 서예, 만화, 작곡, 작사, 안무 등; 공예는 해당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예술인의 공예는 9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에 분류. 고용노동부, 같은 자료, 149쪽.
- 68) 230 기타 제조업 27/1000: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세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69)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

번호	업종	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9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자	770)
10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자	
11	전기장비 제조업자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	
13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자	1571)
14	자동차정비업자	1672)

(5)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및 보험급여

중소사업주의 산재보험 급여 지급을 위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는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며⁷³⁾ 주요 내용은 [표 2-15] 와 같다.

[표 2-15]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내용	근거조문
업무수행중의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제28조
행사 중의 사고	” 제30조

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고용노동부, 같은 자료, 50쪽.

70) 224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7/1000, 고용노동부, 같은 자료, 68쪽.

71) 229 수제품 제조업 15/1000: 22901 귀금속제품 제조업: 보석(모조품 포함)과 귀금속세공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 고용노동부, 같은 자료, 82쪽.

72)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하는 사업. 고용노동부, 같은 자료, 79쪽.

73)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7.12.26.>

내 용	근거조문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제31조
요양 중의 사고	" 제32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3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제34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제34조
출퇴근 중의 사고	" 제35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36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표에서 정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⁷⁴⁾

보험급여의 신청 및 청구 내용에는 사망의 추정, 요양비의 청구, 전원요양, 추가상병,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⁷⁵⁾ 다만,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장해 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⁷⁶⁾

(6) 산재보험가입현황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전체 가입자 수는 20,731명이며, 이중 근로자 사용 사업주가 16,371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5,095명이다. 보다 상세한 가입자 현황은 [표 2-16]과 같다.

74)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4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124조.

75)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76)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제75조.

[표 2-16]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현황

구분	'13		'14		'15		'16		'17. 11.77)		연간증감수평균 (전년대비 증감률평균)	
	가입자 수	사업장 수	가입자 수	사업장 수	가입자 수	사업장 수	가입자 수	사업장 수	가입자 수	사업장 수		
근로자사용 사업주(A)	15,811	15,155	17,481	16,843	18,671	17,996	19,886	19,210	16,371	15,636		
	-	-	1670(10.6)	1688(11.1)	1190(6.8)	1153(6.8)	1215(6.5)	1214(6.7)	-3515(-17.6)	-3574(-18.6)	140(1.6)	120(1.5)
화물 운송 차주	628	628	685	685	790	790	1,153	1,153	1,461	1,461		
	-	-	57 (9)	57 (9)	105(15.3)	105(15.3)	363(45.9)	363(45.9)	308(26.7)	308(26.7)	208(24.2)	208(24.2)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주 (B)	70	70	121	121	111	111	108	108	103	103		
	-	-	51(71.8)	51(71.8)	-10(-8.2)	-10(-8.2)	-3(-2.7)	-3(-2.7)	-5(-4.6)	-5(-4.6)	8(14.1)	8(14.1)

합(단위: 개소, 명, %)

77)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구분	'13		'14		'15		'16		'17. 11.		연간증감수평균 (전년대비 증감률평균)
	가입자 수	사업장 수	가입자 수	사업장 수	가입자 수	사업장 수	가입자 수	사업장 수	가입자 수	사업장 수	
	2,285	2,285	2,943	2,943	3,296	3,296	4,124	4,124	5,095	5,095	
소계	-	-	658(28.8)	658(28.8)	353(12)	353(12)	828(25.1)	828(25.1)	971(23.5)	971(23.5)	703(22.4)
	18,096	17,440	20,424	19,786	21,967	21,292	24,010	23,334	21,466	20,731	
총계(A+B)	-	-	2,328(129)	2,346(13.5)	1,543(7.6)	1,506(7.6)	2,043(9.3)	2,042(9.6)	2,544(106)	2,603(112)	3,291(195)

자료: 고용노동부,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2017. 12., 81쪽, <표 2-1-4>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 및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주1) 연간증감수평균=4개 연간증감수 총합/4; 전년대비증감률평균=4개 전년대비증감률 총합/4.

주2)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 추가된 1차 급속 제조업자 등 8개 업종에 대한 가입자 현황은 제도시행기간이 짧아 위 통계에서 제외함.

주3) 데이터전거사는 가입자 수가 너무 적어 세부통계를 계산하지 않았으며, 증감률 등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였음.

[표 2-16]을 기초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 사용 사업주의 경우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16,371명이며, 2017년 한 해 동안 가입자 수가 급감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가입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을 제외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연평균 가입자 증가 수는 1,358명, 증가률은 8%이다. 다만 2017년에는 전년대비 가입자 수가 그동안의 가입자 수 증가분을 상쇄할 정도인 3,515명(-17.6%)이 감소하였다. 2017년 수치를 포함한 4년간 연간증감수평균은 140명, 증감률평균은 1.6%로 급락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2017년 11월말 가입자는 4년 전인 2013년의 가입자 수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에 근로자 사용 사업주의 가입자가 급감한 것에 반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⁷⁸⁾

둘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5,095명이며, 대리운전기사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주를 제외하고 가입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리운전기사를 제외한 통계로서 4년간 연평균 가입자 증가 수는 703명, 증감률은 22.4%이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주는 감소폭이 낮기는 하지만 2015년 이후 계속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5개 업종 사업주의 업종별 가입자 수를 비교해 보면, 화물운송차주, 건설기계사업주, 퀵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사업주가 전체 가입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전체 가입자 수 5,095명 중 건설기계사업주 1,797명(35.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화물운송차주 1,461명(28.7%), 퀵서비스업자 1,156명(22.7%), 예술인 574명(1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주 103명(2%), 대리운전기사 4명(0%) 순이다.⁷⁹⁾ 가입자 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3개 업종의 가입자 수의 비율은 86.7%에 이르고 있다. 업종 간 가입자 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전체 가입자 수에서 근로자 사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보다 월등히 많다. 구체적으로 2013년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 사용 사업주와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각각 15,811명, 2285명으로 후자는 전자의

78) 2017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가입자 급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확인하지 못하였다.

79) 고용주의 경우 전체 가입자 통계 수치만 제공되고 업종별 가입자 수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4.5%에 불과하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1월말에는 근로자 사용 사업주와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가입자 수가 각각 16371명, 5095명으로 후자의 비율이 31%까지 높아지긴 했지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가입자 수는 근로자 사용 사업주의 가입자 수의 1/3에 그치고 있다. 이는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유독 대리운전기사만 가입률이 거의 체로에 가깝다는 점이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제도시행기간이 1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아 아직 인지도가 낮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총평하자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전체 가입자 수가 매우 적어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긴 어려워 보인다.

(7)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표 2-17]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수급자는 368명이며, 금액으로는 약 40억 원이다. 2007년~2016년 10년 평균 연간 수급자 수는 약 322명이며 금액은 약 32억 원 정도이다. 수급자 수와 금액은 전반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수급자 수의 경우 기타의 사업 131명, 제조업 122명, 운수창고통신업 53명, 건설업 44명, 임업 10명, 농업 6명, 광업 2명 등의 순으로 많고, 금액의 경우 제조업 14억 2천 7백만원, 기타의 사업 11억 9천 7백만원, 운수창고통신업 6억 4천 8백만원, 건설업 5억 3천 6백만원, 임업 1억 1천 3백만원, 광업 5천 4백만원, 농업 2천 5백만원 순이다.

한편, 2016년 기준 전체 가입자 대비 산재보험 수급자 비율은 1.5% 수준이다(중소기업 사업주의 전체 산재보험가입자 수 24,010, 산재보험 수급자는 368명). 이 비율은 전체 근로자 산재보험 수급자 비율 1.46%와 유사하다(2016년 기준 근로자 산재보험 전체 가입자 수 18,431,716명⁸⁰⁾, 수급자 수 269,510명⁸¹⁾).

80) 고용노동부,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1-1. 사업종류별(중분류) 적용 현황, 208쪽.

81) 고용노동부,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4-1. 사업종류별(중분류) 보험급여 지급 현황, 248쪽.

[표 2-17]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명, 원)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평균			
	수 급 자	금액	수 급 자	금액																				
합계	262	2,891,856,530	338	3,337,268,320	347	2,902,249,500	324	3,211,888,000	321	3,281,677,000	281	3,071,444,360	321	3,263,207,900	332	3,129,332,170	345	3,220,285,110	368	3,993,372,270	322		약 32억 2천 5백만원	
금융 보험업	.	.	2	13,075,700	2	55,296,700	2	1,199,750	1	1,815,340	1	7,681,990	2	3,512,670	1	52,499,690	1	1,228,600	
광업	1	3,027,490	1	24,601,400	1	23,740,380	1	23,271,210	2	94,983,230	1	26,287,920	2	31,742,490	2	32,709,580	3	45,449,290	2	54,143,120	.	.	.	
제조업	95	945,701,250	113	971,389,210	124	1,104,227,110	119	1,179,768,060	122	1,236,184,870	101	945,677,240	120	1,058,047,020	137	1,290,713,940	135	1,573,351,870	122	1,427,839,940	.	.	.	
전기·가스 증기·수도 사업	1	1,083,540	1	15,197,090		
건설업	7	137,740,680	15	232,701,140	13	144,254,680	20	220,077,150	15	166,924,000	18	244,955,980	24	317,407,790	27	330,340,660	34	301,765,720	44	536,016,330	.	.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평균			
	수 급 자	금액	수 급 자	금액	수 급 자	금액	수 급 자	금액	수 급 자	금액	수 급 자	금액	수 급 자	금액	수 급 자	금액	수 급 자	금액	수 급 자	금액	수 급 자	금액		
은수 창고 통신업	29	28,853,800	39	474,091,850	42	249,616,950	41	348,302,510	39	317,365,400	30	390,644,920	34	219,793,920	34	279,866,150	33	322,765,720	53	648,490,550				
임업	30	231,413,360	31	323,753,160	26	292,048,770	21	198,011,990	19	260,359,110	16	67,684,120	11	110,853,790	10	81,181,770	9	109,857,800	10	113,392,940				
어업	1	3,386,510	1	12,802,650	2	15,012,960	2	7,519,740	3	14,614,650	-	-	-	-	-	-	-	-	-	-				
농업	3	4,268,800	4	7,943,940	2	3,126,100	1	21,990	1	4,287,130	3	4,107,630	2	142,639,490	2	59,079,100	4	28,687,530	6	25,373,850				
기타의 사업	98	1,138,456,690	122	12,775,587,790	135	1,032,421,240	117	1,213,565,630	119	1,185,143,330	110	1,293,145,000	125	1,346,033,700	119	1,003,181,400	124	847,048,520	131	1,194,125,740				

자료: 고용노동부, 2016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4-12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급여 지급 현황, 308-311쪽(82)을 바탕으로 재정리.

82) 다음 주소의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FX_11811_A009&vw_cd=MT_OTITLE&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H2
(검색일: 2018.05.02.)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

(1) 개 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⁸³⁾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핵심구절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화 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외견상 독립사업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구분되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유사하고, 노무제공 과정에서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손익 계산 등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영업인과 구분”⁸⁴⁾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즉 근로자성과 자영업자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로 표현될 수도 있다.⁸⁵⁾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산재보험법의 일반적용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아니어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판례에서 “사용종속관계 내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⁸⁶⁾, 즉 근로자와 유사한 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년부터 산재보험법상 특례형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다양한 고용관계

83)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84)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 붙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1118> (2018.10.30.검색)

85) 한 연구에 의하면 현행 산재보험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준종속 노동자’ 또는 ‘종속적 사용자’를 제시하고 있다. 박은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법적 보호, 월간 노동리뷰 2018년 2월호, 35쪽.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명칭 외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로 약칭함)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로 약칭)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8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대법원 판례 시 ‘사용종속관계’ 중요 근거, 2017.10.06. 23:20,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684#09ne>(2018.10.30. 검색)

하에서 제공됨에 따라 전통적인 사용자-임금근로자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취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을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해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자영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역시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주요 범위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에 한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현행 제도 현황만 간략히 살펴보고 룩 한다.

(2) 적용대상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1.27.>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요건을 정리하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여야 비로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다.⁸⁷⁾ 결국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한정되며, 아래의 [표 2-18]과 같다.

[표 2-18]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번호	직 종	적용범위	시행일
1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08. 7. 1
2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 기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학습지교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골프장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2. 5. 1.
6	전속 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출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16. 7. 1.

87) 산재보험법 제125조.

번호	직 종	적용범위	시행일
		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기사 (전속)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1인 자영업자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 다 1인 자영업자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1인 자영업자는 전속성이 없는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전속성⁸⁸⁾이 있으면 특고노동자로, 전속성이 없으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가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 중 주로 하나의 업체와 도급계약을 기초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1인 자영업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가입방식 및 절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실상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처지에 있다고 보기에 원칙적으로는 의무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⁸⁹⁾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특수형

88)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예컨대 [시행 2017. 3.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2017. 3. 31., 일부개정]. 이들 외에 나머지 보험설계사 등은 전속성이 비교적 명확하기에 별도의 전속성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9)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2항 및 제4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에서 기인한 특수성”이 제시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년도 산

태근로종사자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⁹⁰⁾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가입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⁹¹⁾

가입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⁹²⁾ 즉 사업주가 소위 ‘입직신고’를 공단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⁹³⁾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가입 절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4) 보험료

보험료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방식과 유사하다. 즉 산재보험 산정을 위한 기초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료가 된다. 이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하도록 하고 있다.⁹⁴⁾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음의 [표 2-19]와 같다.

재보험 사업연보, 2017. 12., 78쪽.) 즉 대통령령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한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실제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관계 등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으로 하여금 최종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의무가입제도에 대한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90)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 단서.

91)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단서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다.

92)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6조 제1항.

93)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spec/spec2.jsp>(2018.10.30. 검색)

94)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항.

[표 2-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⁹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183,000	72,766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2,254,040	75,134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684,000	56,13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454,540	81,8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진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진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200,000	73,333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진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 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944,000	64,80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638,000	87,93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750,000	58,333

95)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시행 2017.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9호, 2016. 12. 30., 일부개정]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종별 평균임금은 최저 금액인 전속 퀵서비스업자가 48,488원, 최고 금액인 대출모집인이 87,933원이다. 이를 중소기업 사업주의 최저 평균임금 57,135원, 최고 평균임금 205,686원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낮은 금액이며, 특히 최고 평균임금은 중소기업사업주가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와 거의 유사한 지위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보수 또한 해당 업종의 임금근로자 보수와 유사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없고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 즉 업종별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이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과 동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⁹⁶⁾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8년도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종별 산재보험료 수준>은 [표 2-20]과 같다.

[표 2-20] 2018년도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종별 산재보험료 수준

직 종	보수액(월)	보험료율	월보험료	종사자 부담분
생명보험설계사	2,623,000원	8.5/1,000	22,290원	11,145원
손해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우체국 보험모집인	2,183,000원	8.5/1,000	18,550원	9,275원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2,254,040원	27.5/1,000	61,980원	30,990원
학습지 교사	1,684,000원	10.5/1,000	17,680원	8,840원
골프장 캐디	2,454,540원	11.5/1,000	28,220원	14,110원
택배기사	2,200,000원	21.5/1,000	47,300원	23,650원

96)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2항.

직 종	보수액(월)	보험료율	월보험료	종사자 부담분
퀵서비스기사[전속]	1,454,000원	21.5/1,000	31,260원	15,630원
대출모집인 (여신금융기관 소속)	1,944,000원	8.5/1,000	16,520원	8,230원
대출모집인 (대출모집법인 소속)	2,638,000원	8.5/1,000	22,420원	11,210원
신용카드 모집인	1,756,000원	8.5/1,000	14,920원	7,460원
대리운전기사(전속)	1,750,000원	21.5/1,000	37,620원	18,810원

자료: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산정 및 납부⁹⁷⁾

[표 2-20]에 따르면,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월 보험료는 14,920원이며, 이중 절반 금액인 7,460원을 근로종사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종사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로 월보험료는 61,980원이며 근로종사자 부담금액은 33,990원이다. 종합하면 현재 근로종사자 본인 부담금액 기준으로 최저 7,460원에서 최고 33,990원 사이에서 보험금액이 부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중소기업 사업주보다 낮은 보험료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5) 운영현황⁹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입직 신고하여 등록된 자라 할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 등록자 기준으로 전체 443,871명, 2016년 12월 31일 등록자 기준으로 전체 479,292명으로, 전년 대비 약 9.3% 증가하였다([표 2-21] 참조). 이러한 가입자 수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전체 가입자 21,466명(2017년 11월 말 기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적용 임금근로자 수 18,431,716명에 대한

97)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spec/spec3.jsp>(2018.10.30. 검색)

9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수 등 구체적인 운영통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본 연구에서는 일부 문헌에 포함된 통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을 계산하면 0.026%로 극히 적은 수치다.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통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먼저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가입의 대상자는 9개 직종 약 50만명으로 추정된다.⁹⁹⁾ 이를 기초로 가입률을 계산하면 약 96%로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는 약 40개 직종 1~2백만명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¹⁰⁰⁾ 이를 기초로 가입률을 계산하면 가입률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결국 현 시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가 합의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체 종사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입률을 추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표 2-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

(단위 : 명, %)

	전 체	2008.7 적용					2012.5 적용		2016.7 적용		
		생보 설계사	손보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 기사	대출 모집인	카드 모집인	대리 기사
2015. 12. 31. 등록자	443,871	119,415	215,821	57,760	25,039	11,988	10,830	3,018			
입직자	216,470 (40.4) ¹⁾	46,135 (38.6)	91,228 (42.3)	20,180 (34.9)	11,582 (46.3)	2,425 (20.2)	3,648 (33.7)	4,275 (141.7)	10,275	26,689	33
이직자	181,049 (38.1) ¹⁾	51,141 (42.8)	78,575 (36.4)	21,598 (37.4)	9,187 (36.7)	1,895 (15.8)	3,443 (31.8)	3,440 (114.0)	2,128	9,634	8
2016. 12. 31. 등록자	479,292	114,409	228,474	56,342	27,434	12,518	11,035	3,853	8,147	17,055	25

주 : 1) 전년도 말 등록자가 있는 6개 직종 등록자 대비 입이직률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DB.

자료: 박찬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을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2018년 7월호, 17쪽, <표 11> 산재보험 등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이직률(2016).

99)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 붙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ypeid=24&boardid=7601118> (2018.10.30.검색)

100)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 붙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ypeid=24&boardid=7601118> (2018.10.30.검색)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자 수, 수급자 수 등 관련 통계들이 별도로 제공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동 연보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징수(납부)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 2-22]에서 보는 것처럼 2016년 기준으로 수납액은 8,681백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1.0%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납액의 0.0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2] 2016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p)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15	'16	증감률	'15	'16	증감률	'15	'16	증감
전체	6,202,350	6,492,365	4.7	5,633,212	5,874,745	4.3	90.8	90.5	-0.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8,730	9,710	11.2	7,824	8,681	11.0	89.6	89.4	-0.2

1) 순수 보험료만 집계한 것이며, 기타징수금(가산금+연체금+급여징수금), 이월보험료는 제외함

※ '16년 현년 보험료(보험료+기타징수금) 징수결정액은 6,609,881백만원, 수납액은 5,918,731백만원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2017.12.,92쪽 <표 2-2-6>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

4. 주요 특징 및 문제점

(1) 주요 특징

이상으로 중소기업사업주 및 특수근로형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로 구성된 현행 우리나라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기초로 현행 제도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인 법체계 및 입법목적 등을 볼 때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자의 보호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제한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은 업무 중 재해위험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는 독립자영업자를 위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와 임금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종속적 자영업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로 나뉘어져 있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로 나누어 그 특징을 간략히 요약한다. 우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범위와 관련 고용원 유무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는 농림업을 포함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가능하지만,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일부 업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적용범위가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의 적용범위보다 좁게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도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인 미만의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만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무급가족종사자들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둘째, 가입형식의 경우 임의가입 형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의 산정은 정부에서 정한 12개의 평균임금 등급 중 하나를 중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은 동종업종의 임금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가입절차의 경우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산재보험을 포함한 전체 산재보험가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현재 9개 업종의 종사자에게만 산재보험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사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업주에 대한 인적, 경제적 전속성이 있을 것, 고용원이 없을 것 등 두 가지 제한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약 48만명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자 수보다 월등히 많다.

[표 2-23] 현행 우리나라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요약

구분	중소기업사업주 (독립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속적 자영업자)
	고용주	1인 사업주	
가입형식	임의		강제(단 면제신청 가능)
고용원 유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50인 미만	무	무
소속 종업원 보험가입 여부	필요	관련 없음	관련 없음
업종 제한	없음	일부 업종(14개)	일부 업종(9개)
농림어업	포함(비법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 인 미만 제외)	제외	제외
가족종사자 가입	제외	제외	제외
보험료 부담	사업주 본인 100%	사업주 본인 100%	고용주와 50%씩 부담

자료: 필자 정리

(2) 문제점과 그 원인

본 연구에서는 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 위주로 검토하였기에 문제점 역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 위주로 제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점: 절대적 가입자 수가 매우 적고 가입률도 매우 낮음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가입자 수가 매우 적고 가입률 또한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2017년 11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 568만 2천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21,466명인데, 비율로 계산하면 약 0.38%에 불과하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가입자 수 및 비율과 상대비교(전체 취업인구, 자영업자 수 및 비율 등을 고려)를 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처럼 적은 가입자 수와 낮은 가입률은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현행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체 가입자 수도 매우 적지만, 그 중에서도 1인 자영업자의 가입자 수가 특히 적다는 점이다. 전체 자영업자 중 약 70%가 1인 자영업자임을 고려하면 1인 자영업자의 가입자 수가 고용주의 가입자 수 보다 많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추정되는 원인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초보적인 수준에서 추정하자면, 크게 제도 설계 측면의 원인과 운영측면의 원인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임의가입제로서 적용범위에 있어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보험료 부담, 소득노출 등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 우려,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후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홍보부족 등으로 제도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지도가 낮고,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부족으로 가입의향이 낮다는 점, 민간보험과 비교할 때 현행 법정산재보험의 비교우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 등의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이하에서 하나씩 검토하도록 한다.

① 제한적인 적용범위

첫 번째 제도측면의 원인으로 현행 중소기업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고용주의 경우 업종 제한은 없으나 전체 중소기업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전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6만명 중에서 5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수는 약 1만명, 그 비율은 1%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의 적용대상 제한은 주요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전체 자영업자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1인 사업주의 경우 일부 업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상당수의 1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잠재가입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 2-24]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전체 개인사업체 수에서 가장 많은 사업자가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과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의 보험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2-24] 업종별, 규모별 기업 수(2015)¹⁰¹⁾

산업별(9차)대분류	기업규모별	2015		
		전체 (개)	개인사업체 (개)	회사법인 (개)
전산업	전체	3,604,773	3,101,055	503,718
	중소기업	3,600,882	3,101,048	499,834
	대기업	3,891	7	3,884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전체	1,280	-	1,280
	중소기업	1,277	0	1,277
	대기업	3	0	3
B. 광업(05~08)	전체	1,990	1,197	793
	중소기업	1,989	1,197	792
	대기업	1	0	1
C. 제조업(10~33)	전체	410,151	304,416	105,735
	중소기업	408,659	304,413	104,246
	대기업	1,492	3	1,489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전체	674	151	523
	중소기업	605	151	454
	대기업	69	0	69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전체	7,296	2,705	4,591
	중소기업	7,293	2,705	4,588

101) http://211.253.148.167:8083/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B20503&dbUser=nsisupdb
(2018.9. 13.검색)

산업별(9차)대분류	기업규모별	2015		
		전체 (개)	개인사업체 (개)	회사법인 (개)
	대기업	3	0	3
F. 건설업(41~42)	전체	133,627	68,538	65,089
	중소기업	133,373	68,538	64,835
	대기업	254	0	254
G. 도매 및 소매업(45~47)	전체	1,005,153	863,210	141,943
	중소기업	1,004,407	863,210	141,197
	대기업	746	0	746
H. 운수업(49~52)	전체	375,678	352,173	23,505
	중소기업	375,490	352,173	23,317
	대기업	188	0	188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전체	708,418	685,027	23,391
	중소기업	708,387	685,027	23,360
	대기업	31	0	3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전체	38,250	13,835	24,415
	중소기업	38,073	13,835	24,238
	대기업	177	0	177
K. 금융 및 보험업(64~66)	전체	10,512	4,786	5,726
	중소기업	10,198	4,786	5,412
	대기업	314	0	314

산업별(9차)대분류	기업규모별	2015		
		전체 (개)	개인사업체 (개)	회사법인 (개)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전체	124,267	99,292	24,975
	중소기업	124,052	99,291	24,761
	대기업	215	1	214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전체	93,443	60,332	33,111
	중소기업	93,141	60,331	32,810
	대기업	302	1	301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전체	48,435	23,237	25,198
	중소기업	48,401	23,237	25,164
	대기업	34	0	34
P. 교육 서비스업(85)	전체	149,643	139,870	9,773
	중소기업	149,615	139,870	9,745
	대기업	28	0	2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전체	100,494	100,047	447
	중소기업	100,492	100,045	447
	대기업	2	2	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전체	93,826	90,106	3,720
	중소기업	93,810	90,106	3,704
	대기업	16	0	16

산업별(9차)대분류	기업규모별	2015		
		전체 (개)	개인사업체 (개)	회사법인 (개)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5~96)	전체	301,636	292,133	9,503
	중소기업	301,620	292,133	9,487
	대기업	16	0	16

이와 같이 제도를 설계한 직접적인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산재보험 사업연보에서 현행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보험가입 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종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¹⁰²⁾

이를 해석하면, 첫째,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와 유사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특히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들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1인 자영업자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종, 즉 재해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02) 고용노동부,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80쪽.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 즉 특별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첫째, 업무의 실태, 재해의 발생상황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에 준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가?”와 “둘째, 업무의 범위가 비록 근로계약, 노동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업무실태에 있어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더불어 보험관계의 적절한 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를 제시하고 있다.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2, 15쪽.

그러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 근거인 사업주의 근로 종사 상황은 1인 사업주에게 더욱 당연한 상황일 수 있는데, 같은 논리를 1인 사업주에게 적용한다면 이들에게도 업종제한 없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에서 1인 사업주의 적용범위를 일부 업종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¹⁰³⁾

② 임의가입제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임의 가입 방식도 낮은 가입률의 원인일 수 있다. 이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호하는 가입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임의가입(48.3%), 당연가입(30.2%), 당연가입 후 비희망자 적용 제외(14.5%)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¹⁰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절반의 가까운 응답자가 임의 가입을 선호하고 있어 가입의사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가입제 하에서는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③ 보험료 부담, 소득노출 등 경제적 원인

보험료 부담 문제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최저 등급인 1등급을 선택하면 월 2만원대의 보험료 부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산재보험료는 월평균 약 2만 5천원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¹⁰⁵⁾ 이는 상기 현행 최저 월 보험료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현행 제도에서 보험료 부담 문제는 낮은 가입률의 핵심 원인은 아닐 수 있다고 평가된다.

103) 고용노동부측의 비공식적인 설명에 의하면 1인 사업주의 적용대상을 일부 업종으로 제한한 이유는 실무적으로 1인 사업주의 경우 발생된 재해가 작업장에서의 작업과 관련된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에 1인 사업주에 대한 가입업종 제한의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10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방안 연구, 2017. 9, 31쪽.

10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방안 연구, 2017. 9, 32쪽.

소득노출 등에 따른 조세부담 문제의 경우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카드결제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심요인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며, 더욱이 실제로 다수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또 다른 문제이기에 소득노출에 대한 부담을 산재보험 가입과 연계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개연성이 낮은 논리라고 생각된다.

④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직접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로 바쁜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가입서류 준비 등 가입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하는 상황에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고 가입절차까지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가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등은 낮은 가입률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

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

사업주들이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낮아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1인 소상공인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사업주를 위한 산재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76.5%)하였고, 이에 따라 가입의향 또한 비교적 높게 조사되어(75.2%)¹⁰⁶⁾ 사업주의 낮은 필요성 인식과 가입의향은 가입률 저조의 핵심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인지도 조사에서는 사업주 산재보험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9.5%,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54.2%로 나와¹⁰⁷⁾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다고 할 수는 없어 낮은 인지도는 저조한 가입률의 한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원인은 제한적인 적용범위, 특히 1인 사업주의 가입업종 제한, 개인적 가입 등 가입절차의 번거

1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방안 연구, 2017. 9, 29~30쪽.

1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방안 연구, 2017. 9, 28쪽.

로움,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의 경우 관련 논의들을 살펴볼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새로운 정의 개념을 도입할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는 9개 업종 이외의 업종 중 적용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면제 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보험료 부담에 있어 현행 사업주와 특고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논하지는 않고 문제점 정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장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제1절 개 관

제2절 일 본

제3절 독 일

제4절 이탈리아

제5절 호 주

제6절 국가 간 비교

제3장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제1절 개 관

본 연구는 현행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전 세계 국가들의 전반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미국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간한 전 세계 지역별 사회보장프로그램(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이하 SSPTW) 자료를 기초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 소재 주요 국가의 산재보험제도에서 자영업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3-1]과 같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유럽 소재 국가 대부분은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 소재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도입사례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재보험제도가 유럽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발전해왔다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정도가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메리카의 경우 멕시코, 페루, 쿠바, 칠레 등이 도입하고 있으나, 브라질,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의 네덜란드와 영국,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사회보장체계나 자영업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 재해문제를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의 특징에서 보면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는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으나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아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제도라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다.¹⁰⁸⁾ 다만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는 각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 종속근로자 산재보험제도의 성숙 여부, 자영업자의 정의 및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비중(취업구조, 등) 등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 및 OECD 회원국 다수가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제도를 통한 자영업자의 재해보호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1]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현황

적용 국가	적용제외 국가
유 럽	
오스트리아(Trade and industry, 농업), 스페인(일부 자영업자, 임의), 스웨덴, 스위스(임의), 덴마크(자영업자 및 그 배우자, 임의), 핀란드(임의), 노르웨이(임의), 프랑스(비농업 자영업자, 자영업자), 독일(일부 강제, 대부분은 임의), 포르투갈, 이탈리아(대부분의 직업에서의 자영업자), 불가리아(자영업자, 사업주(bussiness owners), 농부, working pensioners의 임의),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영주자), 헝가리(협동조합	알바니아, 벨라루스, 벨기에, 키프러스(Cyprus),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영국 등

108)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2016, 11쪽에서 “작업 재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commonly) 임금노동자(wage and salary workers)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자영업자를 배제한다(exclude self-employed).”고 기술하여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배제가 일반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SSPTW Asia 2016, 11쪽, SSPTW America 2015, 11쪽에서도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

적용 국가	적용제외 국가
회원, 자영업자, 독립농부, 실업수당 수령자), 아이슬란드(자영업자, 도제, 구조작업종사자, 운동선수), 리히텐슈타인(임의가입), 룩셈부르크(자영업자, 도제), 몰타, 몰도바, 모나코, 폴란드(자영업자 포함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루마니아(자영업자, 농업종사자 및 일부 작업자, 임의), 세르비아(농부 제외), 슬로베니아, 터키 등	
아 시 아	
호주(임의, 일부 자영업자), 한국, 일본(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 뉴질랜드(시민 및 거주자), 대만(직업조합의 회원인 자영업자) 등	중국,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
아메리카	
멕시코(임의), 페루, 쿠바, 에콰도르, 칠레 등	브라질,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등

자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PTW: Europe, 2016; SSPTW: Asia 2016; SSPTW: America 2015를 기초로 필자가 정리함.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도입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상기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몇몇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국가의 선정을 위해 여러 가지 기준들이 고려될 수 있지만, 본연구의 제2장에서 도출한 현행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조사대상국가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 적용대상에 있어 전면적 시행국가와 일부 업종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국가, 2) 의무가입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3) 자영업자가 많은 국가와 적은 국가, 4)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국가, 5)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유사한 국가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일본,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제2절 일 본

1. 자영업자 개념

일본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자와 소규모사업자를,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에서 소규모기업자와 소기업자를 각각 정의하고 있다.

[표 3-2] 일본법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용어와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법 제2조 제1항, 제5항)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법 제2조 제1항, 제2항)		일인친방 (一人親方)	소득세법 기본통달 (1-1-1)	
	중소기업자	그 중 소규모 사업자	소규모 기업자	소기업자		개인사업자	
업종	자본금 또는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자 (1인친방의 배우자, 동거의 친족 등 포함)	자신의 계산에서 독립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3억엔 이하	300명 이하	20명 이하	20명 이하			5명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100명 이하	5명 이하	5명 이하			5명 이하
서비스업	5000만엔 이하	100명 이하	5명 이하	5명 이하			5명 이하
소매업	5000만엔 이하	50명 이하	5명 이하	5명 이하			5명 이하

자료: 中小企業庁(2015), 『小規模企業白書2015』, 3쪽.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2), 한국 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8.7.4., 10쪽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업종별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자, 소규모사업자, 소규모기업자, 소기업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규모사업자와 소규모기업진흥법상 소규모기업자의 업종별 종업원 기준이 같으므로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일인친방은 일본 특유의 개념인데, 관련 법률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인친방(一人親方)이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하는 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해도 근로자 아닌 자(예를 들면, 일인친방의 배우자, 동거의 친족)를 말한다.”라고 정의된다.¹⁰⁹⁾ 임금근로자와 대비하여 본다면, 일인친방은 누군가에게 사용되고 있지 않고, 노동법상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일종의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¹¹⁰⁾

한편 소비세법 기본통달(1-1-1)에서 개인사업자와 급여소득자를 구분하면서 개인사업자를 “자신의 계산에서 독립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¹¹¹⁾라고 상당히 광의로 정의하고 있다.

2. 자영업자 현황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¹¹²⁾, ‘노동력인구’란,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합한 것을 말하고, ‘취업자’는 ‘종업자’와 ‘휴업자’를 합한 것, ‘종업자’는 조사기간 중, 임금, 급료, 제수당, 내직수입 등의 수입을 동반하는 일을 1시간 이상을 한 자를 각각 말한다. 일본의 노동력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6720만명이다([그림 3-1]).

109)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2),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8.7.4.,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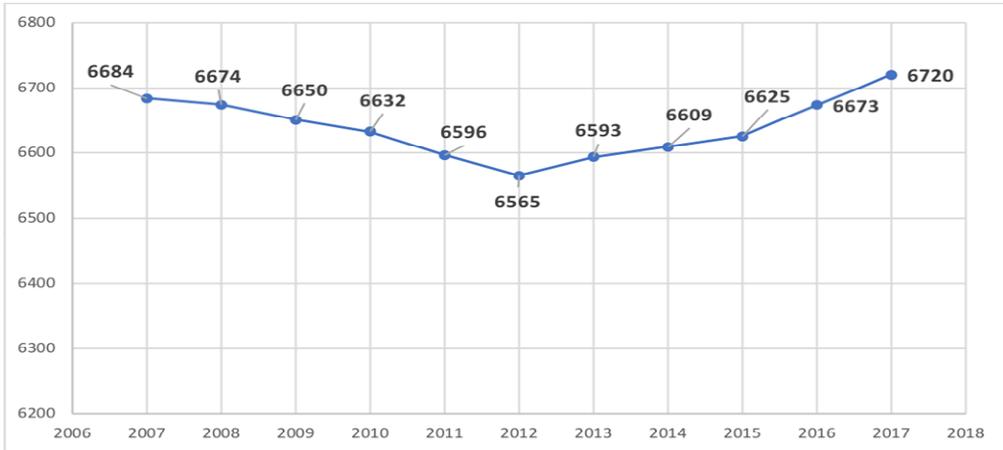
110)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2),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8.7.4., 11-12쪽.

111)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2),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8.7.4., 12쪽.

112)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基本集計)2017年平均(速報), 2018年, 용어의 해설 부분.

[그림 3-1] 일본의 노동력인구 추이

(단위: 만명)



출처: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基本集計)2017年平均(速報), 2018年, 1쪽.

또한 상기 자료에서 ‘취업자’를 종업상의 지위에 따라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고용자’¹¹³⁾로 나누고 있으며, 이때 자영업주는 개인경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¹¹⁴⁾, 가족종사자는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그 자영업주가 영위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고용자는 회사, 단체, 관공청 또는 자영업주나 개인가정에 고용되어 급료, 임금을 받고 있는 자 및 회사, 단체의 임원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다.¹¹⁵⁾

이러한 용어의 정의 하에, 2017년 평균 취업자 수는 6,530만명이며, 이중 고용자는 5,819만명으로 취업자 수의 89.1%, 자영업주와 그 가족종사자는 679만명(자영업주 528만명, 가족종사자는 151만명)으로 10.4%(가족종사자를 제외하면 8.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¹¹⁶⁾

113) 일본어의 ‘고용자’는 우리의 고용원(즉 임금근로자)을 말한다.

114)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주는 개인경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므로 자영업주 통계에서 법인기업의 사업주는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법인이 아닌 개인경영 형태는 고용원이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비슷한 규모의 자영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1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경영 자영업주 129만명에 고용원이 1명부터 몇 명까지인지 불분명하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검토한다.

115)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基本集計)2017年平均(速報), 2018年, 용어의 해설 부분.

116)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基本集計)2017年平均(速報), 2018年, 21쪽, 第1表 就業状態別15歳以上人口, 産業別

[표 3-3] 일본의 종업상 지위별 취업자의 추이

(단위: 만명)

	취업자	자영업주·가족종사자		고용자	
			비율(%)		비율(%)
2007	6427	861	13.4	5537	86.2
2008	6409	833	13.0	5546	86.5
2009	6314	800	12.7	5489	86.9
2010	6298	772	12.3	5500	87.3
2011	6293	757	12.0	5512	87.6
2012	6280	740	11.8	5513	87.8
2013	6326	729	11.5	5567	88.0
2014	6371	727	11.4	5613	88.1
2015	6401	708	11.0	5663	88.5
2016	6465	684	10.6	5750	88.9
2017	6530	679	10.4	5819	89.1

자료: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基本集計)2017年平均(速報), 2018, 7쪽을 기초로 재정리.

자영업주 528만명 중에서 1명이상의 유급 종업자를 고용하여 개인경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주는 129만명이며, 종업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만 또는 자신과 가족만으로 개인경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400만명이다.¹¹⁷⁾ 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전체 자영업주 중 1인 자영업주의 비율은 59%이다.

상기 전체 자영업주 수 679만명은 농림업과 비농림업을 합친 수인데, 이중 비농림업은 535만명(사업주 439만명, 가족종사자 97만명), 농림업은 144만명(사업주 90만명, 가족종사자 54만명)이다. 전체 취업자 중 농림업을 제외한 비농림업 자영업주의 비율은 약 8.2%이며, 여기서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439만을 기준으로 하면 6.7%로 더 낮아진다.

就業者数, 求職理由別完全失業者数.

117) I-1 취업상태/취업상의 지위/고용형태(고용자에 대해서는 종업자 규모)/농림업/비농림업별 15세 이상 인구(I-1 就業状態・従業上の地位・雇用形態 (雇用者については従業者規模・農林業・非農林業別15歳以上人口),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31&tstat=000000110001&cycle=7&year=20170&month=0&tclass1=000001040276&tclass2=000001040283&tclass3=000001040284&result_back=1(2018.9.3.검색)

[표 3-4] 일본의 농림업 및 비농림업 자영업주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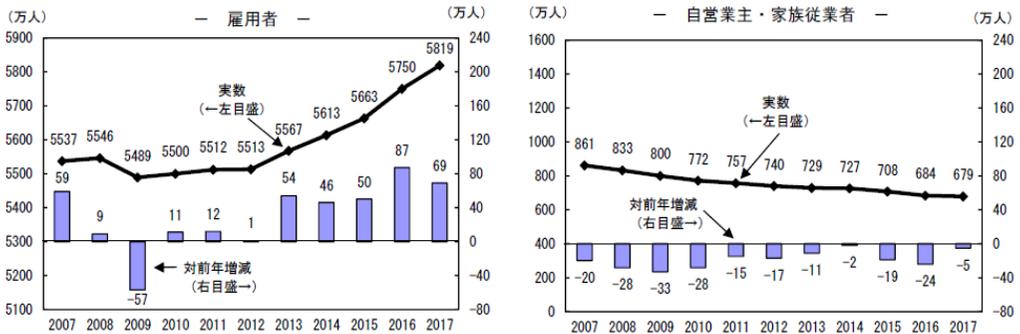
(단위: 만명)

비농림업			농림업			합계			
사업주	가족	소계	업주	가족	소계	사업주	가족	총계	
439	97	535	90	54	144	528	151	679	
고용원		·	고용원		·	고용원			
유	무	·	유	무	·	유			무
114	325	·	15	75	·	129			400

자료: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基本集計)2017年平均(速報), 2018年, 21쪽, 第1表 就業状態別15歳以上人口, 産業別就業者数, 求職理由別完全失業者数を 기초로 재정리.

[그림 3-2] 일본의 고용자와 자영업주·가족종사자의 추이

(단위: 만명)



자료: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基本集計)2017年平均(速報), 2018, 7쪽.

한편, [표 3-4]와 [그림 3-2]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 10년 간 일본의 자영업주 수는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고용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기회의 증가가 자영업주 감소의 배경 중 하나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영업자 재해보험제도¹¹⁸⁾ 및 운영 현황

(1) 개 관

일본에서의 노동자 재해보험은 1947년 4월에 제정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노재보험법)>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다. 이 법 제1조 입법목적에서는 “노동자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를 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급부를 행하고, 아울러 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해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사회복귀의 촉진, 당해 노동자 및 그 유족의 원호, 적절한 노동조건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또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적용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이 법률에서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사업으로 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¹¹⁹⁾

이를 통해 일본의 노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일본의 노동기준법상 노동자¹²⁰⁾, 즉 통상적인 종속관계에 있는 임금노동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행 노재보험법상 노재보험은 크게 통상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보험과 예외적으로 노재보험가입을 허용하는 특별가입보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특별가입보험에 자영업자의 재해보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가입보험은 ① 중소기업사업주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제1종 특별가입보험, ② 일인친방, 그 외 자영업자와 이들의 사업에 종사하는 가족종사자, ③ 특정작업종사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제2종 특별가입보험, 해외파견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제3종 특별가입보험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18) 일본에서는 산재보험이라는 용어 대신 ‘재해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의 일본 사례 부분에서는 가급적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119)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적용제외대상으로 국가의 직영사업, 관공서사업, 선원보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다.

120)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노재보험법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노동자 개념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일본의 노재보험법이 노동기준법상 산재보상제도를 분리하여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노재보험법상 노동자의 개념은 비록 노재보험법에 별도의 정의 조항 또는 노동기준법상 노동자 정의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당연히 노동기준법상 노동자 정의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제1종 특별가입자	중소기업사업주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족종사자)
제2종 특별가입자	일인친방, 그 외 자영업자 및 이들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족종사자)
	특정작업종사자
제3종 특별가입자 ¹²¹⁾	국내사업의 해외파견 근로자 및 사업주, 해외개발도상국 파견자

이들 특별가입보험 중 제1종의 모든 업종, 제2종과 제3종의 일부 업종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이라 할 수 있다. 제3종에 속하는 해외파견 사업주는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본 연구의 목적이 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생략하였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제1종과 제2종 특별가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적용범위

구체적으로 제1종 및 제2종 특별가입보험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1) 노재보험법 제33조: 6. 이 법률의 시행지 외의 지역 중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의 실시 사업(사업의 기간이 예정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단체가, 해당 단체의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해당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에 관한 보호제도의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국가의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종사시키기 위해서 파견하는 자 ; 7. 이 법률의 시행지 내에서 사업(사업의 기간이 예정된 사업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사업주가, 이 법률의 시행지 외의 지역(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에 관한 보호제도의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국가의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종사시키기 위해서 파견하는 자(해당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파견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처럼 노재보험법 제33조 제6호와 7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해외파견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후생노동성, 도도부현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이하 후생노동성 등이라 함),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해외파견자 용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rousai/040324-7.html>(2018.8.30. 검색)}에서는 제3종 특별가입보험의 대상자인 해외파견자를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 (국내사업의 해외파견 근로자) 일본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유기사업을 제외)에서 파견되어,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업(해외지점, 공장, 현장, 현지법인, 해외의 제휴처 기업 등)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해외개발도상국 파견자) 해외의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의 실시 사업(유기사업을 제외)을 행하는 단체(독립행정법인인 국제협력기구 등)에서 파견되어, 개발도상지역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 ③ 일본국내의 사업주(유기사업을 제외)로부터 해외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또는 소매업은 50명;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은 100명)에 사업주,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파견되는 사람”. 이 중 ② 가 노재보험법 제33조 제6호, ①과 ③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 중 ① 명백히 근로자이므로 자영업자 범위에 속하지 않고, ②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일 수 있고, ③은 사업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 제1종 특별가입자: 중소기업사업주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족종사자)

여기서 중소기업사업주란 상시 300명(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은 100명, 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소매업은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며,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가족종사자, 대표자 이외의 임원을 말한다.¹²²⁾ 근로자를 1년 내내 고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1년간 100일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¹²³⁾

노재보험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개업변호사의 경우 제1종 특별가입자로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그 경우가 아주 희박하겠지만 고용원이 없는 1인변호사사무소는 제2종 특별가입자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2) 제2종 특별가입자: 일인친방, 그 외 자영업자 및 이들의 사업에 종사하는 가족종사자(일인친방 등)와 특정작업종사자

① 일인친방 등

일본의 노재보험제도에서 ‘일인친방’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쉽지 않다. 일본 노재보험법상 ‘일인친방’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노재보험법상 ‘일인친방’의 의미>

우선 ‘일인친방’이라는 용어는 노재보험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 22의 2 이하의 일인친방 등의 특별가입 절차를 규정하면서 전체 제목으로서 “(일인친방 등의 특별가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의 일인친방 등의 산재보험 가입 설명자료의 제목에서 “특별가입제도의 안내서 <일인친방, 기타 자영업자용>”이라 하여 제2종 특별가입자를 일인친방과 기타 자영업자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 안내서에서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 17에서 일인친방 등의 사업 7가지 유형을 ① 개인택시사업자, 개인화물운송사업자, ② 건설업의 일인친방 등, ③ 어선에 의한 자영업자, ④ 임업의 일인친방 등 ⑤ 의약품의 배치판매업자, ⑥ 재생자원취급업자, ⑦ 선업법

122)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2),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8.7.4., 41-42쪽.

123)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 <중소사업주용>, 3쪽,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rousai/dl/040324-5.pdf>

제1조에서 규정하는 선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일인친방의 의미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사업자) 중 특정업종, 즉 건설업과 임업의 1인 사업자를 일인친방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자영업자, 즉 1인 자영업자 모두를 일인친방으로 부르지 않고, 건설업과 임업 이외의 1인 사업주는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인 자영업자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일인친방은 1인자영업자 중 건설업과 임업의 1인자영업자를 특정하여 부르는 용어로 이해된다.¹²⁴⁾

제2종 특별가입자인 일인친방 등에 대해 노재보험법 제33조 제3호에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일반적인 형태(常態)로 하는 자”와 동법 제4호에서 “전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 17에서 일인친방 및 기타 자영업자의 사업 7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1. 자동차여객운송 또는 자동차화물운송을 하는 자(개인택시 등)
2. 토목·건설 등을 행하는 자(목수, 미장이)
3. 어선에 의한 수산동식물 채포(採捕)를 하는 자(어선에 탑승하여 그 사업을 행하는 자에 한정됨)
4. 임업을 행하는 자(입목의 벌채, 조림, 목탄 또는 장작을 생산, 그 외 임업을 행하는 자)
5. 의약품의 배치판매를 행하는 자(의약품의료기기등법 제30조125)의 인가를 받고 행하는 의약품배치판매를 행하는 자에 한정됨)
6. 재생이용 목적의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선별, 해체 등을 행하는 자
7. 선원법 제1조126)에서 규정하는 선원이 실시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

124) 이와 관련 일부 문헌(예컨대 윤조덕,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2012.3.), 46쪽)에서는 ‘일인친방’이라는 용어 대신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인친방과 기타 자영업자의 특별가입제도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인친방이 1인자영업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5)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약품의료기기등법) 1960년 법률 제45호(배치판매업의 허가)

제30조 배치판매업의 허가는 배치하고자 하는 구역을 그 구역에 포함하는 도도부현마다 그 도도부현 지사가 부여한다.

②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항의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가 배치하는 것, 기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의약품의 배치판매를 하는 체제가 적절하게 의약품을 배치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으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을 때

1. 신청자가 제5조 제3호 가에서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26) 선원법(1947년 법률 제100호)

(선원)

이 중 “1. 자동차여객운송 또는 자동차화물운송 사업자”의 세부 내용을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²⁷⁾

1. 도로운송법(1951년 법률제183호) 제4조의 일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1989년 법률 제83호) 제3조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사업의 실행이 운송 사업에 해당되고, 토사 등을 운반하는 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년 법률 제131호)의 적용을 받는 자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1989년 법률 제83호) 제36조의 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를, 오토바이 택배사업자*에게 맡겨 해당 오토바이 택배사업자에게 전속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 도로운송법(1951년 법률 제183호) 제78조 제3항의 유상운송의 허가를 받은 자(*가운데,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원동기가 부착된 자전거를 사용하여 행하는 화물운송사업(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일인친방과 기타 자영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가족종사자는 사업주와 동거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족종사자라고 해도 사업주가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에서 일반사무 또는 현장작업 등에 종사하고, 동시에 업무를

제1조 이 법률에서 ‘선원’이란, 일본선박 또는 일본선박 이외의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 및 해원과 예비선원을 말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에는 다음의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 강 또는 항구만을 항해하는 선박

정령이 정하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전3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정자법(1951년 법률 제149호)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소형선박으로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이용되는 요트, 모터보트, 기타 그 항해의 목적, 기간 및 양태, 운항체계 등에서 보아 선원근로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것

③ 전항 제2호의 항구의 구역은 항직법(1948년 법률 제174호)에 근거로 하는 항구의 구역의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구역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토교통대신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항구를 지정하고, 이와 다른 구역을 정할 수 있다.

127) 自動車を使用して行う旅客又は貨物の運送の事業に係る特別加入の取扱いについて(平成25年3月1日), (基発0301第1号)(都道府県労働局長あて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長通知),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일인친방 등 기타자영업자 용>, 3쪽.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rousai/dl/040324-6.pdf>(2018.8.30.검색)

행할 때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르고 있는 것이 명확하고 취업실태가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같고, ①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및 ② 임금의 결정, 계산 및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일 및 지급의 시기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가 다른 근로자와 같게 이루어지면 근로자로 간주된다.¹²⁸⁾

한편, 일인친방의 가족종사자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가족종사자의 특별가입은 이들 가족종사자가 일하고 있는 일인친방의 사업주의 노재보험가입을 전제로 한다. 일인친방 등의 사업주가 노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족종사자만 노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가입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본인 외에, 가족종사자, 임원 등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전원이 포괄 가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병이나 고령에 따른 취업은퇴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특정 개인만 탈퇴할 수는 없다.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특별가입자 전원 탈퇴가 된다. 또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가입 시에 건강진단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동일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마다 특별가입해야 한다.¹²⁹⁾

한편, 노재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사업주와 일인친방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인친방은 법령에서 열거된 업종만 일인친방으로서 노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상기 열거된 일인친방 업종 이외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노재보험에 가입하게 된다.¹³⁰⁾

② 특정작업종사자의 일부

제2종 특별가입자로서 노재보험법에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실무적으로 특정작업종사자라고 부르며, 구체적으로 [표 3-5]와 같다.¹³¹⁾

128)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hoken/dl/040330-4g.pdf>(2018.8.30. 검색), 소상공인 지역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2),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8.7.4., 44쪽 각주 20.

129) 앞의 자료, 42쪽 각주 18.

130) 앞의 자료, 42쪽 각주 19.

131)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18.

[표 3-5] 특정작업종사자의 범위

1. 농업(축산 및 양잠사업 포함한다)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작업종사자¹³²⁾
- (1) 특정농작업종사자: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규모¹³³⁾의 사업장에서의 토지의 경작 혹은 개간, 식물의 재배 혹은 채취 또는 가축(가금 및 밀봉을 포함한다) 혹은 누에의 사육 작업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농업인(근로자 이외의 가족종사자 등을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① 동력에 의해 가동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②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개소에서 작업
 - ③ 사일로, 암굴 등의 산소결핍위험장소에서의 작업¹³⁴⁾
 - ④ 농약살포 작업
 - ⑤ 소, 말 또는 돼지에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 (2)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농업인(근로자 이외의 가족종사자 등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기계를 사용하고, 토지의 경작, 개간 또는 식물의 재배, 채취의 작업을 하는 사람
 - ① 동력 경운기, 기타 농업용 트랙터
 - ② 동력 도랑굴착기
 - ③ 자주식(自走式) 벼이앙기
 - ④ 자주식 스피드 스프레이어, 기타 자주식 방제용 기계
 - ⑤ 자주식 동력 수확기, 콤팩트, 기타 자주식 수확용 기계
 - ⑥ 트랙, 기타 자주식 운반용 기계
 - ⑦ 다음의 정지식 기계 또는 휴대식 기계: 동력 양수기, 동력 풀베는 기계, 동력 커터, 동력 적채기, 동력 탈곡기, 동력 전정기, 동력 전지기, 동력 사슬 톱, 껌조식 운반기, 콘베이어
 - ⑧ 무인항공기 (농약, 비료, 종자 혹은 제설제의 살포 또는 조사에 이용되는 것에 한한다)

132) 노재보험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과 후생노동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특정작업종사자 용>, 3·4쪽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노재보험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특정농작업종사자 및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의 가족종사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후생노동성의 안내서에는 가족종사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법률과 시행규칙에 없는 내용들이 후생노동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후생노동성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기본통달에 규정된 내용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부처가 제정하는 기본통달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에 따라 법령과 시행규칙에는 없고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에만 있는 업종의 범위, 세부기준 등은 기본통달에서 발췌한 것으로 추측된다.

133) ‘연간의 농업생산물(축산 및 양잠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의 총 판매액이 300만 엔 이상’ 또는 ‘경영경지면적이 2헥타르 이상’의 규모(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영농집단 등을 포함)를 말함. 또한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 하는데 있어서 농가의 집단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이른바 지역영농집단 또는 농사조합법인의 규모가 연간 농업생산물 총 판매액 300만 엔 이상 또는 경영경지면적 2헥타르 이상이라면, 각 구성농가는 특별가입을 위한 규모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취급됨. 후생노동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특정작업종사자 용>, 3쪽,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rousai/dl/040324-8.pdf>(2018.8.30. 검색)

134)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1972년 정령 제318호) 별표 제6 제7호: 탈곡 혹은 사료의 저장, 과일과 야채의 숙성, 종자의 발아 또는 버섯류의 재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암굴, 창고, 전창 또는 핏트의 내부.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종사자:
- (1) 직장적응훈련종사자: 구직자를 작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행해지는 작업
 - (2) 사업주단체 등의 위탁훈련종사자: 구직자의 취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단체에 위탁되는 것(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행해지는 작업
3. 가내근로자 및 그 보조자: 가내노동법상 가내근로자 또는 그 보조자로서,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다음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¹³⁵⁾
- (1) 프레스기계, 본붙이기 기계, 프레스절단(성형)기계, 전단기, 선반, 드릴 프레스 또는 플레이즈반을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 합성수지, 가죽, 고무, 직물 또는 종이의 가공 작업
 - (2) 금속제 양식기, 칼, 밸브 또는 마개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한 작업 중,
 - ① 연삭기나 버핑머신을 사용하여 행하는 연삭 혹은 연마의 작업
 - ② 용해한 납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담금질, 담금질한 금속 열처리 작업
 - (3)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 또는 특별유기용제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중, 이하의 어느 한 가지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한 것
 - ① 신발, 구두, 주머니, 복장용 벨트, 글러브, 미트(화학물질제, 가죽제, 포제의 것에 한한다)
 - ② 목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칠기
 - (4) 도자기의 제품에 관한 작업 중,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① 분진작업
 - ② 납화학물을 함유하는 유약을 사용하여 행하는 시유의 작업
 - ③ 납화학물을 함유하는 물감을 사용하여 행하는 도자기 굽기 작업
 - ④ 시유, 도자기 굽기 작업을 행한 물건의 소성 작업
 - (5)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합사기, 실꼬기기 또는 직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 (6)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중, 이하의 어느 한 가지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한 것
 - ① 불단
 - ② 목제 혹은 죽제의 식기¹³⁶⁾
4. 노동조합, 기타 이에 준하는 곳(이하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노동조합 등¹³⁷⁾으로, 노동조합 등의 사무소, 사업장, 집회장 또는 도로, 공원, 기타 공공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에서의 집회 운영, 단체교섭, 기타 해당 노동조합 등의 활동에 관한 작업(작업에 필요한 이동을 포함) 작업에 종사하는 1인 전임임원을 말함

135) 가내근로자 및 그 보조자에 대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특정작업종사자 용>, 5쪽의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함.

136) 이처럼 지정된 작업을 행하는 가내근로자 및 그 보조자라고 해도, 특별가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에 200일 이상 그 작업에 종사하고, 1일의 취업시간이 평균하여 4시간 이상이 전망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후생노동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특정작업종사자 용>, 5쪽.

137) 이 경우의 노동조합 등이란 이하의 것을 말함: ①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5. 개호작업종사자와 가사지원종사자

- (1) 개호작업종사자: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법률(1992년 법률 제63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호(돌봄)관계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으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기타 일상생활상의 돌봄, 기능훈련 또는 간호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는 사람
- (2) 가사지원종사자¹³⁸⁾: 가사(취사, 세탁, 청소, 쇼핑, 아동의 일상생활상의 돌봄 및 필요한 보호, 기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

상기 특정작업종사자 모두가 자영업자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자영업자로 볼 여지가 강한 항목은 1.의 특정농작업종사자 및 지정농기계작업종사자¹³⁹⁾, 3.의 가내근로자와 그 보조자(가족종사자)¹⁴⁰⁾라 할 수 있다. 이중 가내근로자에 대해 일본 가내노동법 제2조 제2항에서 “물품의 제조, 가공 등 혹은 판매 또는 이러한 것의 도급을 업으로 하는 자, 기타 이러한 행위에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주로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하여 그 업무의 목적물인 물품(물품의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를 포함)에 대하여 위탁을 받고,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 등에 종사하는 자로, 그 업무에 대하여 동거의 친족 이외의 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상태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 가내근로자는 중소기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다른 일종의 ‘유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즉 외부업자로부터 도급

② 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3 제5항 혹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직원단체; ③ 직원단체 등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증된 직원단체 등; ④ 국회직원법 제18조의 2의 조합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 각호(제8호를 제외)에 열거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규약을 가진 것. 후생노동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특정작업종사자 용>, 6쪽.

- 138) 가사지원종사자는 노재보험법시행규칙에는 없지만 후생노동성의 안내서에서 포함되어 있으며, 개호작업종사자와 가사지원종사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실제로 행하는 작업이 ‘개호작업’ 또는 ‘가사지원작업’의 어느 한쪽 만이라고 해도, 특별가입할 때 정리상으로는 ‘개호작업종사자 및 가사지원종사자’로 가입하게 되고, 그 어느 작업에도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고 함.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특정작업종사자 용>, 6쪽,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rousai/dl/040324-8.pdf>(2018.8.30. 검색)
- 139) 이중 농작업종사자의 경우 일인친방 등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어업종사자, 임업종사자와 유사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작업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140) 가내노동법 제2조 제4항에서 가내근로자의 보조자를 “가내근로자의 동거의 친족으로, 해당 가내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내근로자의 보조자는 가족종사자라 할 수 있다.

또는 위탁을 받아 일을 처리해 주는 독립계약자로서 근로의 형태는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임금을 전제한 노동이 아니라 독립된 노동을 하기에 자영업자(사업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¹⁴¹⁾

다음으로 5의 개호작업종사자와 가사지원종사자는 구체적인 취업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종사자, 4.의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은 자영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일본 노재보험법에서 일인친방 등과 특정작업종사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궁극할 수 있다. 우선 양자는 대체로 1인 이상의 상시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주와 대비되는 1인 자영업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특정작업종사자 중 가내근로자가 대표적인데, 가내근로자는 일인친방처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작업을 한다는 점과 가족종사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본의 실무가들 역시 양자의 관계에 대해 이와 비슷한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즉 일인친방은 건설 등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인친방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개인사업자(즉 1인 자영업자)를 특정작업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노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것이다.¹⁴²⁾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가내근로자 외에 다른 특정작업종사자의 종류를 고려할 때 부족해 보인다. 왜냐하면 특정작업종사자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인친방과 달리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특정작업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정작업종사자를 규정하고 있는 노재보험법 제33조 제5호에서는 일인친방의 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노재보험법 제33조 제4호 다음에 호를 추가하여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같은 가족종사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가내근로자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인친방에 관한 규정에서와 같은 가족종사자 규정을 두고 있다.

141)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2),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8.7.4., 44쪽 각주 20.

142) 일본 현지 전문가 인터뷰 중에서 일인친방과 특정작업종사자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 현지 전문가가 답변한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함.

제2종 특별가입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열거된 것 이외의 1인 사업주는 노재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이해되므로 음식점, 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의 1인 사업주는 특별가입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일본의 노재보험법상 자영업자 적용대상 요약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업종의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사업주 및 그 가족종사자 ○ 일부 업종의 1인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자(개인택시, 덤프트럭, 오토바이 택배기사, 자전거화물운송업자 등) - 토목·건설 등업자 - 어선 수산동식물 채포(採捕)업자 - 임업종사자 - 의약품배치판매자 - 재활용품사업자 - 선원법상 선원의 사업 - 농축산업 종사자 및 가족종사자 -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및 가족종사자 - 가내근로자 및 그 보조자(프레스기계 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 한정) - 개호(돌봄)종사자 - 가사지원종사자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열거된 1인자영업자 이외의 업종종사자(예술인, 자동차정비업자, 숙박업, 요식업 등 주로 서비스업 사업주)

출처: 자체 정리

(3) 가입절차

1) 가입방식: 임의 가입

1, 2, 3종 특별가입 노재보험은 모두 임의가입 형식이다. 이들 이외에 근로자를 한 사람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은 강제적용사업으로 간주된다.¹⁴³⁾ 여기서 ‘근로자’란 일본 노동기

143) 노재보험법 제3조 제1항

준법 제9조에서 규정한 근로자로서 “직업을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소에 사용되는 자로, 임금을 지불받는 자”를 의미하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도 노재보험 강제적용 대상이 된다.¹⁴⁴⁾

한편, 노재보험의 잠정(당분간)임의적용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농림수산업 가운데 노동보험에 가입할지의 여부가 사업주의 의사나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업을 말한다.¹⁴⁵⁾ 구체적으로 첫째,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개인경영 농업으로 특정 위험 또는 유해한 작업을 주로 행하는 사업 이외의 것, 둘째, 근로자를 상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또한 연간 사용하는 총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개인 경영의 임업, 셋째,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개인경영의 축산, 양잠 또는 수산(총톤 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사업 등)의 사업은 잠정임의적용사업으로 간주된다.¹⁴⁶⁾

노재보험법상 노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즉 적용제외 사업은 국가의 직용사업(일본우정공사, 국유임야사업,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 독립행정법인 조폐국은 적용제외됨)과 관공서의 사업(비현업의 관공서는 적용제외이지만, 지방공무원 가운데 현업부문의 비상근직원은 적용됨)이다. 대신 이들 사업은 다른 법률에 의해 산업재해가 커버된다. 이 상에서 살펴본 일본 노재보험법상 노재보험 적용범위와 방식을 요약하면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일본의 노재보험법상 적용범위와 방식

적용	강제	근로자를 한 사람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임의	특별가입대상: 중소기업사업주 등, 일인친방 등 및 특정작업종사자, 해외파견자

144)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2),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8.7.4., 28쪽

145) 앞의 자료, 29쪽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외 선진 산재보험제도 심층 조사·연구[독일·일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12., 195쪽. 사업주가 반대하고 근로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146) 앞의 자료, 29쪽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외 선진 산재보험제도 심층 조사·연구[독일·일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12., 195쪽.

잠정 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개인경영 농업으로 특정위험 또는 유해작업 이외의 사업 - 비상시 근로자 사용하고 연간 총 사용 근로자 300인 미만의 개인경영 임업 - 근로자 수 5명 미만 개인경영의 축산, 양잠 또는 수산(총톤 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사업 등)의 사업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본인(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단 상기 특별가입제도를 통해 일부 사업주는 임의가입 가능 - 국가의 직용사업(일본우정공사, 국유임야사업,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 독립행정법인 조폐국은 적용제외됨) - 관공서의 사업(비현업의 관공서는 적용제외이지만, 지방공무원 가운데 현업 부문의 비상근직원은 적용됨)

자료: 자체 정리

2) 중소기업주 등의 가입절차

① 가입의 일반요건

중소사업주 등이 특별가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 둘째, 노동보험의 사무처리를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하고 있는 것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소관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¹⁴⁷⁾ 이와 같은 승인은 사업주가 노재보험법 또는 징수법 또는 이들 법률에 근거한 노동성령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정부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¹⁴⁸⁾ 가입의 일반요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용원의 노재보험관계 성립

첫째, 중소기업주는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위한 노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주 노재보험 특별가입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들 근로자

147) 노재보험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중소사업주 용>,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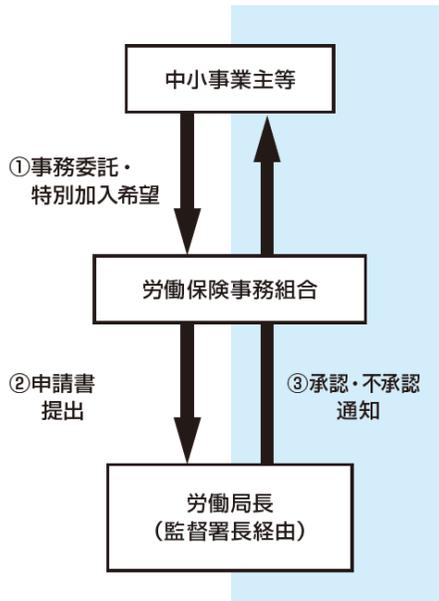
148) 노재보험법 제34조 제3항.

들을 위한 노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주 홀로 자신을 위한 노재보험 가입을 한다는 것은 노재보험제도의 기본취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주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노동보험사무의 노동보험사무조합 위탁

둘째, 노동보험의 사무처리를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주가 직접 가입할 수는 없고, 반드시 노동보험사무조합과 같이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사무조합의 가입자인 사회보험노무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그림 3-3]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주 등은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보험가입사무를 위탁하면 노동보험사무조합이 이러한 위탁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국장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진다.

[그림 3-3] 중소기업주 등의 가입절차



자료: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중소사업주용>, 4쪽.

이와 같은 노동보험사무조합에 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보험사무조합이란, 사회보험노무사 혹은 중소기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상 사업협동조합, ‘상공회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상 상공회의소, 기타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가, 그 구성원인 사업주 또는 구성원 이외의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노동보험의 보험료 납부, 기타 노동보험에 관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중소기업주(중소영세기업)의 부담 경감 및 노동보험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이다.¹⁴⁹⁾ 행정관청(노동기준감독서장 혹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중소사업주(특히 영세사업주)에게 직접 가서 노동보험 가입을 촉구한다고 해도 사업장 수에 비하여 필요한 인력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보험사무조합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중소사업주에 대한 노동보험의 적용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소사업주 특별가입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에 있어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⁵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통 노동보험사무조합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사업주들이 보험사무처리를 위해 새로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주 단체 등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후생노동성의 인가를 받아 노동보험사무조합의 호칭과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만들어진다.¹⁵¹⁾ 예컨대 아래 제2종 특별가입자단체를 예시한 [표]에서 소개하는 홋카이도에 있는 ‘노동보험사무조합 아사히카와민주상공회’의 명칭에서 보면 ‘아사히카와민주상공회’라는 사업주 단체가 노동보험사무조합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표]에 있는 ‘IM 홋카이도 안전협회’의 명칭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이라는 명칭이 없는데, 동 사업주 단체는 노동보험사무조합 자격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제1종특별가입자인 중소사업주는 노동보험사무조합 자격이 있는 ‘노동보험사무조합 아사히카와민주상공회’를 통해서 보험사무위탁이 가능하지만, 노동보험사무조합 자

149) 박수경, 일본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검토(2), 한국법제연구원, 2018.7.4., 54쪽.

150) 일본 현지 조사에 의하면 노동보험사무조합과 사회보험노무사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소의 노동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회원이나 고객 이외의 미가입사업소 목록을 받아 가입촉진을 실시해왔으며, 현재 노동보험의 수납률은 98.3%로 높은 수준인데, 노동보험사무조합과 같은 보험관리구조가 일조한 결과로 이해된다. 박수경, 앞의 자료, 54쪽 및 같은 쪽 각주 24.

151) 労働新聞社編, 『労働保険事務組合の実務 平成30年版』, 労働新聞社, 2018, 92쪽.

격이 없는 ‘IM 핫카이드 안전협회’를 통해서도 보험사무위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제2종특별가입자의 경우 노동보험사무조합 자격이 있는 사업주 단체와 노동보험사무조합 자격이 없는 사업주 단체라도 제2종특별가입단체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그 사업주 단체를 통해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보험사무조합으로서 노동보험에 관한 사무를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는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¹⁵²⁾, 인가의 주요 조건은 해당 단체의 사무내용, 보유재산 등으로 보아 노동보험에 관한 사무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등이다.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⁵³⁾

노동보험사무조합으로서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등인 것이 제1의 필요조건이다. 그 사업주단체가 법인이든, 임의단체이든 불문한다. 또한 사업주를 직접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연합단체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사업주단체나 그 연합단체라면 무조건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보험사무조합이 단순히 사업주단체의 대리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사이에서 노동보험료의 납입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 인가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단체 등이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단체 등이 법인인지의 여부는 불문하지만, 법인이 아닌 단체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규정이 있고, 그 외에도 단체 등의 사업내용, 구성원의 범위, 기타 단체 등의 조직, 운영방법(총회, 집행기관, 재산의 관리운영방법 등) 등이 정관, 규약 등 그 단체 등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하 ‘정관 등’이라고 함)에서 명확하게 정해지고 단체성이 명확할 것.
- ② 노동보험 등의 사무의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30명 이상일 것.
- ③ 정관 등에서 단체 등의 구성원 또는 간접구성원인 사업주(원외자인 사업주를 포함)의 위탁을 받아 노동보험 등의 사무처리를 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을 것.

152)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84호, 최종개정일: 2017년 6월 2일 공포)(이하 징수법이라 함) 제33조 제1항, 제2항.

153) 労働新聞社編, 『労働保険事務組合の実務 平成30年版』, 労働新聞社, 2018, 98-100쪽 참조.

- ④ 단체 등은 단체 등으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그 운영실적이 2년 이상일 것.
- ⑤ 단체 등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인가 후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책임으로 노동보험료 및 일반거출금의 납부를 확실하게 행하는 것이 명확할 것.
- ⑥ 노동보험 등의 사무(노동보험료 및 일반거출금의 신고/납부, 제 신고서의 제출, 사무처리대장 등의 비치 등)를 확실하게 행할 능력을 가진 자(사회보험노무사 등)를 배치하고, 노동보험 등의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무처리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피보험자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등의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공공직업안정소의 관할 구역마다 행할 능력이 있을 것)
- ⑦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인가후의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사무총괄자 등은 사회적 신용이 있고, 노동보험사무조합에 관한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자일 것.
- ⑧ 노동보험사무조합 처리규약 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당 단체 등의 총회 등의 의결기관의 승인을 거칠 것.

인가의 신청은 노동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의 정관, 규약, 노동보험사무의 처리방법 관련 서류, 최근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¹⁵⁴⁾ 한편, 사무조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그 처리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은 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징수법 제33조 제4항).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노동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사무조합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시 300명(금융업 혹은 보험업, 부동산업, 소매업, 서비스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50명, 도매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한정된다.¹⁵⁵⁾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주요 임무는 위탁을 받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무조합의 보험료 납부책임은 사업주가 노동보험료, 기타

154) 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2항.

155) 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징수금의 납부를 위해 사무조합에 낸 금액의 한도 내로 제한된다.¹⁵⁶⁾ 이와 같은 사무조합의 사업주 보험료 납부책임은 정부의 노재보험제도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사무조합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사무조합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독촉 받지 않고 완납한 경우, 기타 그 납부의 상황이 현저하게 양호한 경우에는 정부가 그 사무조합에게 보장금(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¹⁵⁷⁾

아래 [표 3-8]는 일본의 노동보험사무조합 수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보험사무조합 수는 9,525개, 사무조합전국연합회 회원수는 7,903개, 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적용사업장수가 3,257천개, 실제 위탁한 사업장 수는 1,383천개(위탁률은 42.5%)이다.

[표 3-8] 노동보험사무조합 인가 및 위탁사업장 추이

년 도	①사무 조합 수	②회원 수	③(②/①) 조직률(%)	④적용사업장 수(천 개)	⑤위탁사업장 수(천 개)	⑥(⑤/④) 위탁률(%)
2017	9,525	7,903	83.0	3,257	1383	42.5
2016	9,607	7,951	82.8	3,187	1347	42.3
2015	9,699	8,032	82.8	3,120	1323	42.4
2014	9,787	8,092	82.7	3,062	1306	42.7
2013	9,857	8,114	82.3	3,016	1294	42.9
2012	9,915	8,122	81.9	2,973	1284	43.2
2011	10,041	8,326	82.9	2,949	1283	43.5
2010	10,179	8,451	83.0	2,944	1291	43.9
2009	10,288	8,625	83.8	2,945	1307	44.4

자료: 石井道子, 労働保険事務組合制度の特徴と課題、関西社会保障法研究会、2018.11.10., 10쪽.

156) 징수법 제35조 제1항.

157) 실업보험법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및 노동보험의 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정비법) 제23조 제1항,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한 보장금에 관한 정령 제1조, 제2조.

② 사업주, 가족종사자 등 업무종사자의 포괄 가입

원칙적으로 사업주 본인 외에, 가족종사자, 임원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전원을 포괄하여 가입한다.¹⁵⁸⁾ 다만, 병요양 중, 고령,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는 포괄 가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¹⁵⁹⁾ 임의로 특정 개인만 탈퇴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탈퇴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특별가입자 전원 탈퇴가 된다.

③ 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

중소사업주 등 특별가입자도 [표 3-9]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에, 각각 정해진 기간에 종사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가입신청을 할 때에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¹⁶⁰⁾

[표 3-9] 중소기업주 등이 특별가입 시 건강진단사항

특별가입예정자의 업무 종류	특별가입 전 왼쪽에 기재된 업무에 종사한 기간 (통산기간)	필요한 건강진단
분진작업을 행하는 업무	3년 이상	진폐
진동공구사용의 업무	1년 이상	진동장해
납 업무	6개월 이상	납중독
유기용제 업무	6개월 이상	유기용제중독

158) 노재보험법 제34조 제1항.

159) 후생노동성 등, 도도부현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특정작업종사자 용>, 4쪽.

160)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19 제3항, 제4항; 후생노동성 등, 도도부현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중소사업주 용>, 6쪽.

[표 3-10] 가입시 건강진단 실시 상황

	진 폐	진동장애	납	유기용제	합계(명)
중소사업주 등	1,057	888	20	1,958	3,923
일인친방 등	1,758	1,403	64	5,152	8,377
특정작업종사자	4	154	3	1	162
합 계	2,819	2,445	87	7,111	12,462

출처: 厚生労働省(2017), 『平成28年度労働者災害補償保険事業年報』, 27쪽.

④ 동일사업주의 2이상 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마다 특별가입 해야 한다.¹⁶¹⁾

3) 일인친방 등의 가입절차

일인친방 등은 그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단체를 적용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필요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단체가 사업주로 간주되어 노동보험의 사무처리를 행하게 된다. 즉, 일인친방 등의 특별가입은 일인친방 등의 단체(특별가입단체)를 사업주, 일인친방 등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재보험의 적용을 한다.¹⁶²⁾ 즉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인친방 등 사업주가 가입한 특별가입단체가 보험가입절차를 대행해 준다는 것이다.¹⁶³⁾

161) 후생노동성, 산재 보험 특별 가입 제도에 대해(労災保険の特別加入 制度 について),

<https://jsite.mhlw.go.jp/yamagata-roudoukyoku/var/rev/0114/4700/2018227153946.pdf> (2018.10. 20. 검색)

162)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일인친방, 기타 자영업자용>, 4쪽.

163) 특별가입단체는 보험사무를 대행해 주는 곳으로서, 일인친방 등의 사업주가 특별가입단체에 가입하면 반드시 노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가 불분명하다. 의무가 아니라 볼 수 있는 근거로는, 특별가입단체는 노동보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는 점, 단체 가입 시 노재보험가입이 의무가 되어버리면 특별가입제도가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충돌한다는 점, 단체를 통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개별 사업주가 스스로 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할 경우 중소기업주가 노동보험조합을 통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절차적 번거로움을 덜게 하고 보험제도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들 수 있

일인친방 등의 사업주가 특별가입 시 새롭게 특별가입 단체를 만들어서 가입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미 특별가입단체로서 승인을 받고 있는 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특별가입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¹⁶⁴⁾

- ① 일인친방 등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일단체일 것.
- ② 그 단체가 법인인지의 여부는 불문하지만, 구성원의 범위, 구성원 지위의 득실절차 등이 명확할 것. 그 외 단체의 조직, 운영방법 등이 정비되어 있을 것.
- ③ 그 단체의 정관 등에 규정된 사업내용에서 보아 노동보험사무의 처리가 가능할 것.
- ④ 그 단체의 사무시스템, 재무내용 등에서 보아 노동보험사무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⑤ 그 단체의 지구가 단체의 주요한 사무소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4호¹⁶⁵⁾에서 정하는 구역에 상당하는 구역을 넘지 않는 것일 것.

일인친방 등의 특별가입 세부절차를 보면, 특별가입단체가 단체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대표자 성명, 단체의 구성원이 행하는 사업의 종류 또는 종사하는 작업의 종류 등의 내용을 기재한 사유서를 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노동국장에게 제출하고,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¹⁶⁶⁾ 일인친방 등의 특별가입절차 시 제출서류, 건강진단 등 제반 절차적 요소는 중소기업주 등의 절차적 요소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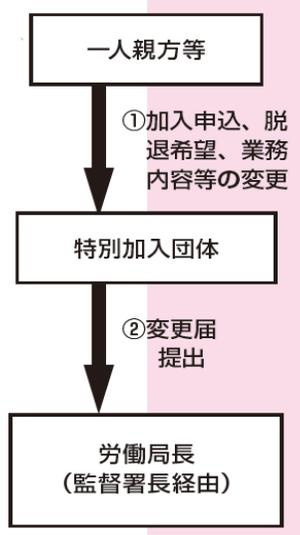
다. 반대로 의무로 봐야 된다면, 특별가입단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동 단체는 사업주의 노재보험가입을 전제로 설립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특별가입단체가 정관에 일인친방 등 및 특정작업종사자의 동 특별가입단체의 가입조건으로 동 특별가입단체를 통한 노재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한 경우에는 동 특별가입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제2종특별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164) 후생노동성 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일인친방, 기타 자영업자용>, 4쪽.

165)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4호: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종류의 사업 이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이 전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노동국의 관할구역 또는 이와 인접한 도도부현 노동국의 관할구역(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도도부현 노동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166)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3.

[그림 3-4] 일인친방 등의 가입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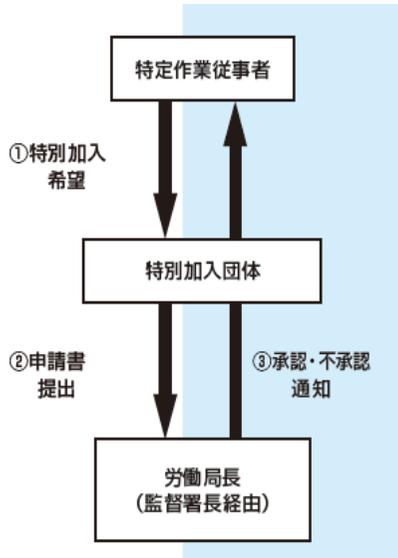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일인친방, 기타 자영업자용>, 4쪽

4) 특정작업종사자의 가입절차

특정작업종사자의 특별가입에 대해서는 특정작업종사자의 단체(특별가입단체)를 사업주로, 특정작업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재보험의 적용을 한다.¹⁶⁷⁾ 특정작업종사자의 가입절차는 일부 특정작업종사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특별가입단체를 통한 가입, 제출서류, 건강진단증명서 제출 등 앞서 살펴본 일인친방 등의 가입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167)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특정작업종사자용>, 6쪽.

[그림 3-5] 특정작업종사자의 가입절차도



자료: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특정작업종사자용>, 6쪽.

여기서 제1종 특별가입자가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해 노재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제2종 특별가입자가 특별가입단체를 통해 가입하도록 하는 것에는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유사한 점은 둘 다 보험사무를 사업주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처리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가입물제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첫째, 제1종 특별가입자는 노동보험사무조합 자격이 있는 사업주 단체를 통해 가입할 때 반드시 그 사업주 단체의 회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중소기업주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업주 단체든 속해 있지 않은 사업주 단체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체가 노동보험사무조합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제2종 특별가입자들은 자신이 회원으로 있으면서 특별가입단체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단체를 통해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2종 특별가입자의 특별가입단체는 노동보험사무조합 자격이 없어도 특별가입단체 자격만 있으면

된다. 제1종 특별가입의 보험사무위탁을 위한 노동보험사무조합과 제2종 특별가입을 위한 특별가입단체의 자격 요건을 비교해 보면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자격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고 요구조건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다수의 노동보험사무조합 자격을 가진 사업주 단체가 특별가입단체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종 특별가입을 위한 특별가입단체는 2017. 12. 31. 기준, 전국적으로 총 4,750여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¹⁶⁸⁾, 밑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보험사무조합 자격을 가진 특별가입단체도 상당수 있다. 이들 특별가입단체의 명칭을 살펴보면 ‘~협회’, ‘~중소상공업단체연합회’, ‘~중소기업협회’, ‘~협동조합’, ‘~노재보험조합’, ‘~노동보험사무조합’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중 노동보험사무조합은 앞에서 살펴본 제1종 특별가입자인 중소기업주가 보험사무를 위탁하는 곳이며, 이를 통해 노동보험사무조합은 중소기업주의 보험사무 대행뿐만 아니라 제2종 특별가입을 위한 특별가입단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생노동성 특별가입단체 명단에 포함된 4,750여개 특별가입단체 중 몇 개를 소개하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제2종특별가입을 위한 특별가입자단체 현황(예시)

지역명	단체명	가입구분
홋카이도	IM 홋카이도 안전협회	일인친방: 건설업
나가사키	전중연나가사키중소기업협회	일인친방: 건설업
나라	나라현 중소기업단체연합회	일인친방: 건설업
홋카이도	노동보험사무조합 아사히카와민주상공회	일인친방: 건설업
홋카이도	부리중앙어업협동조합	일인친방: 어선에 의한 자영업자

168) 후생노동성, “特別加入団体一覧表”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rousai/kanyu.html (2018. 10. 20. 검색)

지역명	단체명	가입구분
오кина와	오кина와현 상공노동부 노동정책과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생조합	특정작업종사자: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종사자
오кина와	오кина와현 농업종사자노재보험조합	특정작업종사자: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오이타	오이타현 농업협동조합 중서부사업부 노동보험사무조합	특정작업종사자: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홋카이도	JA 도호쿠나요지구 노재보험조합	특정작업종사자: 특정농작업종사자
홋카이도	이와미자와농협지역노재보험특별가입조합	특정작업종사자: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이와테	신이와테 농업협동조합 노동보험사무조합	특정작업종사자: 특정농작업종사자
미야기	(주) 센다이 재택개호센터 개호가정부단체	특정작업종사자: 개호작업종사자

자료: 후생노동성, “特別加入団体一覽表”에서 발췌정리.¹⁶⁹⁾

(3) 특별가입자의 보험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노재보험료는 통산 연간 임금총액에 노재보험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하지만, 특별가입자는 근로자와 달리 임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을 위한 소득액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제4에서 [표 3-12] ‘특별가입보험료 산정기초액표’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69)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rousai/kanyu.html (2018. 10. 20. 검색)

[표 3-12] 특별가입보험료 산정기초액표

번호	급여기초일액	(연간) 보험료 산정기초액
1	25,000엔	9,125,000엔
2	24,000엔	8,760,000엔
3	22,000엔	8,030,000엔
4	20,000엔	7,300,000엔
5	18,000엔	6,570,000엔
6	16,000엔	5,840,000엔
7	14,000엔	5,110,000엔
8	12,000엔	4,380,000엔
9	10,000엔	3,650,000엔
10	9,000엔	3,285,000엔
11	8,000엔	2,920,000엔
12	7,000엔	2,555,000엔
13	6,000엔	2,190,000엔
14	5,000엔	1,825,000엔
15	4,000엔	1,460,000엔
16	3,500엔	1,277,500엔

특별가입자의 연간 보험료는 급여기초일액에 365일을 곱하여 얻은 보험료산정기초액에 업종별로 규정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급여기초일액이란 노재보험의 급여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며¹⁷⁰⁾, 제1종, 제2종 특별가입자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가입자 연간 노재보험료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0) 노재보험법 제8조: 급여기초일액이란, 노동기준법 제12조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1항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상 혹은 사망의 원인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으로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질병의 발생을 확인한 날(이하 ‘산정사유발생일’이라고 한다)로 한다.

② 노동기준법 제12조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기초일액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산정하는 금액을 급여기초일액으로 한다.

$$\text{특별가입자 연간 노재보험료} = \text{급부기초일액} \times 365 \text{일} (= \text{보험료산정기초액}) \times \text{업종별 보험료율}$$

이하에서는 이상의 보험료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제1종 특별가입자, 제2종 특별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산정 방식과 보험료를 계산해 봄으로써 연간 및 월 단위 보험료 부담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종 특별가입자의 보험료

먼저 노재보험법은 제1종 특별가입자의 급여기초일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사업주 및 그 가족종사자의 급여기초일액은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액,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후생노동대신(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¹⁾ 이에 따라 노재보험시행규칙에서 급여기초일액의 범위를 최소 3,500엔에서 최고 25,000엔까지 16등급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²⁾ 소관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상기 16등급의 급여기초일액 중에서 하나를 해당 중소기업사업주의 급여기초일액으로 정하는데, 그는 이때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재보험 신청을 한 중소기업사업주에게 본인 및 가족종사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의 임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소관 노동기준감독서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한다.¹⁷³⁾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관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해당 중소기업사업주의 급여기초일액을 정한 때에 노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¹⁷⁴⁾ 이처럼 중소기업주는 보험가입 신청시 희망하는 급부기초일액을 적고, 상기 기준을 고려하여 노동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무부서는 급여기초일액이 낮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그 만큼 휴업(보상)급여 등의 급여액도 적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유의를 한 후 적절한 금액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¹⁷⁵⁾ 가입

171) 노재보험법 제34조 제3호.

172) 노재보험시행규칙 제46조의 20 제1항: “법 제3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의 급여기초일액은 3,500엔, 4,000엔, 5,000엔, 6,000엔, 7,000엔, 8,000엔, 9,000엔, 10,000엔, 12,000엔, 14,000엔, 16,000엔, 18,000엔 및 20,000엔, 22,000엔, 24,000엔 및 25,000엔 중에서 정한다.”

173) 노재보험시행규칙 제46조의 20 제5항.

174) 노재보험시행규칙 제46조의 20 제6항.

175)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중소사업주용>, 8쪽.

시 결정된 급여기초일액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3월에 ‘급여기초일액변경신청서’를 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노동국장에게 제출하여 다음연도부터 변경할 수 있다.¹⁷⁶⁾

중소기업사업주의 연간노재보험료는 소관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정한 급여기초일액에 365일을 곱하여 산출한 보험료산정기초액에 제1종특별가입자의 업종별 노재보험료율을 곱하면 된다. 여기서 제1종특별가입자의 업종별 노재보험료율은 아래의 일반근로자에 대한 노재보험료율을 규정한 [표 3-14] 노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¹⁷⁷⁾

[표 3-13] 제1종특별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예시

(단위: 원)

급여기초일액 A	보험료산정기초액 B=A×365일	보험료 계산 예시
		건설사업 중 시설건축물설비공사업 (요일 12/1000)
25,000	9,125,000	109,500(월 9,125)
24,000	8,760,000	105,120
22,000	8,030,000	96,360
20,000	7,300,000	87,600
18,000	6,570,000	78,840
16,000	5,840,000	70,080
14,000	5,110,000	61,320
12,000	4,380,000	52,560

176)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중소사업주용>, 8쪽.

177) 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법 제13조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비율): 법 제13조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비율은 령으로 한다.

징수법 제13조(제1종 특별가입보험료의 금액): 제1종 특별가입보험료의 금액은 노재보험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자에 대하여 동항 제3호의 급여기초일액,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이리한 자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한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재보험률(그 비율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그 인상 또는 인하된 비율)과 동일한 비율에서 노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의 과거 3년간의 2차 건강진단 등 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을 고려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비율(이하 ‘제1종 특별가입보험료율’이라고 한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급여기초일액 A	보험료산정기초액 B=A×365일	보험료 계산 예시
		건설사업 중 기설건축물설비공사업 (요일 12/1000)
10,000	3,650,000	43,800(월 3,650)
9,000	3,285,000	39,420
8,000	2,920,000	35,040
7,000	2,555,000	30,660
6,000	2,190,000	26,280
5,000	1,825,000	21,900
4,000	1,460,000	17,520
3,500	1,277,500	15,324(월 1,277)

자료: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중소사업주용>, 8쪽을 기초로 재정리.

[표 3-14] 노재보험률표¹⁷⁸⁾

분류	번호	사업의 종류	보험률 (단위: 1/1,000)
임업	02 또는 03	임업	60
어업	11	해면어업(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양식업 제외)	18
	12	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양식업	38
광업	21	금속광업, 비금속광업(석회석광업 또는 백운석광업 제외) 또는 석탄광업	88
	23	석회석광업 또는 백운석광업	16
	24	원유 또는 천연가스광업	2.5

178) 노동보험료징수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의 노재보험률표는 3년마다 개정되는데 현행 노재보험료율표는 2018년 4월 1일에 개정된 것이다.

분 류	번 호	사업의 종류		보험률 (단위: 1/1,000)	
	25	채석업		49	
	26	그 외 광업		26	
건설사업	31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 신설사업		62	
	32	도로신설사업		11	
	33	포장공사업		9	
	34	철도 또는 궤도신설사업		9	
	35	건축사업(기설 건축물 설비공사업 제외)		9.5	
	38	기설 건축물 설비공사업		12	
	36	기계장치의 조립 또는 설치 사업		6.5	
	37	그 외 건설사업		15	
제조업 조업	41	식료품제조업	41	식료품제조업(담배 등 제조업 제외)	6
			65	담배 등 제조업※	
	42	섬유공업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4	
	44	목재 또는 목재제조업		14	
	45	펄프 또는 종이제조업		6.5	
	46	인쇄 또는 제본업		3.5	
	47	화학공업		4.5	
	48	유리 또는 시멘트제조업		6	
	66	콘크리트제조업		13	
	62	도자기제품제조업		18	
	49	그 외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26	
	50	금속제련업(비철금속제련업 제외)		6.5	
51	비철금속제련업		7		

분 류	번 호	사업의 종류	보험률 (단위: 1/1,000)
	52	금속재료품제조업(주물업 제외)	5.5
	53	주물업	16
	54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양식기, 칼, 수공구 또는 일반금물제조업 및 도금업 제외)	10
	63	양식기, 칼, 수공구 또는 일반금물제조업(도금업 제외)	6.5
	55	도금업	7
	56	기계기구 제조업(전기기계기구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선박 제조 또는 수리업 및 계량기, 광학기계, 시계 등 제조업 제외)	5
	5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2.5
	5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선박 제조 또는 수리업 제외)	4
	59	선박 제조 또는 수리업	23
	60	계량기, 광학기계, 시계 등 제조업(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제외)	2.5
	64	귀금속제품, 장신구, 피혁제품 등 제조업	3.5
	61	그 외 제조업	6.5
운수업	71	교통운수사업	4
	72	화물취급사업(항만화물취급사업 및 항만하역업 제외)	9
	73	항만화물취급사업(항만하역업 제외)	9
	74	항만하역업	13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 사업	81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 사업	3
그 외 사업	95	농업 또는 해면어업 이외의 어업	13
	91	청소, 화장 또는 도축 사업	13
	93	빌딩관리업	5.5

분 류	번 호	사업의 종류	보험률 (단위: 1/1,000)
	96	창고업, 경비업, 소독 또는 해충구제 사업 또는 골프장 사업	6.5
	97	통신업, 방송업, 신문업 또는 출판업	2.5
	98	도매업·소매업, 음식점 또는 숙박업	3
	99	금융업, 보험업 또는 부동산업	2.5
	94	그 외 각종 사업	3
	90	선박소유자의사업	47

자료: 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제1(제6조, 제16조 관계)

상기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건설사업 중 시설건축물설비공사사업의 경우 최고 등급인 25,000엔을 급여기초일액으로 선택하면 연간보험료 산정기초액은 9,125,000엔, 여기에 해당 보험료를 12/1000를 곱하면 109,500엔이 나온다. 즉 1년 간 보험료가 109,500엔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9,125엔(18년 8월 20일 기준 한화 약 92,491원)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중간등급인 10,000엔을 급여기초일액으로 선택하면 건설사업의 경우 연간보험료는 43,800엔(한화 약 443,956원), 월 3,650엔(한화 약 36,996원)이 된다. 최저 등급인 3,500엔을 급여기초일액으로 선택하면 건설사업의 경우 연간 보험료는 15,324엔(한화 약 155,324원), 월 1,277엔(한화 약 12,943원)이 된다.

중소기업사업주 및 그 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시 핵심이 되는 급여기초일액을 중소기업사업주 및 그 가족종사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중소기업사업주 및 그 가족종사자의 소득증명서류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신청자가 실제 소득이 높지만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급여기초일액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반 근로자의 보험금 부담률과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2종 특별가입자의 보험료

제2종 특별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제1종 특별가입자의 보험료산정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적용되는 노재보험료율 등 일부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급여기초일액은 “해당 사업과 동종 혹은 유사한 사업 또는 해당 작업과 동종 혹은 유사한 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액,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⁷⁹⁾, 앞서 살펴본 제1종 특별가입자의 관련 규정과 유사하다. 이러한 급여기초일액 산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2종 특별가입자의 급여기초일액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1종 특별가입자의 급여기초일액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¹⁸⁰⁾ 다만, 특정작업종사자 중 가내근로자 및 그 보조자에 대해서는 최저 급여기초일액 3,500엔보다 더 낮은 급여기초일액 3,000엔, 2,500엔, 2,000엔 등 3개 등급을 추가하고 있다. 제2종 특별가입자의 급여기초일액 및 보험료산정기초액, 업종별 보험료율표는 각각 [표 3-15]과 [표 3-16]과 같다.

[표 3-15] 제2종 특별가입자의 보험료계산 예시

(단위: 엔)¹⁸¹⁾

급여 기초일액 A	보험료산정 기초액 B=A×365일	예 시			
		건설사업 (요일 18/1000)	개인택시사업 (요일: 12/1000)	특정농작업 종사자 (요일 9/1000)	직장적응훈련 종사자 (요일 3/1000)
25,000	9,125,000	164,250 (월 13,687.5)	109,500 (월 9,125)	82,125 (월 6843.75)	27,375 (월 2,281.25)
24,000	8,760,000	157,680	105,120	78,840	26,280
22,000	8,030,000	144,540	96,360	72,270	24,090

179) 노재보험법 제35조 제6호.

180)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 24.

181)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일인친방, 기타 자영업자용>, 8쪽 및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 <특정작업종사자용>, 10쪽.

급여 기초일액 A	보험료산정 기초액 B=A×365일	예 시			
		건설사업 (요일 18/1000)	개인택시사업 (요일: 12/1000)	특정농작업 종사자 (요일 9/1000)	직장적응훈련 종사자 (요일 3/1000)
20,000	7,300,000	131,400	87,600	65,700	21,900
18,000	6,570,000	118,260	78,840	59,130	19,710
16,000	5,840,000	105,120	70,080	52,560	17,520
14,000	5,110,000	91,980	61,320	45,990	15,330
12,000	4,380,000	78,840	52,560	39,420	13,140
10,000	3,650,000	65,700 (월 5,475)	43,800 (월 3,650)	32,850 (월 2737.5)	10,950 (월 912.5)
9,000	3,285,000	59,130	39,420	29,565	9,855
8,000	2,920,000	52,560	35,040	26,280	8,760
7,000	2,555,000	45,990	30,660	22,995	7,665
6,000	2,190,000	39,420	26,280	19,710	6,570
5,000	1,825,000	32,850	21,900	16,425	5,475
4,000	1,460,000	26,280	17,520	13,140	4,380
3,500	1,277,500	22,986 (월 1915.5)	15,324 (월 1,269.5)	11,493 (월 957.75)	3,831 (월 319.25)
(3,000)	(1,095,000)				
(2,500)	(912,500)				
(2,000)	(730,000)				

주: ()안의 급여기초일액수 및 보험료산정기초액에 대해서는 가내근로자 및 그 보조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자료: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특정작업종사자용>, 10쪽을 기초로 재정리.

[표 3-16] 제2종 특별가입보험료율¹⁸²⁾

사업 또는 작업종류 번호	사업 또는 작업의 종류	보험료율 (단위: 1/1,000)
특1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사업	12
특2	건설 사업	18
특3	어선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채포 사업	45
특4	임업 사업	52
특5	의약품의 배치판매 사업	7
특6	재생자원취급 사업	14
특7	선원의 사업	48
특8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3
특9	구직자를 작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행해진 작업	3
	가내근로자 및 보조자가 행하는 다음의 사업	
특10	가. 프레스기계, 본붙이기 기계, 프레스절단(성형)기계, 전단기, 선반, 드릴 프레스 또는 프레이즈판을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 합성수지, 가죽, 고무, 직물 또는 종이의 가공 작업 나. 연삭기 혹은 버핑머신을 사용하여 행하는 연삭 혹은 연마 또는 용해한 납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담금질 혹은 담금질한 금속 열처리 작업으로, 금속제 양식기, 칼, 밸브 또는 마개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계되는 것	15
특11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별표 제6의 2에서 열거하는 유기용제 혹은 유기용제 중독예방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의 유기용제함유물 또는 특정화학물질장해예방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3의 특별유기용제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작업으로, 화학물질제, 피제 혹은 포제의 신발, 구두, 주머니, 복장용 벨트, 글러브 혹은 미트 또는 목제 혹은 합성수지제의 칠기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계되는 것	6

182)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84호) 시행규칙[1972년 노동성령 제8호, 최종개정: 2018년 2월 8일 공포(2018년 후생노동성령 제13호)] 별표 제5(제23조 관계) 제2종 특별가입보험료율표.

사업 또는 작업종류 번호	사업 또는 작업의 종류	보험료율 (단위: 1/1,000)
특12	진폐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분진작업 또는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별표 제4 제6호의 납화합물을 함유하는 유약을 이용하여 행하는 시유 혹은 납화합물을 함유하는 물감을 이용하여 행하는 도자기를 굽는 작업 혹은 해당 시유 혹은 도자기를 굽는 작업을 행하는 물건의 소성(燒成) 작업으로 도자기의 제조에 관계되는 것	17
특13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합사기, 실꼬기기 또는 직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3
특14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으로, 불단(仏壇) 또는 목제(木製) 혹은 죽제(竹製) 식기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계되는 것	18
특15	구직자의 취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위탁된 것(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행해지는 작업	3
특16	특정농작업종사자	9
특17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	3
특18	돌봄작업종사자 및 가사지원종사자	5

상기 [표 3-16]에서 보듯이 일인친방의 노재보험료율은 최저 7/1000(의약품의 배치 판매 사업)부터 최고 52/1000(임업사업)까지 업종별로 완전히 다르다. 이중 대표적인 일인친방 사업인 건설사업의 경우 노재보험료율 18/1000을 적용하여 급여기초일액 최고 등급인 25,000엔을 기준으로 연간노재보험료를 계산하면 164,250엔(월 13,687.5엔)이며, 급부기초일액을 중간등급인 10,000엔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보험료는 65,700엔(월 5,475엔)이다. 최하위 등급인 3,500엔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보험료는 22,986엔(월 1,915.5엔)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개인택시사업의 최고, 중간, 최저 등급의 급여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한 연간 및 월 보험료는 각각 109,500엔(월 9,125), 43,800엔(월 3,650), 15,324(월 1,269.5)엔이다. 또한 일인친방 사업 중 최고 요율 52/1000를 적용하는 임업 사업의 경우 최고 등급의 급여기초일액 25,000엔 기준으로 연간노재보험료는 474,500엔(월 39,542엔)

이며, 10,000엔 기준으로 연간보험료는 189,800엔(월 15,816.7엔), 3,500엔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66430엔(월 5,535.8엔)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할 것이다.

특정작업종사자의 보험료율은 최저 3/1000(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구직자 작업환경 적응훈련 작업, 가내근로자의 합사기 등 작업, 구직자의 취직용 직업훈련 관련 위탁작업,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에서 최고 18/1000(목공기계 이용 작업)까지이다. 이는 일인친방에 비해 보험료율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특정작업종사자가 최저 요율인 3/1000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특정작업종사자의 보험료를 계산하면, 먼저 최저 보험요율인 3/1000을 적용하는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의 경우 최저 등급의 급여기초일액 3,500엔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3,832.5엔, 월 보험료는 319.4엔이다. 상당히 저렴한 보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가내근로자 및 그 보조자에 대한 노재보험요율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최대 18/1000(목공기계 사용 작업)에서 최저 3/1000(동력 구동 합사기 등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중 최저 요율인 3/1000을 적용하는 동력 구동 합사기 등 작업의 가내근로자 및 그 보조자의 보험료는 최저 급여기초일액인 2,000엔을 기준으로 연간보험료는 2,190엔(월 182.5엔)이다.

(4) 노재보험의 급여 종류

노재보험의 보험급여 종류는 업무재해에 관한 급여, 통근재해에 관한 급여, 2차 건강진단 등 3가지이다.

이 중 업무재해에 관한 급여에는 ① 요양보상급여, ② 휴업보상급여, ③ 상병보상연금, ④ 장해보상급여, ⑤ 유족보상급여, ⑥ 특별유족급여금(특별유족연금/특별유족일시금), ⑦ 개호보상급여, ⑧ 장례비 등 8가지가 있다.

이들 보험급여 이외에 사회복지촉진 등 사업(2007년 개정 이전에는 ‘노동복지사업’)으로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지 촉진이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원호(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¹⁸³⁾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촉진사업에는 ① 사회복지촉진사업(노재병원이나 재활(rehabilitation)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의지, 기타 보조장구의 지급 등), ② 산재근로자 등 원호사업(보험급여에 추가되는 각종 특별지급금, 유족의 자녀에 대한 산재취학원호비·산재보육원호비 등의 지급), ③ 안전위생확보 등 사업(산업재해방지대책의 실시, 산업보건추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미불임금의 체당불사업 등)의 세 가지 사업이 있다.¹⁸⁴⁾

보험급여의 내용 면에서 일반 근로자와 특별가입자 간 차이는 거의 없으나 2차 건강진단 등 급여, 상여분의 보상인 특별지급금은 특별가입자의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이중 상여특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특별지급(상여)을 산정기초로 지급되는 것인데, 특별가입자에게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너스 등의 특별지급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근재해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는데, 일인친방 중, ① 개인택시업자, 개인화물운송업자, ③ 어업에 의한 자영업자는 통근재해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특정작업종사자 중, ① 특정농작업종사자, ②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 ④ 가내근로자 등은 통근재해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5) 노재보험 특별가입제도 운영 현황

1) 가입현황

2016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노재보험 적용사업장 수는 2,787,965개, 노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57,484,440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상업, 금융·보험, 의료·복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사업’이 1,671,485사업장(구성비 6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설사업이 647,785사업장(구성비 23.2%), ‘제조업’이 366,471사업장(구성비 13.1%)으로 이들 3개 업종에서 적용사업장 수의 96.3%를 차지하고 있다.

183)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2),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8.7.4., 40쪽.

184) 앞의 자료, 40쪽.

[표 3-17] 업종별 적용사업자 수

업종	2016년도 말 현재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업종	2,787,965명	100%	1.5%
임업	14,258	0.5	△0.0
어업	3,776	0.1	1.0
광업	3,008	0.1	△1.5
건설사업	647,785	23.2	2.4
제조업	366,471	13.1	△1.0
운수업	74,142	2.7	0.8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의 사업	2,375	0.1	1.3
기타 사업	1,671,485	60.0	1.8
선박소유자의 사업	4,665	0.2	△1.5

출처: 厚生労働省(2017), 『平成28年度労働者災害補償保険事業年報』, 61쪽.

노재보험 특별가입자 수 현황을 보면,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주 및 그 가족종사자의 가입자 수는 각각 633,045명, 432,597명(합계 1,065,642명)이며, 일인친방 등의 가입자 수는 510,999명, 특정작업종사자의 가입자 수는 114,431명이다. 해외파견자 수를 제외한 전체 특별가입자 수는 1,691,072명이다. 가입자 수 추이를 보면 특정작업종사자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8] 노재보험 특별가입자 현황

	합계	중소사업주 등		일인친방 등		특정작업종사자		해외파견자	
		사업주 수	가족종사자수	단체수	가입자 수	단체 수	가입자 수	사업장 수	가입자 수
2014	1,688,311	612,479	423,194	3,373	438,484	1,406	117,846	10,792	96,308
2015	1,725,253	619,429	426,969	3,414	465,074	1,389	115,699	10,787	98,082

	합 계	중소사업주 등		일인친방 등		특정작업종사자		해외파견자	
		사업주 수	가족 종사자수	단체수	가입자 수	단체 수	가입자 수	사업장 수	가입자 수
2016	1,790,980	633,045	432,597	3,454	510,999	1,376	114,431	11,089	99,908

출처: 厚生労働省(2017), 『平成28年度労働者災害補償保険事業年報』, 26쪽; 厚生労働省(2016), 『平成27年度労働者災害補償保険事業年報』, 26쪽을 기초로 재정리.

이상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노재보험 특별가입자 대상 중 현재 특별가입자의 비율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노재보험법상 특별가입대상은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일인친방 및 기타 자영업자, 특정작업종사자, 그리고 해외파견자이다. 이중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가입비율은 2014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사업주 380.9만명¹⁸⁵⁾,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가입자 수 63.3만명이므로 16.6%정도이다.¹⁸⁶⁾

전체 자영업자 중 노재보험 특별가입자 비율은 일본 총무성의 전체 자영업자 수 679만명에 대한 2016년 특별가입자 수 169만명의 비율로서, 단순 계산하면 약 24.9%가 나온다. 다만, 현행 특별가입제도의 가입대상에 제1종 특별가입대상자인 1명 이상 30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전체 자영업자 통계 중 1인이상의 고용원이 있는 개인경영자업자 수 129만명에 1인 이상 300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를 합해야 전체 특별가입대상 중소기업사업주의 수가 나온다. 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2014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사업주 380.9만명에 129만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여 법인사업체를 포함하는 전체 특별가입대상자 중 가입자 비율은 $179만명 \div (679만명 - 129만명 + 380.9만명) \div 100 = 19.2\%$ 이다.¹⁸⁷⁾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전체 가입자는 중소기업 사업주(633,045명), 가족종사자(432,597명) 합계 1,065,642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사업의 가

185) 総務省(2015), 『平成26年経済センサス-基礎調査』, 中小企業庁(2017), 『最近の中小企業: 小規模事業者政策について』에서 재인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2),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8.7.4., 13쪽.

186) 나머지 일인친방 및 기타 자영업자, 특정작업종사자 개별 업종의 노재보험가입률은 관련 통계의 미확보로 계산하지 못하였다.

187) 중소기업사업자 수는 2014년 기준을, 전체 자영업자 통계는 2016년 기준을 사용하여 가입률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입자가 301,716명(47.7%)으로 절반에 가깝고 그 다음으로 기타 사업 214,974명(34%), 제조업 100,772명(16%), 운수업 10,487명(1.7%) 순이다. 그 가족종사자의 가입자 수는 기타 사업 199,711명(46.2%), 건설사업 118,013명(27.3%), 제조업 102,230명(23.6%), 운수업 9,497명(2.2%) 순으로 많다. 기타사업 중 도매업·소매업, 음식점 또는 숙박업의 18,0045명(사업주 90,491명, 가족종사자 89,554명)으로 기타 사업 전체 41만 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9] 중소기업주 등 특별가입현황

업 종	사업주 수(명)	가족종사자수(명)
임업	1,937	738
어업	1,635	1,038
해면어업	900	500
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양식업	735	538
광업	284	304
금속·비금속광업 또는 석탄광업	1	2
석회석광업 또는 백운석광업	6	8
원유 또는 천연가스광업	1	1
채석업	101	108
그 외 광업	175	185
건설사업	301,716	118,013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 신설사업	10	8
도로신설사업	277	162
포장공사업	1,986	994
철도 또는 궤도신설사업	28	18
건축사업	207,501	76,996
기계장치의 조립 또는 설치 사업	6,566	2,856
그 외 건설사업	32,335	16,913
기설건축물 설비공사업	53,013	20,066
제조업	100,772	102,230
식품제조업	8,386	11,995
섬유공업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2,890	3,313

업 종	사업주 수(명)	가족종사자수(명)
목재 또는 목재제조업	6,590	5,462
펄프 또는 종이제조업	118	152
인쇄 또는 제본업	3,799	4,706
화학공업	1,965	2,435
유리 또는 시멘트제조업	248	291
그 외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1,596	1,289
금속제련업	667	320
비철금속제련업	180	197
금속재료제품제조업	435	479
주물업	697	812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19,235	17,867
도금업	536	748
기계기구제조업	15,779	15,241
전기기계기구제조업	6,394	6,03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16,329	15,895
선박 제조 또는 수리업	2,756	984
계량기, 광학기계, 시계 등 제조업	1,286	1,582
그 외 제조업	9,184	10,235
도자기제품제조업	135	137
양식기, 칼, 수공구 또는 일반금물제조업	426	532
귀금속제품, 장신구, 피혁제품 등 제조업	589	695
콘크리트제조업	705	825
운수업	10,487	9,497
교통운수사업	1,336	1,603
화물취급사업	9,051	7,813
항만화물취급사업	61	42
항만하역업	39	39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사업	150	188
기타 사업	214,974	199,711
청소, 화장 또는 도축사업	4,746	4,597
빌딩관리업	5,209	3,170
그 외 각종 사업	91,866	77,995
농업 또는 해면어업 이외의 어업	14,964	17,956
토지경작 또는 식물의 재식, 재배 혹은 채취의 사업, 기타 농업	10,934	13,315

업 종	사업주 수(명)	가족종사자수(명)
동물의 사육 혹은 축산의 사업 또는 양잠의 사업	2,587	2,751
창고, 경비, 소독 등의 사업	1,556	1,149
통신업, 방송업, 신문업 또는 출판업	850	841
도매업·소매업, 음식점 또는 숙박업	90,491	89,554
의약품배치판매업	121	90
금융업, 보험업 또는 부동산업	5,292	4,449
선박소유자의 사업	1,090	878
합 계	633,045	432,597

출처: 厚生労働省(2017), 『平成28年度労働者災害補償保険事業年報』, V.統計表, 27쪽.

다음으로 업종별 일인친방 등의 특별가입자 수를 보면 전체 가입자 단체 수 3,454개, 일인친방 사업주 510,999명 중 일인친방 가입자 단체 수 3,030개, 가입 사업주 수 497,475명 (97.4%)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의 일인친방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0] 일인친방 등의 특별가입현황¹⁸⁸⁾

사업의 종류	단체 수	가입자 수(명)
개인택시·개인화물운송업자	179	9,371
건설업의 일인친방	3,030	497,475
어업에 의한 자영업자	68	1,589
임업의 일인친방	108	1,765
의약품의 배치판매업자	17	199
재생자원취급업자	22	487
선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선원	30	113
합 계	3,454	510,999

출처: 厚生労働省(2017), 『平成28年度労働者災害補償保険事業年報』, V.統計表, 27쪽.

188) 중소기업사업주의 특별가입현황 통계와 달리 일인친방 등의 가입자 현황에는 가족종사자의 가입자 수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가족종사자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작업종사자의 전체 가입자 수는 114,431명이며, 업종별 가입현황을 보면 농작업종사자 중 특정작업종사자의 가입단체수 440개, 가입자 수 68,654명(6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농작업종사자 중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의 가입단체 수 416개, 가입자 수 30,706명(26.8%), 훈련종사자 중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종사자의 가입자 단체 수 103개, 가입자 수 11,176명(10%) 순이다. 이 중 자영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 특정작업종사자인 농작업종사자, 가내근로자, 개호(돌봄)작업종사자의 가입자 수를 합치면 102,961명(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3-21] 특정작업종사자 특별가입현황¹⁸⁹⁾

작업의 종류		단체 수	가입자 수(명)
농작업종사자	특정작업종사자	440	68,654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416	30,706
훈련종사자	작장적응훈련종사자	53	265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종사자	103	11,176
가내근로자	금속 등 가공 작업	32	178
	양식기·칼 등 가공 작업	7	29
	신발 등 가공 작업	5	73
	도자기제조 작업	1	0
	동력기계 등에 의한 작업	13	73
	불단·식기의 가공 작업	1	0
	계	59	353
노동조합 등 상근임원		11	29
개호(돌봄)작업종사자		294	3,248
합 계		1,376	114,431

출처: 厚生労働省(2017), 『平成28年度労働者災害補償保険事業年報』, V.統計表, 27쪽.

189) 일인친방 등의 특별가입현황과 마찬가지로 가족종사자의 가입자 수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보험급여 현황

먼저 전체 업종의 보험료 징수현황을 보면 2016도 기준 전체 업종의 보험료 징수결정제액은 867,149,141천 엔, 보험료 수납제액 852,820,896천 엔으로 수납률 98.3%를 기록하고 있다.

[표 3-22] 업종별 보험료 징수상황

업종	보험료 징수결정제액		보험료 수납제액		수납률
	2016년도	구성비	2016년도	구성비	2016년도
전체업종	867,149,141천엔	100%	852,820,896천엔	100%	98.3%
임업	5,491,080	0.6%	5,311,604	0.6	96.7
어업	2,004,245	0.2	1,906,653	0.2	95.1
광업	2,976,726	0.3	2,695,865	0.3	90.6
건설사업	200,274,252	23.1	198,611,404	23.3	99.2
제조업	162,045,938	18.7	159,175,182	18.7	98.2
운수업	74,066,171	8.5	71,050,867	8.3	95.9
전가,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의 사업	2,320,859	0.3	2,320,607	0.3	100
기타 사업	404,073,537	46.6	398,387,399	46.7	98.6
선박소유자의 사업	13,896,332	1.6	13,361,315	1.6	96.1

출처: 厚生労働省(2017), 『平成28年度労働者災害補償保険事業年報』, 63쪽.

전체 업종의 보험급여지급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약 7,357억 엔이다.

[표 3-23] 업종별 보험급여지급상황

업종	2016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구성비	
전체업종	735,689,812천엔	100%	△0.6%
임업	14,093,727	1.9	△3.4
어업	2,542,966	0.3	3.8
광업	30,688,098	4.2	△5.4
건설사업	214,362,115	29.1	△1.7

업종	2016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구성비	
제조업	180,978,352	24.6	△1.7
운수업	78,188,591	10.6	0.3
전가,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의 사업	1,756,811	0.2	△3.1
기타 사업	209,803,063	28.5	2.2
선박소유자의 사업	3,276,089	0.4	3.0

출처: 厚生労働省(2017), 『平成28年度労働者災害補償保険事業年報』, V.統計表, 116-117쪽.

전체 보험료 수납제약에 대한 전체 보험급여지급액의 비율은 86.3%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특별가입자 보험급여 현황을 [표 3-24] 2016년도 급여종류별 특별가입자 보험급여 현황에 기초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우선 보험급여 전체 건수와 금액을 보면, 중소기업주 등은 14만 1,266건, 약 201.2억엔, 일인친방 등 12만 6천 24건, 약 140.9억엔, 특정작업종사자 2만 120건, 약 250.8억엔, 해외파견자 2천 677건, 약 8.1억엔으로 전체 건수 29만 87건, 금액 약 601억엔이다. 이중 전체 보험급여액 601억엔은 전체 보험급여액 7,357억엔의 약 8.2% 수준이다. 특별가입자의 전체 보험급여액 601억엔 중 특정작업종사자 250.8억엔(42%)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주 등 201.2억엔(33.5%), 일인친방 등이 140.9억엔(23.4%) 순이다. 여기서 1인 자영업주라 할 수 있는 일인친방 등과 특정작업종사자의 보험급여액을 합하면 391.7억엔(65.2%)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자영업주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인친방 등의 보험급여 현황을 구체적 업종으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건설업이 11만 3천 77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임업 6천 572건, 택시개인화물 운송업자 3천 315건, 어업 1,816건 순이다. 금액기준으로도 건설업 127.2억엔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임업 6.6억엔, 택시개인화물운송업자 4.8억엔, 어업 1.6억엔 순이다. 특정작업종사자의 경우 건수, 금액 기준 모두 농작업종사자 19,706건, 약 25억엔, 특정농작업종사자 16134건, 18.7억엔, 지정농기계작업종사자 3,572건, 5.9억엔, 훈련종사자 142건 1천 6백만엔, 가내근로자 116건 1천 4백 만엔 순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건수 대비 신규수급자 증감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주 등 12,012건(8.5%), 일인친방 등 12,817건(10.2%), 특정작업종사자 2,388건(11.9%)이며, 전체적으로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작업종사자의 증가비율이 조금 더 높다.

[표 3-24] 2016년도 급여종류별 특별가업자 보험급여 현황

	요양보상급여		휴업보상급여		정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장례비		개호보상급여		연금 등 급여		계		신규 수급 자수		
	건수	일수	금액	건수	일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소사업주 등	8664	172,05	7,317,159	15,081	59,444	3,167,501,125	734	1,177,258,837	15	88,208,329	145	84,615,300	1,588	198,448,783	37,059	8,081,455,417	141,266	241,192,138,20	12,012
일인권장 등	88544	1,729,982	6,780,272,115	21,480	701,700	3,129,330,333	668	822,130,841	16	75,552,470	73	3,602,640	818	107,859,138	14,445	3,143,718,060	126,024	14,092,666,207	12,817
택시·개인화물운 송업자	1,958	39,770	118,294,489	527	16,336	103,776,900	20	29,401,492	1	5,000,000	1	465,000	20	2,385,760	788	21,657,456	3,315	475,881,597	223
간질업의 일인권장	80,794	1,555,340	6,331,679,327	19,083	630,656	2,724,141,443	619	748,940,681	12	51,974,682	69	34,892,640	739	99,337,338	12,470	2,736,043,331	113,776	12,727,930,442	12,232
어업에 의한 자영 어업자	1,076	21,152	564,101,62	111	4,495	12,328,800	4	3,287,000	1	3,500,000	2	885,000	16	1,424,490	606	80,557,956	1,816	158,393,388	181
임업의 일인권장	4,404	106,253	271,388,874	1,684	47,251	269,710,000	21	34,135,428	2	6,077,788	1	420,000	33	3,462,330	477	79,628,178	6,572	664,815,618	133
의약품의 배척판 매업자	49	1,092	43,091,76	13	354	2,383,000	1	780,000	-	-	-	-	6	683,880	72	15,224,646	141	23,380,702	5
재생지원취급업자	248	4,724	73,403,984	77	2,170	16,126,200	3	5,706,240	-	-	-	-	4	682,920	42	15,668,013	374	45,524,277	36
선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선원	25	551	838,188	5	148	684,000	-	-	-	-	-	-	-	-	-	-	30	1,540,183	7
특정직업종사자	14,127	288,707	1,185,521,197	1,289	53,192	235,920,048	71	108,142,148	4	12,769,572	15	7,799,700	140	19,270,230	4,594	1,094,519,288	201,201	2,591,524,783	2,388
농작업종사자	13,925	294,794	1,109,927,755	1,238	52,519	233,776,348	67	116,739,248	4	12,769,572	15	7,799,700	140	19,270,230	4,517	974,102,956	19,716	2,454,390,689	2,353
특정농작업종사자	12,473	262,813	981,188,882	991	41,567	184,157,700	63	101,043,248	2	2,769,572	10	5,474,700	109	14,712,270	2,486	578,429,355	16,134	1,867,735,787	2,122
지정농업기계작업 종사자	1,452	31,971	119,748,873	247	10,852	49,618,488	4	4,969,000	2	10,000,000	5	2,325,000	31	4,557,960	1,831	39,657,330	3,572	586,614,902	231
훈련종사자	55	957	3,051,253	3	68	181,300	-	-	-	-	-	-	84	13,344,197	84	13,344,197	142	16,576,890	14

	요양보상급여		휴업보상급여		장애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장례비		개호보상급여		연금 등 급여		계		신규 수급 자수
	건수	일수	금액	건수	일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직장응급환급종사자	9	16	18,602	1	10	30,000	-	-	-	-	-	-	72	10,292,955	82	10,441,637	4
사업주단체 등 위탁환급종사자	46	70	2,932,371	2	38	151,300	-	-	-	-	-	-	12	3,061,242	60	6,153,113	10
가내근로자	42	1,102	2,971,466	5	159	371,900	2	83,000	-	-	-	-	67	9,912,142	116	14,139,548	6
금속 등의 가공작업	39	1,089	2,912,718	4	153	334,000	2	83,000	-	-	-	-	54	7,907,616	99	12,022,934	5
양식기·칼 등 가공작업	-	-	-	-	-	-	-	-	-	-	-	-	7	1,406,029	7	1,406,029	-
신발 등 가공작업	3	44	38,688	1	6	43,200	-	-	-	-	-	-	-	-	4	101,888	1
도자기제조작업	-	-	-	-	-	-	-	-	-	-	-	-	6	398,497	6	398,497	-
동력기계 등에 의한 작업	-	-	-	-	-	-	-	-	-	-	-	-	-	-	-	-	-
불단·석기의 가공작업	-	-	-	-	-	-	-	-	-	-	-	-	-	-	-	-	-
노동조합 등 상근 임원	11	264	2,916,119	-	-	-	-	-	-	-	-	-	6	2,463,720	17	5,379,839	1
개호작업종사자	94	1,600	8,649,664	13	446	1,546,300	2	2,145,300	-	-	-	-	30	4,696,233	139	17,087,957	14
해외파견자	928	21,397	102,182,236	199	6,337	61,636,882	7	31,644,100	1	529,129	3	3,530,380	1,305	6,036,0985	2,677	81,081,610	138

출처: 厚生労働省(2017), 『平成28年度労働者災害補償保険事業年報』, V統計表, 116-117쪽.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먼저 자영업자의 개념정의와 관련 일본의 노재보험법 등 법령에서 자영업자에 대해 명시적인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우리와 유사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자, 소규모기업자에 관해, 소규모기업진흥법에서 소기업자에 관해 각각 규정하여 자영업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재보험법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주를 ‘일인친방’ 및 ‘자영업자’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지만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는 없고 단지 노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이들 일인친방 및 자영업자의 유형 및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자영업자 통계 자료에서 ‘자영업주’를 개인경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하여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자영업자 수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자영업자 범위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통계상 자영업자 범위와 노재보험법상 자영업자 노재보험의 적용범위 간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어 양국의 제도비교는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일본의 노재보험제도는 동 제도의 법적 근거인 노재보험법의 입법목적, 제도의 전반적인 틀, 자영업자 노재보험제도의 기본 구조 등 많은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제도와 운영경험은 우리의 제도 개선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일본의 제도와 운영현황에 있어 주요 특징을 요약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법체계 및 입법목적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노재보험법 역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의 보호를 주된 입법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재보험법의 원칙적인 적용대상은 임금근로자이며, 비임금근로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별가입형태로 노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및 그 가족중

사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1종특별가입제도와 법령에서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 고용원이 없는 일인친방 등 1인 사업주와 특별작업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2종특별가입제도가 일본의 자영업자 노재보험제도와 할 수 있다. 이 특별가입제도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재보험법의 적용을 허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명칭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2) 적용범위

일본의 자영업자 노재보험에서도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게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주로 나누어 적용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즉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업종 제한 없이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노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1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에 한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일부 차이가 있다.

먼저 일본은 중소기업 사업주 및 1인 사업주의 가족종사자의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족종사자의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보험적용대상을 가족종사자로 확대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사업주만 보험가입이 허용된다. 우리의 경우 상시 근로자 기준이 50인 미만이라는 점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적용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가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적용범위 확대를 논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1인 사업주의 경우 일본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일부 1인 사업주의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 사업주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는 적용제외 되어 있다. 숙박업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1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적용 제외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1인 자동차정비업자, 1인 예술가에 대해 일본은 적용 제외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1인 사업주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아 어느 쪽이 더 넓게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적용범위와 관련 한일 양국의 공통점은 바로 고용원의 유무를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달리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⁹⁰⁾

(3) 가입절차

일본 노재보험법의 입법목적, 적용범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지만 보험가입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일본의 경우 제1종 특별가입자와 제2종 특별가입자의 가입절차가 약간 다르게 설계되어 있지만 둘 다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무대행기구 또는 특별가입단체를 통해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정부가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이들 기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들 대행기구들이 자영업자의 노재보험가입을 독려하도록 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고 보험제도 운영 전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인 사업주의 경우는 영세하고 직접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시간을 쪼개어 보험가입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가입단체를 통해 노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제도의 설계는 이들의 가입률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자영업자 노재보험 가입절차는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상으로 가입률 제고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자영업자 보험가입절차 개선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0) 일본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데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배경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4) 보험료

보험료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의 제도가 거의 비슷하다. 즉 사업주가 희망하는 평균임금(일본은 급부기초일액)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보험수급 또한 이러한 보험료의 높고 낮음에 연동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에 다른 점도 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임금 등급이 우리보다 더 세분화 되어 있고 최저 등급의 평균임금 액수가 우리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어 높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가입을 꺼릴 수 있는 사업주의 보험가입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다양하고 낮은 등급의 보험료 구간의 설정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거나 보험 가입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사업주의 보험가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의 평균임금 등급을 재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제도 운영 현황

하나의 제도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제도를 이론적으로 분석했을 때 합리적이다 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실제 운영에서는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일본의 자영업자 노재보험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그 결과 전체 가입자 약 170만명, 전체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률이 20% 내외였다. 한일 양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에 있어 입법체계, 적용범위, 보험료 산정방식, 가입방식(임의) 등이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자 수와 가입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이 월등하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일본의 노동보험사무조합과 특별가입단체를 통한 가입절차, 우리보다 낮은 등급의 보험료, 가족종사자의 가입 허용 등이 중요 요인으로 보이며, 이중에서도 특히 대형기구와 단체를 통한 가입절차 등 보험사무관리 전반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이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본은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와 같은 종속적 근로자 산재보험 제도를 노재보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제3절 독일

1. 자영업자의 개념 및 유형

(1) 고용의 소극 개념으로서의 자영업

독일 법령상 자영업자(Selbständige)는 ‘고용 내지 취업(Beschäftigung)을 근로관계에 의한 비자영업적인 근로형태로 제공하는 사람’(즉 취업자)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한다(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¹⁹¹⁾ 비록 소극적 개념이지만 자영업에 대해 ‘근로관계상의 근로가 아닌, 즉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활동’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자영업자의 개념정의를 법률상 적극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자의 의도나 판례를 통한 구체화를 필요로 한다.¹⁹²⁾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일의 자영업자는 ‘농업 및 임업분야, 상업 또는 자유직업에 종사하며 인격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유로운 서비스관계나 인격적인 종속성의 범주에서 자영업자인지 아닌지가 판단된다. 즉, 독일에서의 자영업은 자신의 근로능력, 근로시간, 일의 종류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191) 원문은 다음과 같다. “SGBIV § 7 (1) Beschäftigung ist die nichtselbständige Arbeit, insbesondere in einem Arbeitsverhältnis. Anhaltspunkte für eine Beschäftigung sind eine Tätigkeit nach Weisungen und eine Eingliederung in die Arbeitsorganisation des Weisungsgebers.” 이를 해석하면, “고용은 특히 고용관계에서 비자영의 근로이다. 고용을 위한 근거는 지시에 따른 행위와 지시자의 노동조직에의 편입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192) 김영미,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46집, 2014.5, 407-408쪽.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구별된다. 따라서 자영업에 의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이익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이익 외에 농업, 임업 및 기타 영업에 의한 소득을 포괄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사회법전 제4권 제15조 제1항).¹⁹³⁾

(2) 자영업자의 개념적 유형

독일의 자영업자는 통상적으로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유업종사자, 프리랜서, 유사근로자 및 외관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1)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독일의 (소)상공인(Gewerbetreibende)은 소득세법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리목적(Zweck im Erwerb)’의 경제적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지만, 프리랜서나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8조). 따라서 (소)상공인이 수행하는 영업 활동은 좁은 의미에서 생산 및 가공업무 등의 직업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협의의 자영업자에 해당된다.¹⁹⁴⁾

(소)상공인과 관련하여 독일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를 연매출(Umsatz)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전년도 기준 17,5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당해 연도 예상 매출이 5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소규모기업(Kleinunternehmen)으로 간주된다(매상세법 제19조). 이러한 소규모기업은 소기업, 소상공인 내지 영세자영업자로서 매상세, 영업세 또는 기타 사업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간이과세기준인 연간 17,500유로 이상 매출이 있는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매상세의 표준과세(Umsatzsteuer-Regelbesteuerung)가 적용되고, 연간 25,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세(Gewerbesteuer)가 부과된다.

한편, 독일에서 영세자영업자(Kleingewerbetreibende)는 상법상의 규정에 비추어 소규모 기업과 달리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즉 (소)상공인을 의미하지만, 사업의 유형 및 범위가 상업적 형태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상법 제1조 제2항). 따라서 영세자영업자가 상법

193) 김영미,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46집, 2014.5, 408쪽.

194) 김영미,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81쪽.

에 따른 상인을 필요는 없으며, 통상 상업등기부(Handelsregister)에 등재될 필요도 없다. 물론 이들에 대해서는 상법 보다 일반적인 민법과 세법이 적용된다.¹⁹⁵⁾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업(Gewerbe)을 하는 모든 소규모기업은 영세자영업자에 해당되지만, 반대로 모든 영세자영업자가 반드시 매상세법상의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자유업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념과 관련하여 통상의 근로자와 구별되는 프리랜서(Freelancer)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독일에서의 프리랜서는 대체로 노동법 및 사회법적 개념으로 이해되며, 세법상의 자유업종사자(Freiberufler)와 구별된다. 통상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직원(Freier Mitarbeiter)으로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당해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위임된 업무를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대체로 프리랜서들은 IT 분야, 소프트웨어, 통신, 광고, 예술 및 문화영역 등 창조적 활동분야 또는 요식업, 운송업, 자유업종 내지 산업분야에서 활동한다.

한편, 자유업종사자는 소득세법상 자영업자와 구별되는데, 전형적인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직군에 속하는 경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닌 자유업종사자로 분류한다. 다시 말해서, 법률상 자유업종사자는 자유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자유업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직업적인 자격이나 창조적인 재능에 근거하여 위임자의 이익으로 더 높은 서비스를 인격적, 자기책임적, 전문적 및 독립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경영참가법 제1조 제2항).”¹⁹⁶⁾ 구체적인 자유업종으로는 학문, 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직군이 해당된다(소득세법 제18조).

195) <http://www.kleinunternehmer.de>(2018.6. 3. 검색).

196) 독일의 「경영참가법」(PartGG) 제1조 제2항 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Die Freien Berufe haben im allgemeinen auf der Grundlage besonderer beruflicher Qualifikation oder schöpferischer Begabung die persönliche, eigenverantwortliche und fachlich unabhängige Erbringung von Dienstleistungen höherer Art im Interesse der Auftraggeber und der Allgemeinheit zum Inhalt.”

(치과)의사, 수의사 변호사, 공증인, 변리사 무역화학자(Handelschemiker) 공인회계사(Wirtschaftsprüfer), 회계감사원(Vereidigte Buchprüfer) 세무 컨설턴트(Steuerberater), 세무사(Steuerbevollmächtigte)	측량기사, 건축사 경제 및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요법치료사(Heilpraktiker) 물리치료사(Krankengymnasten) 저널리스트, 보도전문 카메라맨 통역자, 번역자 파일럿(Lotsen), 기타 유사직업
--	--

3) ‘1인 기업’

우리나라의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1인 창조기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된다(1인 창조기업법 제2조).

이와 동일한 독일의 ‘1인 기업(Einzelunternehmen)’은 광의로는 자영업자(solo selbständige)에 포함되지만, 협의로 로는 상법상의 상사기업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실업자가 ‘생계지원금(Existenzgründungszuschuss)’을 수령하여 설립한 ‘1인 기업(Ich-AG)’은 2003년 1월 1일 시행된 하르츠 II 법률에 근거하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에 해당된다. 이는 실업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만, 2006년 6월 30일 이후에 창업한 ‘1인 기업(Ich-AG)’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금이 ‘창업지원금(Gründungszuschuss)’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지원금은 사실상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기보다 생계지원 내지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볼 수 있다.

4) 유사근로자

독일의 유사근로자(Arbeitnehmer ähnliche Selbständige)는 「단체협약법(TVG)」 제12조 의a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근로자의 도움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한 사람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평균적으로 영리활동의 대가로 얻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한

사람에게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의규정에 비추어 독일의 유사근로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노동법상의 근로자라기보다 자영업자에 해당되지만,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전통적 의미의 자영업자라고 볼 수 없고,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회보험법상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사회법전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인적종속성’에 대해 1차적 결정권한을 법정연금공단, 즉 독일연금보험연합(DRV-Bund)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연금보험연합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위확인절차(Anfrageverfahren)’에 의해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취업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사회법전 제4권 제7조의a 제1항과 제2항). 이러한 ‘취업자 지위확인절차(Statusfeststellungsverfahren)’은 통상 취업이 개시된 후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보험가입의무는 독일연금보험연합의 결정이 통지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취업자의 동의 외에 취업개시와 결정의 통지 사이의 기간에 법정질병보험이나 법정연금보험의 급여형태로 사회보장장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사회법전 제4권 제7조의a 제6항).

5) 외관자영업자

유사근로자와 비슷하지만 구별할 필요가 있는 ‘외관자영업자(Scheinselbständige)는 외형상 또는 계약상으로는 자영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 이들은 주로 자문분야나 언론분야의 자유업자, 건설분야의 하도급 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외근업무가 많은 보험설계사, 간병 등 요양업무 종사자, 재택근로자, 프랜차이즈업 종사자 등으로 활동하며, 형식상 위임계약의 형태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취업(Beschäftigung)’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법적 보호의 대상성 여부가 문제된다. 즉 형식적 합의내용과 실질적 계약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형식적 계약 보다 실제적 노동활동 관계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하는 독일 사회법제에서 외관자영업자는 취업자의 범주에서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외관자영업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소위, ‘외관자영업과의 투쟁’을 통해 얼마나 뜨거웠는지, 외관자영업자에 대한 판단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 노력과 판례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1999년 (구)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에 ‘취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법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현재까지 ‘취업’은 “비자영적 노동으로 특히, 근로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현행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 당시 취업에 대한 구체적 인 표지는 다음의 ‘추정규정(Vermutungsregel)’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첫째, 사회보험가입의 무가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 둘째, 통상적이고 본질적으로 한 명의 위임자(계약당사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할 것 셋째, 위임자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당사자가 정규 근로자로서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것 넷째, 노무제공이 전형적인 사업행위에 속하지 않을 것 다섯째, 노무제공이 외형상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위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5가지 범주 중에서 적어도 3가지에 해당되면 외관자영업자로 추정하였다.¹⁹⁷⁾

그러나 이 ‘추정규정’은 2002년 삭제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 후단에 “취업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과 지시권자의 노동조직에의 편입이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판례를 통해 발전된 기준인 ‘지휘명령관계’와 ‘노동(사업)조직에의 편입’이 현재까지 취업자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적용되고 있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 현황

(1) 개 관

독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은 그다지 상세하지 않지만, 최근 연방통계청 “2017년 통계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10.8%를 차지한다. 이 중 농어민의 비중은 1.4%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분야 자영업자는 27.7% 정도이며, 나머지 70.9%의 자영업자는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독일의 경제활동 인구는 대략 41,117천 명에 이르고, 15세에서 64세의 경제활동 인구 중

197) Heidmarie Hinkel, Fraktion DIE LINKE AK II, 21. Juni 2007, S. 1.; 김상호·박지순·김영문,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산재보험 적용 및 운용방안, 고용노동부, 2012,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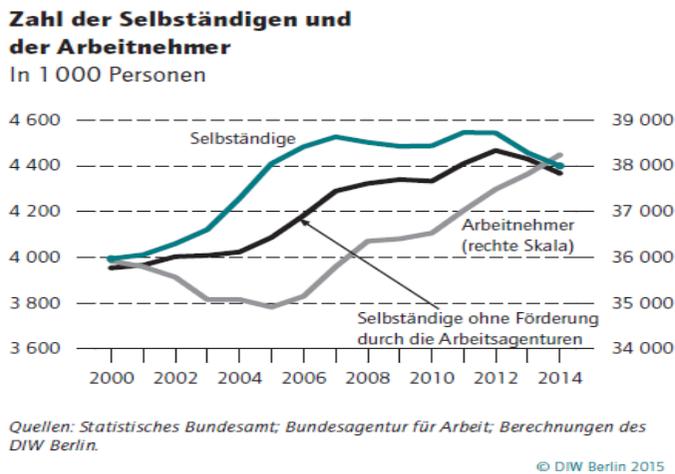
에서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은 남성 7.6%, 여성 36.5%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⁹⁸⁾

아울러 독일의 산업적 특성을 보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화학산업 등이 최대 산업 분야를 이루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이 26% 정도(건설업 포함 30%)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공업, 제조업, 도소매, 관광 등 제반분야에 걸쳐 2016년 3백64만 개에 이르렀으며, 전체 기업 수에 9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일자리에 있어서도 58.5%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기업 매출의 35%를 기록하고 있다.¹⁹⁹⁾

1) 자영업 및 1인 자영업자의 증감

독일에서 자영업의 비중은 1980년대 창업 붐이 일어난 후 구서독 지역에서는 1990년 이후 2000년대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보험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수 (단위: 1,000명)



(재인용)출처: Brenke, S. 791.

198)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2017, S. 670.

199) BMWi, Wirtschaftsmotor Mittelstand Zahlen und Fakten zu den deutschen KMU, 2017, S. 2.

이처럼 2015년 DIW Berlin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자영업자의 수(상위 그래프; 녹색)는 2000년 400만명에서 2007년 약 450만명에 이르렀다가 2014년 440만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달리 근로자 수(하위 그래프; 회색)는 2000년 3600만명에서 2005년 3500만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14년에는 약 3820만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창업지원금과 같은 국가적 지원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의 수(중간 그래프; 검정)는 전체 자영업자 수의 증감 추세와 같이 하면서도 그 규모에 있어서는 한 단계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은 자영업자 수의 장기간의 확장성과 최근의 감소추세는 역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Solo-Selbständigen)의 증감추세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²⁰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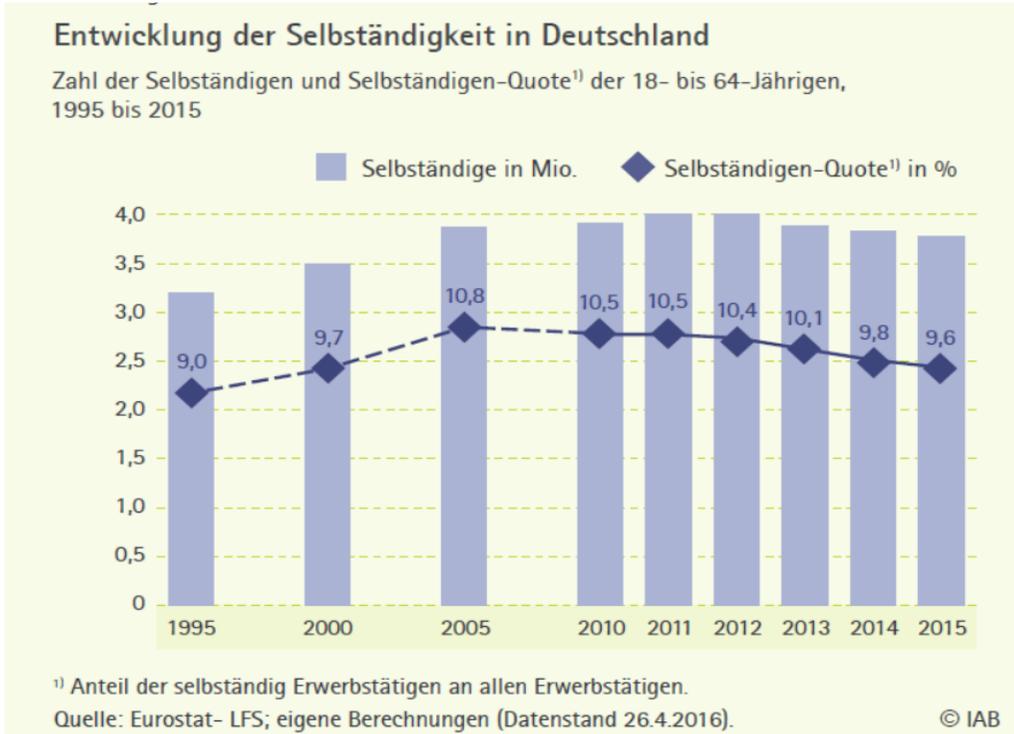
이는 마이크로 센서스(Mikrozensu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95년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영업자 수는 320만명에 달하였고, 2012년 4백만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 380만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자영업자에 대한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은 1995년 겨우 9%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10.8%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다시 9.6%로 감소하였다.²⁰¹⁾

200) Brenke, Selbständige Beschäftigung geht zurück, DIW Wochenbericht, Nr.36, 2015, S. 790.

201) Dietrich/Patzina, Vor allem Geringqualifizierte und Berufseinsteiger gehören zu den Risikogruppen, IAB-Kurzbericht, 1/2017, S. 2.

[그림 3-7] 독일 자영업자 수의 증감
- 1995년에서 2015년까지 18세에서 64세까지 자영업자의 수 및 자영업자 비율

(자영업자: 백 만, 자영업자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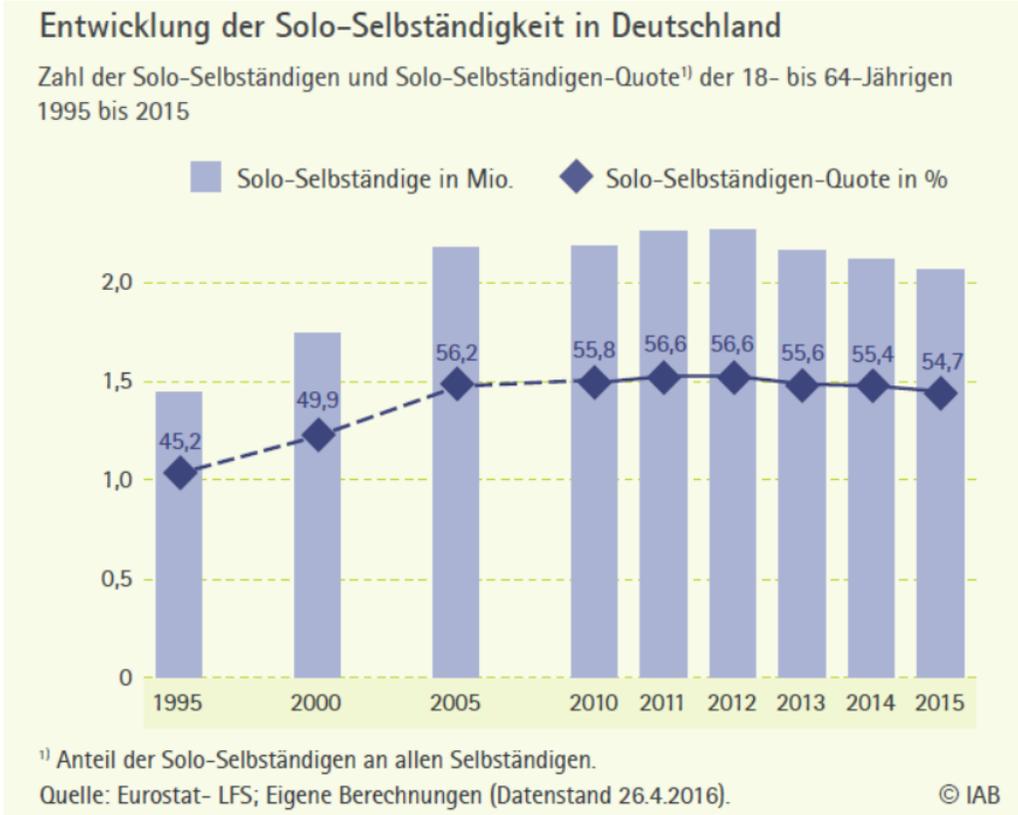
(재인용)출처: Dietrich/ Patzina,(2017), S. 2.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1인 자영업자(Solo-Selbständigen)의 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2년까지 증가폭이 정체된 상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5년에 이미 전체 자영업자 중 45%를 차지하였으며, 2005년에는 56%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⁰²⁾

202) Dietrich/ Patzina, Vor allem Geringqualifizierte und Berufseinsteiger gehören zu den Risikogruppen, IAB-Kurzbericht, 1/2017, S. 2.

[그림 3-8] 독일 1인 자영업자 수의 증감
- 1995년에서 2015년까지 18세에서 64세까지 자영업자의 수 및 자영업자 비율

(자영업자: 백 만, 자영업자 비율: %)



(재인용)출처: Dietrich/Patzina,(2017), S. 2.

이와 같은 자영업과 종속 근로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상반된 변화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 분야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수의 감소는 최근 몇 년간 창업자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1인 자영업자로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영업자의 수가 한동안 증가하였지만, 이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을 증가시킨 것에 불과하였다. 실제 2012년 이후 나타나는 자영업자

감소추세에서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이 더 감소하였다. 이는 호황인 노동시장 상황에서 자영업자에서 종속 근로자로 전환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²⁰³⁾

[표 3-25] 연령대별 자영업자 비율

	자영업자				근로자	
	전체		1인 자영업자			
	1,000명 기준	백분율	1,000명 기준	백분율	1,000명	백분율
15세-24세	-8,9	-15.8	-7,3	-15.7	-264,5	-6.4
25세-34세	-52,0	-12.1	-33	-11.2	507,8	7.1
35세-44세	-242,0	-23.8	-144,7	-25.6	-541,7	-6.4
45세-54세	0,6	0.0	-25,1	-3.7	422,5	4.5
55세-64세	96,8	11.9	50,8	11.8	951,4	18.2
65세 이상	65,4	23.1	40,8	23.8	156,5	34.1

출처: Brenke, S. 794. (재구성)

[표 3-26] 연령대에 따른 연도별 자영업자 비율(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2011	2014	2011	2014
15세-24세	1.4	1.2	1.1	1.0
25세-34세	5.7	4.7	3.9	3.3
35세-44세	10.7	8.9	6.0	4.8
45세-54세	12.1	11.6	6.3	5.9
55세-64세	13.5	12.9	7.1	6.8

203) Brenke, Selbständige Beschäftigung geht zurück, DIW Wochenbericht, Nr.36, 2015, S. 793, 796.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2011	2014	2011	2014
65세 이상	38.1	36.1	23.1	22.0

출처: Brenke, S. 794. (재구성)

사회경제패널 데이터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8.5 유로 미만의 소득수준에 있는 사람의 비중이 2011년 이후 감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14년을 기준으로 시간당 25유로 이상의 소득수준에 있는 1인 자영업자들의 비중은 증가되었다. 다만, 이러한 비중 역시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현저히 감소된 것이다. 이로써 최근 전체적인 자영업자의 수는 감소되었으나 상대적으로 1인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저소득 ‘1인 기업(Ich-AG)’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거나 종속근로자로 전환한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²⁰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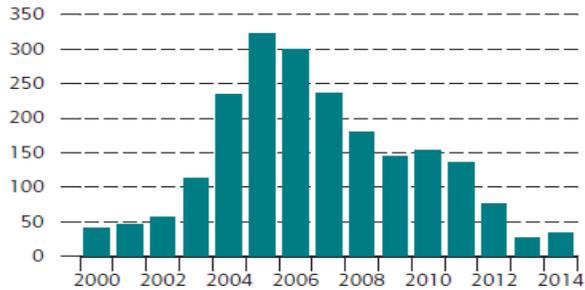
2) ‘1인 기업(Ich-AG)’의 증감과 직업별 현황

독일의 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개혁, 즉 하르츠 개혁에 의해 제공된 창업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이 창업지원금으로 대체된 2006년 이후 ‘1인 기업(Ich-AG)’을 비롯한 전체 자영업자 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했다(표 3 참조). 사실상 독일의 자영업자 수의 증감은 ‘1인 자영업자’, 즉 ‘1인 기업(Ich-AG)’에 좌우되었고, 이들의 증감은 결국 국가적 지원에 의존된 것이다(표 4 참조).

204) Brenke, Selbständige Beschäftigung geht zurück, DIW Wochenbericht, Nr. 36, 2015, S. 795.

[그림 3-9]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단위: 1,000명)

Förderung der Selbständigkeit durch die Arbeits-agenturen
Teilnehmerbestand in 1 000 Personen



Quellen: Bundesagentur für Arbeit; Berechnungen des DIW Berlin.

© DIW Berlin 2015

(재인용)출처: Brenke, S. 791.

2017년 베를린에 있는 건설 및 청소용역사업체가 8,000개 정도 새로 설립되었는데, 전부 1인 사업체, 즉 1인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증가와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된다. 특히, 기계설비 분야 인력은 2/3 이상이 1인 자영업자로 파악되면서 독일의 산업안전과 재해예방 및 보상에 대한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²⁰⁵⁾

[표 3-27] 1인 자영업자와 창업자의 비율

(단위: %)

	전체 자영업자에 대한 1인 자영업자 비율			전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자 비율		
	2005	2009	2012	2005	2009	2012
농부(직업)	71	66	63	11	15	9
원예사, 플로리스트	46	45	43	22	22	21

205) Frankfurter Allgemeine, Uber, Myhammer und Co. sollen Sozialabgaben zahlen, 03.01.2018.

	전체 자영업자에 대한 1인 자영업자 비율			전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자 비율		
	2005	2009	2012	2005	2009	2012
유리, 세라믹, 종이공예	60	54	57	24	19	24
목수, 목재 관련 직업	50	47	54	20	24	15
금속 관련 직업	53	48	48	31	16	20
합석장이, 설비공	43	37	46	17	15	15
기계공, 자동차정비공	39	39	38	24	21	23
정밀기계, 광학 기술자	37	39	39	16	12	14
전기기술자	47	41	51	25	16	20
섬유, 가죽 관련 직업	77	79	77	20	24	22
제빵, 요식업, 정육업	17	14	17	36	19	25
기타 제조업	72	59	70	42	45	37
지상건축물 관련 직업	48	55	55	25	19	16
재건축 관련 직업	54	61	59	25	18	17
엔지니어	58	52	52	21	17	21
건축가	68	71	62	22	19	14
공학자	59	60	59	27	16	20
상인	49	49	52	23	22	22
대리인(상)	84	81	81	23	23	19
금융서비스업 종사자	67	64	61	22	25	19
교통전문가	47	40	47	26	30	20
광고전문가	69	76	76	33	22	25
중개인	70	67	69	19	18	18
차량운전사	57	54	61	24	17	19
기타 교통 관련 직업	69	77	68	46	35	54
세무 및 경제전문가	62	60	59	24	22	21
행정가, 경리	80	79	73	29	30	22
IT 인력	80	78	74	32	23	21
사무직	61	55	66	35	31	38
주택관리사	81	77	76	38	21	19

	전체 자영업자에 대한 1인 자영업자 비율			전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자 비율		
	2005	2009	2012	2005	2009	2012
안전 관련 직업	76	62	76	30	22	36
사법보좌관	33	36	41	20	18	14
저널리스트, 사서	94	94	94	23	18	22
통번역가	95	94	96	26	23	19
음악가	96	98	95	18	18	23
전시예술가	90	97	94	23	14	23
설치예술가	90	89	89	21	19	16
기타 예술 관련 직업	84	88	86	18	19	14
전시디자이너	81	82	77	14	13	20
사진사	83	84	83	21	23	28
의사, 약사	14	13	15	11	21	21
민간요법 치료사	93	88	90	19	15	20
마사지사	48	51	50	19	31	19
기타 치료 관련 직업	62	65	63	34	32	27
사회적 직업	81	80	78	23	29	39
돌봄 관련 직업	84	91	89	36	35	29
교사	93	94	91	26	32	30
스포츠강사, 운전강사	65	70	71	24	28	23
학자	73	74	76	23	20	28
심리학자	81	89	85	14	20	19
미용사	34	38	40	24	18	15
분장사	88	88	88	21	22	19
숙박업	34	29	31	20	18	26
가사 관련 직업	84	78	86	56	26	38
청소업, 굴뚝청소업	51	51	55	37	20	35
전체¹	56	56	57	23	22	21

¹ 기타 자영업자 포함

출처: 독일연방통계청; 주의 통계청; 재구성(재인용: Brenke/Beznoska, Solo-Selbständige in Deutschland - Strukturen und Erwerbsverläufe, 2016, S. 28).

[표 3-28] 직업 및 유형별 1인 자영업자

	1000명 단위	비율(%)			
		전체 자영업자에 대한 1인 자영업자	전체 1인 자영업자	파트타임 1인 자영업자	전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 가입자
자연과학자, 수학자	12,2	65	19	37	22
엔지니어	55,2	55	20	28	27
건축사	112,0	76	15	26	34
의사	58,1	35	18	48	30
수의사	7,0	47	15	47	25
기타 대학 보건직	40,0	28	16	42	38
대학강사	13,7	94	29	57	28
교사(강사)	80,9	91	29	68	39
직업학교교사	35,3	92	30	60	29
대학 행정전문가	82,1	56	19	28	25
마케팅 전문가	29,2	74	23	26	30
IT 인력	55,4	80	17	17	25
법률가	34,3	36	13	31	17
사회 인문학자	58,7	86	17	42	26
작가	82,7	94	18	37	43
예술가	111,1	93	16	33	41
기술자	142,0	40	14	17	36
기타 보건직	52,9	74	23	58	32
차량운전사	32,5	56	20	20	26
판매대리인	77,9	70	17	22	28
금융전문가	33,2	73	20	26	26
기타 기업서비스 전문직	76,6	63	19	33	24
법률적, 사회적 전문직	8,9	83	34	46	48
스포츠 전문직	36,1	83	28	59	26

	1000명 단위	비율(%)			
		전체 자영업자에 대한 1인 자영업자	전체 1인 자영업자	파트타임 1인 자영업자	전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 가입자
예술 전문직	38,9	76	19	27	29
사무직	78,0	55	24	31	33
숙박업주	33,8	24	23	21	33
요리사, 웨이터	10,2	39	34	48	32
미용사, 분장사	74,3	59	17	50	37
기타 대인 서비스직	20,4	64	23	44	30
경비 등	40,3	81	17	32	32
판매직	169,1	53	19	29	27
트레이너, 지도자	36,9	96	27	46	54
원예사, 농부	136,9	59	9	11	50
건설직	134,5	65	16	9	34
제조업, 기계운전자	149,8	61	17	26	33
청소 및 기타 임시직	46,4	80	34	48	31
전체¹	2372,7	56	19	31	33

¹ 기타 자영업자 포함

출처: 독일연방통계청; 주의 통계청; 재구성(재인용: Brenke/Beznoska, Solo-Selbständige in Deutschland - Strukturen und Erwerbsverläufe, 2016, S. 30).

[표 3-29] 직업현황에 따른 소득활동자의 1년 후 직업현황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인 자영업자									
1인자영업자	71	70	77	69	74	71	76	75	77	73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11	10	7	11	9	10	7	9	8	10
종속 취업자	6	8	6	9	9	10	9	9	7	1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고 실업자	2	3	3	2	1	1	1	1	1	1
기타 무직자	9	8	7	10	7	8	7	7	7	6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1인자영업자	11	9	11	10	13	11	9	9	10	12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80	80	79	78	74	79	80	80	80	80
종속 취업자	7	6	5	7	8	6	7	5	6	4
신고 실업자	1	1	1	1	0	1	0	0	0	1
기타 무직자	1	5	4	4	5	4	4	5	3	4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종속적 취업자										
1인자영업자	1	0	1	1	1	1	1	1	1	1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0	1	1	0	0	1	0	0	0	0
종속 취업자	89	89	90	91	91	90	90	91	91	90
신고 실업자	4	4	3	2	3	3	3	2	3	2
기타 무직자	6	6	6	5	5	6	6	6	5	6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사회경제패널(v31); 재구성(재인용: Brenke/Beznoska, Solo-Selbständige in Deutschland - Strukturen und Erwerbsverläufe, 2016, S. 49).

3.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및 운영 현황

(1) 개 관

독일에서 산재보험은 우리와 달리 피보험자 범위가 학생이나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보편적 재해보험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 대신 재해보험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독일의 ‘재해보험’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독일의 재해보험은 사회보험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며, 업무상 사고, 1업무상 질병,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며, 재해 발생시 보험가입자의 건강과 업무능력을 적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⁰⁶⁾ 가입자 역시 근로자(진정 재해보험)에 한정하지 않으며, 일부 자영업자, 유치원생, 초중고·대학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서 공공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부진정 재해보험)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²⁰⁷⁾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로부터 의무적으로 보장되며, 자영업자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미고용 종사자, 즉 미니잡 또는 근로자로서의 인턴 등에게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재원조달은 적립방식으로,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의 보장영역은 산재예방, 사고, 직업병 등이다. 급여지급은 상해 정도로 구분된 등급에 따라 현물로 지급되며, 치료비, 재교육, 장애연금, 장제비 등을 보장한다.²⁰⁸⁾

독일의 초기 재해보험은 1838년 철도사업주법, 광산법 등 직역단위공제조합 형태로 도입되었다. 재해보험에 의한 보상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로 제한하였으며, 기업별 보상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후 1881년 황제칙령을 통해 사회보험의 기본적 토대가 마련된 후 1884년 7월 6일 「재해보험법(Unfallversicherungsgesetz)」이 공포됨으로써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이 보험원리에 의해 집단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이후 1913년 「제국보험법(Reichsversicherungsordnung; RVO)」으로 통합되어 1975년부터 다시 사회법전으로 단계적으로 해체되었으며, 1996년 비로소 재해보험법은 사회법전 제7권으로 편입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²⁰⁹⁾

206) 박지순·오세웅·황원재·박수경, 해외 선진 산재보험제도 심층 조사·연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 2쪽.

207) Eichenhofer, Sozialrecht, 6. Auflage, 2007, S. 219.

208) 박명준, 독일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의 사회보험, 국제노동브리프, 2013.12, 25쪽.

209) 박지순·오세웅·황원재·박수경, 해외 선진 산재보험제도 심층 조사·연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 6쪽.

재해보험의 구체적인 적용, 급여제공, 보험료 징수 등 실질적인 제도운영은 ‘산업별 연대의 원칙’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된 직종조합(Berufsgenossenschaft, BG)에서 담당한다. 이들 각 직종조합(BG)은 ‘자치운영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별 조합에 소속된 사용자의 대표들에 의해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독일 재해보험의 운영방식은 사실상 공영 전담방식에 해당된다.

현재 독일 재해보험의 운영기관은 산업부문 재해보험조합이 업종 및 지역별로 9개, 공공부문 재해보험조합이 20개로 구성되어 있다(사회법전 제7권 제222조 제1항).²¹⁰⁾ 다만, 농업부문 재해보험은 별도의 운영기관(SVLFG)이 담당한다.²¹¹⁾ 이러한 조직구성은 2008년 10월 30일자 「재해보험현대화법(Unfallversicherungsmodernisierungsgesetz; UVMG)²¹²⁾」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재해보험조직을 산재보험 조직을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추고 연금수급자에 대한 미적립 부채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재해보험조합 수를 줄임으로써 행정조직의 현대화 및 조직운영의 경제성과 효과성 제고를 의도하였다. 그 밖에 독일 재해보험제도의 감독기관은 본(Bonn)에 소재하는 ‘연방보험청(BVA)’이며, 연방노동사회부(BMAS)와 연방보건부(BMG) 산하에 있다.

1884. 도입	1925. 직업명 포함	1942. 전체 임금근로자로 확대
1971. 유치원생, 학생으로 확대		2008. 산재보험 현대화 (조합수 35개에서 9개로 축소)

(2)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전통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적용대상으로 포괄하지 않는 대신 집단별로 비통일적인 포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사회보험제도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을 개별적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²¹³⁾

210) 공공재해보험 운영자는 지역재해보험연합, 소방청 재해금고, 주 및 지역 재해보험금고, 주 및 지역 통합재해금고, 연방청 및 철도청 재해보험(UVB)으로 구분된다.

211) 농업부문 재해보험은 ‘농업·임업·원예 사회보험(SVLFG)’에서 담당한다.

212) BGBl. I S. 2130.

213) 김영미,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46집, 2014.5, 408쪽.

독일 재해보험법(사회법전 제7권)은 제2조에서 제6조에 걸쳐 피보험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입유형에 따라 법률 및 정관에 의한 당연적용대상(제2조와 제3조)과 신청에 의해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용대상(제6조)으로 구분된다. 물론 당연적용대상 중에서 신청에 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및 제5조).

1) 당연적용대상

①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자(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당연가입이 되는 피보험자는 먼저 ‘취업자(Beschäftigte)’와 ‘취업자 유사자(Wie-Beschäftigte)’, 취업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 자 및 법률이 규정한 특정한 분야의 자영업자이다. 이를 ‘진정 보험관계(Echte Unfallversicherung)’라고 부른다. 그 밖에 취업활동 또는 노무제공과 관련성이 없지만 당연가입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인적 집단으로 고권적 결정에 의하여 특별한 위험상태에 있는 자가 있으며, 이를 ‘부진정 보험관계(Unechte Unfallversicherung)’라고 부른다.

[표 3-30] 법률에 의한 당연적용 대상자

취업자	직업교육훈련생
산재보험 피보험 업무행위 취득 또는 종료 관련 검진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 중에 있는 자	
인가 장애인 전용 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	농업종사자
가내공업운영자와 중간관리자 및 그 배우자	자영업부 및 그 배우자
학생	구직자
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자영업, 무보수·명예직 종사자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명예직 종사자 및 해당 활동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는 자	
공공단체의 업무협조자 등	긴급상황 시 조력자 등
공동의 위험시 조력자 등	간병인
공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주택건축에 자발적 협력자로 종사하고 있는 자	

가. 취업자(제2조 제1항 제1호)

독일 재해보험법의 가장 전형적인 피보험자는 ‘취업자(Beschäftigte)’이며, 자영업의 개념 정의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Beschäftigung)’의 개념정의는 사회법전 제4편(사회보험법 총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업’은 비자주적(종속적) 노동으로서, 특히 근로관계에서 수행되는 노동을 의미하며, 취업이나 아니냐의 핵심적 기준은 독립성(Selbständigkeit) 또는 종속성(Unselbständigkeit)이라고 할 수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나. 취업관련성을 가진 자

취업관련성을 가진 자라 함은 직업훈련생에 해당하며, 취업자와 비교가능한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된다. 직업훈련생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현장실습생을 포괄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다. 취업자 유사의 자(Wie-Beschäftigte)

일반적으로 ‘취업자 유사의 자(Wie-Beschäftigte)’라 함은 “취업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2조 제2항 제1문)를 말하며, 보험가입의무가 부여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체로 입법자의 의도는 타인을 위한 행위인 경우 비영업적인 분야에서 단기적, 일시적 혹은 일회적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에는 상린관계에 있는 자의 지원행위나 호의적 지원행위, 가계업무, 아동보호, 자주적인 건축업무 및 자동차수리 등이 해당된다.

독일에서 자영업자와 관련하여 재해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개별적인 판결을 통해 인정된 구체적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²¹⁴⁾

- 첫째, 업무로서의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업에 중요한 기여가 되어야 한다.
- 둘째, 그 업무수행이 사업주의 실제 의사나 객관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의사와 합치하여야 한다.

214) 김상호·박지순·김영문,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산재보험 적용 및 운영방안, 고용노동부 보고서, 2012, 32쪽.

셋째, 그 업무의 성질상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접근 가능한 취업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취업관계를 기초로 한 업무에 유사한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단순한 호의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여섯째, 사단의 사원관계나, 조합관계 또는 가족법적 구속관계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적인 구성요건 표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험관계가 인정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 특정한 자영업자(독립사업자)

원칙적으로 재해보험법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에 의한 보호를 정하지 않으며, 자영업자들은 본인 결정에 따라 민영보험기관에 보험가입을 하거나 재해보험법(사회법전 제7권) 제6조에 의하여 임의가입 할 수 있을 뿐이다(제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제9호 전단). 다만, 예외적으로 재해보험법은 농업부문의 자영업자(제5호), 가내수공업자와 중개인(Zwischenmeister)(제6호), 소정의 연해어업종사자(제7호)와 각각 함께 일하는 그의 (사실상) 배우자,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업무종사자(제9호 전단, 다만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심리치료사, 민간요법 치료사²¹⁵⁾, 약사 등은 제외, 제4조 제3항 참고)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최소 규모의 농업자영업자는 신청에 의하여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제5조).

마. 부진정 피보험자

부진정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인 재해가 노동 내지 취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함에도 그에 대하여 재해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된다(제8호 내지 제17호). 다만, 구

215) 민간요법 치료사(Heilpraktiker)는 1939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비의학적 치료사법 제1조에 따라 의사 또는 심리치료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직업적 또는 영업적 행위로 의술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가적 면허를 취득한 비의학적 치료사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직업적인 의술을 행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자유업 종사자에 해당한다.

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의무가입 대상자인지는 사안에 따라 결정되며, 전형적인 의무가입대상자들에는 학생, 자원봉사자, 공익활동자, 간병인 등이 있다.²¹⁶⁾

② 정관에 의한 당연가입자

재해보험 운영자인 직종조합(BG)의 정관을 통해서 의무가입자의 범위를 특정 그룹의 종사자로 확대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그의 배우자, 동거인(제3조 제1항 제1호), 작업장에 체류하고 있는 자(제2호), 의무가입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모든 자원봉사자(제3호)가 여기에 해당하고, 그 경우 사업주 의무가입 여부는 사업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를 요건으로 할 수도 있으며, 가사활동은 사업에서 제외된다.²¹⁷⁾

[표 3-31] 정관에 의한 당연적용 대상자

사업주 및 그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 ²¹⁸⁾	사업장에 체재하는 자(방문자, 통행인 등)
외국에서 독일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자	외국에서 외국의 업무지시를 수행하는 독일 국가 기관 종사자
명에 공무원 수행자 및 국민봉사역 수행자	주 법률에 기초한 어학과정에 참여하는 아동 및 청소년

2) 임의 적용대상

① 법률에 의한 임의가입자

사회법전 제7권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의가입 대상자는 사업주 및 그 배우자(생활동반자, 제1호), 자본회사 또는 인적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주와 유사하게 자영으로 종사하는 자(제2호), 공익단체에서 선출직 또는 위임직의 명예직 종사자(제3호), 사업주단체 및 노동

216) 김상호·박지순·김영문,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산재보험 적용 및 운영방안, 고용노동부 보고서, 2012, 32쪽.

217) 김상호·박지순·김영문,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산재보험 적용 및 운영방안, 고용노동부 보고서, 2012, 33쪽.

218) 독일의 사회법전은 이성의 반려자를 ‘배우자(Ehegatte/Ehegattin)’로 표현하며, 동성의 반려자는 ‘생활동반자(Lebenspartner)’로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다.

조합 연합단체에서 명예직으로 종사하는 자(제4호), 정당의 명예직 종사자(제5호)이며, 이들의 보험관계는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제2항).

② 정관에 의한 임의가입자

정관에 의하여 의무가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업주와 그 배우자는 임의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제6조 제1호). 사업주 임의가입은 자본회사나 인적회사에서 규칙적으로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른바 유사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제2호). 유사사업주(Unternehmerähnliche Personen)는 예컨대,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지배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의 선출직 명예직무자(제3호),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제4호), 정당(제5호)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임의가입대상자이다.

[표 3-32] 임의가입자

법률에 의한 임의가입대상자	정관에 의한 임의가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및 그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제1호), 단 가사운영자(가정주부), 비영업 목적 내륙어업 또는 양봉업의 사업주, 비영업 목적 축산업자²¹⁹⁾ 및 그 배우자, 어업손님 및 사냥손님 제외 • 자본회사 또는 인적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주와 유사하게 자영으로 종사하는 자(제2호) • 공익단체에서 선출직 또는 위임직의 명예직 종사자(제3호) • 사업주단체 및 노동조합 연합단체에서 명예직으로 종사하는 자(제4호) • 정당의 명예직 종사자(제5호) 	<p>정관에 의하여 의무가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업주와 그 배우자</p> <p>유사사업주(Unternehmerähnliche Personen)(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지배인의 지위에 있는 자)</p> <p>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의 선출직 명예직무자(제3호),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제4호), 정당(제5호)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p>

219) 사회법전 제7권 제12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경영을 하지 않고 가축 또는 유용동물을 성장, 비육

3) 적용대상 제외

재해사고의 결과에 대하여 재해보험법 이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도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된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판사, 군인 및 종교단체에서 정관에 의한 구성원이 된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제4조 제1항). 이들은 국가법적 의미에서 재해보험에 본질적으로 상응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보장받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급여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재해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직 공무원이나 명예직 판사는 적용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요양청구권만 인정되기 때문에 재해보험상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²²⁰⁾

이처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은 법정 재해보험에 따른 수급권 보다 우선 적용되며, 공무원연금급여를 신청하여 청구권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전쟁희생자보상법과 연방전염병법 및 공무원연금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하여 재해보험의 급여액만큼 공무원연금급여가 감소되거나 지급이 정지된다.²²¹⁾

그리고 농업부문 재해보험과 관련한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업허가권 또는 수렵허가권 소지자로서 어업 및 수렵 손님으로 어업 또는 수렵에 참여하는 자와 내륙어업, 양봉업²²²⁾과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다른 영농사업의 주변사업 또는 조력사업이 아닌 경우에 토지경영을 하지 않고 가축 또는 유용동물을 성장, 비육 또는 축산물 획득의 목적을 위해 사육하는 사업(제123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주 및 그 사업에 함께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 당해 사업에서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인척으로 혹은 사업주의 피후견인, 배우자로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들이다(제4조 제2항). 다만, 가족이 당해 사업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가족과 그 사업의 취업자(제124조 제1호)는 적용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인 보험보호가 가능한 자도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되는데, 의사, 치과의사, 심리치료사, 자연요법 치료사,

또는 축산물 획득의 목적을 위해 사육하는 사업”을 말한다.

220) 근로복지공단(편역), 독일산재보험법 해설, 2006, 93-94쪽.

221) 근로복지공단(편역), 독일산재보험법 해설, 2006, 94-95쪽.

222) 양봉업은 25개 이상의 군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제4조 제2항 제2호 후단).

약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제4조 제3항). 이들 외에 보건의료기관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대상 제외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개원의사로서 자신의 영업장에서 행한 활동 외에 진단서 발급, 심화훈련행사 참가, 구조 활동에 응급의사로 참여, 독립적 근무 계약의 범주에서 이루어진 활동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개원의가 명예직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가입에 따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²²³⁾

그 밖에 농민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하여 법정 연금보험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의 가족구성원(제2조 제4항), 그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로서 농업직종조합에서 관할하는 사업(제123조 제1항 제1호 - 제5호)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들도 재해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

[표 3-33] 타법 보호에 따른 가입의무 면제 대상자

별도의 산재보상규정의 적용	당연적용 대상자 중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어업허가권 또는 수렵허가권 소지자로서 어업 및 수렵에 손님으로 참여하는 자, 비영리 목적의 내륙어업과 양봉업의 사업주 및 그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
연방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손해의 적용대상자	자영의사, 최과의사, 약사, 수의사, 심리치료사, 자연요법 치료사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종교단체 종사자 등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가구 내에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경우

한편, 사회법전 제7권 제5조에 의하면, 원예업과 포도 경작업, 양어업, 연못경영, 내륙어업(협곡어업, 하천어업), 양봉업, 자연 및 환경보호 목표에 기여하는 경관관리(제1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사업으로 그 규모가 0.12 헥타르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주와 그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의 신청으로 농업부문 재해보험의 가입이 면제된다. 다만, 특수경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정관에서 정한다.

223) 근로복지공단(편역), 독일산재보험법 해설, 2006, 95-96쪽

[표 3-34] 독일의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당연가입대상		임의가입대상 (사회법전 제7권 제6조 제1항)
법률상(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예외적으로 당연가입 인정	<p>정관을 통해(사회법전 제7권 제3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법으로 정한 피보험자인 사업주 외에 다른 사업주와 그 배우자(생활동반자)도 법정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한 정관을 통한 보험가입의무 설정 가능 - 다만, 산재보험운영기관이 사업주 의무보험 도입 여부, 도입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면제가능성 설정 가능 	정관에 의하여 의무가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업주와 그 배우자(생활동반자)는 임의로 보험가입 가능
농업사업주 및 그 가족종사자(최소 규모의 농업자영업자는 신청에 의하여 보험가입의무 면제)		<p>사업주 및 그 배우자(생활동반자; 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가사운영자, 비영업 목적 내륙어업 또는 양봉업의 사업주, 비영업 목적 축산업자 및 그 배우자, 어업손님 및 사냥손님 제외
연해자영여부 및 그 가족종사자	사업주 및 그 배우자(생활동반자)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업무종사자: 예컨대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간호사, 조산사, 마사지사, 혈액검사실 화학자, 발관리사, 언어치료사, 의사가 아닌 심리치료사, 간병인, 물리치료사		<p>유사사업주: 자본회사 또는 인적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주와 유사하게 자영업으로 종사하는 자(제2호), 예컨대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지배인의 지위에 있는 자</p>

당연가입대상		임의가입대상 (사회법전 제7권 제6조 제1항)
등(다만, 자영업자로 일하는 비교적 수입이 좋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심리학적 심리치료사, 아동 및 심리치료사, 자연요법 치료사)		
비영리 재가간병인(영리적 민간간병서비스 사업주 제외)		
가내공업운영자와 중간관리자 및 그 배우자(생활동반자)		

(3) 가입절차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자유업 종사자들은 법률 또는 직종조합의 정관에 따라 재해보험에 자동 가입되지는 않는다. 모든 사업주는 재해보험을 관할하는 해당 직종조합(BG)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재해보험의 가입은 사업(기업) 설립과정에서 영업청(Gewerbeamt)과 재해보험조합인 직종조합(BG)에 동시에 신고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업청이 신고서 사본을 해당 직종조합에 송부하여 미신고 기업(사업)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직종조합(BG)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의무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업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사업의 종류와 대상, 피보험자 수, 사업개시일, 권한대행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관할 직종조합(BG)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92조 제1항). 따라서 직종조합(BG)에 영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2,500유로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209조 제1항 제8호, 제3항).²²⁴⁾

22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편), 해외 선진 산재보험제도 조사 연구, 2016, 9쪽.

기본적으로 독일 재해보험의 가입 및 신고는 2009년 1월 1일부터 「법정재해보험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Unfallversicherungsmodernisierungsgesetz; UVMG)」에 따라 사회보험 신고절차에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즉 건강보험, 요양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을 위한 신고절차와 재해보험의 전자 임금증명절차가 회람문서에 의해 상제화 된다.

(4) 자영업자 산재보험료의 산정

1) 산재보험료의 산정방식

독일의 재해보험은 단위 재해보험조합인 직종조합(BG)에 의해 독자적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즉 산업별 재해보험조합은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보험료 산정은 임금, 업무 종류별 위험등급 및 기준보험료(Beitragsfuss)를 기준으로 하며(사회법전 제7권 제167조 제1항), 전년도 연금급여로 지출한 금액의 2배에 상응하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사회법전 제172조의a).²²⁵⁾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주와 연방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며, 거주자 및 피보험자 수 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다.²²⁶⁾

$$\text{보험료} = \{\text{소득(임금 또는 가입액)} \times \text{위험등급} \times \text{기준보험료}\} \times 1000 \times \text{개별실적요율에 따른 할인 또는 할증 비율}$$

보험료 산정의 결정요인이 되는 기준보험료는 직종조합(BG)에 가입한 모든 기업의 보험료단위(임금 × 위험등급)를 합산한 수치에 대한 보험료징수 목표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즉, 필수분담금(Umlagesoll)은 보험료 단위(임금 × 위험등급)로 나누어 계산하지만, 비영업적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보험료 단위는 고려하지 않는다(사회법전 제7권 제167조 제2항). 구체적인 보험료산정에 관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다(동조 제3항).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연간소득상한액까지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하며, 위험등급은

225)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지급된 연금급여 지출액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금 지급준비금의 사용은 단위조합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연방보험청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하다(김상호,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1999, 20쪽, 40쪽).

226)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편), 주요국 산재보험제도 - 독일편, 2011, 27쪽.

위험정도가 유사한 업무분야별 위험등급단위를 설정하고 공시된 위험등급표에 따른다. 개별실적요율은 개별 기업의 재해예방 활동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한 것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된다.²²⁷⁾

2) 위험등급

위험등급은 가입자 보험료를 차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상대적 위험도에 따라 위험정도가 유사한 업무분야를 묶어서 위험공동체인 위험등급단위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다양한 업무분야로 구성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위험등급이 적용된다(업무단위별 적용). 재해보험조합은 업무분야별 위험등급을 산정한 위험등급표를 공시하며, 기준기간과 보험급여의 범위를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위험등급표는 ‘위험등급산정위원회(Gefahrtarifausschuss)’에서 작성하며, 감독관청인 연방보험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유효기간은 최대 6년이다.

이러한 위험등급표는 예컨대, 운송산업 재해보험조합의 경우 2011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

[표 3-35] 독일 운송산업 직종조합(BG-Verkehr)의 위험률 등급표

재해보험 조합	위험 등급 코드	사업 · 업무종류	위험 등급
운송산업 직종조합 (BG-Verkehr)	550	화물수송사업, 차량운송사업	10.29
	515	우편서비스 · 수송서비스사업:	1.64
	570	가구운송사업(물류업무 포함)	5.51
	551	폐기물처리사업: 컨테이너를 이용한 폐기물 수거 · 운송 등	5.98
	520	버스운송, 학생 · 장애인운송, 환자수송 · 응급구조서비스사업 등	3.30
	530	택시사업, 대여차량사업 등	6.60
	700	탈 수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마차 관리 등	24.26
	740	항공사업, 조종사학교, 공항 및 비행장 운영 · 관리사업	1.11

227)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편), 해외 선진 산재보험제도 조사 연구, 2016, 15쪽.

재해보험 조합	위험 등급 코드	사업·업무종류	위험 등급
	800	페리(ferry) 사업, 선박갑판위 사업, 수상스포츠학교 사업 등	5.32
	820	여객선 운행사업, 선박고정 활동 등	11.56
	830	화물선 운행사업, 잠수 및 구조사업, 선박청소 및 선박탱크청소 사업 등	21.92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2016), 89-92쪽.

3) 산재보험료율

① 기본요율(기준보험료)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요율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의 보험료단위(임금총액 × 위험등급)를 합산한 수치에 대한 보험료징수 목표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이러한 기본요율은 매년 재산정하며, 가입된 모든 사업주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매년 새로 산정되는 기본요율은 위험등급 1인 업무분야의 임금 1,000유로에 대해 적용되며, 모든 기업의 보험료단위(임금총액×위험등급)를 합산한 수치에 대한 보험료징수 목표액의 비율로 산정된다(제167조 제2항 제1문).

$$\text{기본요율} = \text{보험료징수 목표액} \times 1000 / (\text{임금총액} \times \text{위험등급}) \text{의 총합}$$

② 예방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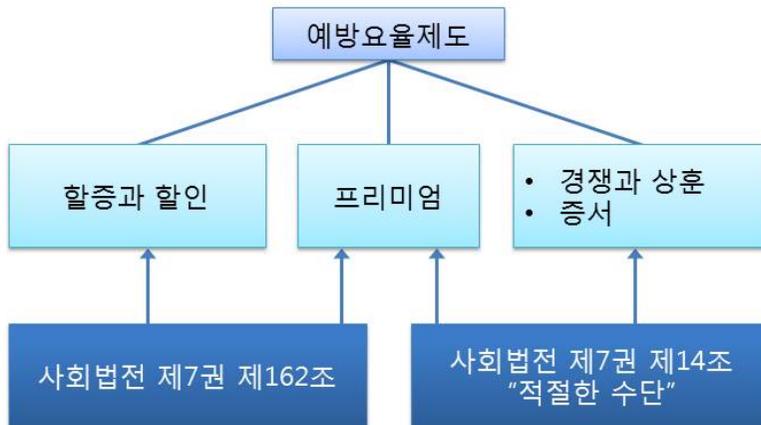
개별 재해보험 운영자가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예방요율은 예방활동을 한 기업 또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할인된 보험료 또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독일의 재해보험 운영기관은 노동재해와 직업병 및 업무에 기인한 건강손상위험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시행한 조치들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보험료(Prämien)를 적용할 수 있다(제162조 제2항).

③ 개별실적요율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직종조합에서 운영해야 하는 법적 강제사항으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데, 개별 기업의 재해예방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하여 보험료에 대해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한다(제162조 제1항).

할인·할증 형태로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직종조합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0%에서 30% 수준에서 정해진다. 개별실적요율의 재해율 산정기준은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 재해에 기인하는 기업별 보험급여이며, 직종조합별 자치운영이 허용된다. 자치운영이 허용되는 범위는 할인, 할증, 또는 할인/할증 형태의 제도 운영과 보험사고 범위에 자연재해에 의한 보험사고 포함 여부, 사업장 소속이 아닌 경우 단독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포함 여부, 출장재해 및 직업병 포함 여부 등이다.²²⁸⁾ 할인(BG BAU) 및 할증(BG ETEM, BGN)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보험사고 건수, 보험사고 강도, 보험사고 비용이며, 이를 혼합(BG HM, BG HW)하여 산정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림 3-10] 법정 재해보험의 예방요율제도와 법적 근거



출처: DGUV 홈페이지(www.dguv.de) 참조.

228)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편), 해외 선진 산재보험제도 조사 연구, 2016, 13쪽.

(5)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독일 재해보험에서 자영업자의 수급현황에 대한 개별적인 통계자료는 별도로 공표되고 있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한 의무가입자인 자영업자인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재정적 측면에서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서 별도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재해보험급여에 대한 부분 역시 근로자의 경우와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재해보험급여제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독일의 재해보험급여는 크게 재활급여와 보상급여로 구분되는데, 먼저 재활급여는 재해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제거 또는 완화하여 사회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요양급여,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 사회재활 및 기타 보험급여로 세분된다(사회법전 제7권 제26조 - 제55조). 그리고 보상급여는 연금, 보조금 및 일시금(동법 제56조 이하)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요양 및 재활급여는 다른 연금급여에 우선하여 지급된다(동법 제26조 제3항).²²⁹⁾

(6) 자영업자 산재보험 운영 현황

1) 독일 재해보험의 운영체계

독일의 재해보험은 직종조합(BG)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공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자의 사적 이윤추구는 금지된다. 실질적으로 재해보험의 운영주체가 정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직 운영이 매우 다원적이며, 재해예방과 보상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²³⁰⁾

독일 재해보험의 운영기관인 직종조합(BG)은 2008년 「재해보험현대화법」에 의한 조직개혁으로 통폐합되어 현재 9개로 축소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2009년 1월 1일 행정재해보험조합(VBG)와 요업 및 유리공업 재해보험조합이 하나의 새로운 행정재해보

229) Kokemoor, Sozialrecht, 7. Auflage, 2016, S. 134 - 135.

230) 박명준, 독일 자영업자 자유직업인의 사회보험, 국제노동브리프, 2013.12. 16-32쪽; 전광석, 독일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2008, 189쪽.

협조합으로 통합되었고, 같은 해 4월 1일 종전 전기·섬유·정밀기계산업 재해보험조합과 가스·지역난방·물관리산업 재해보험조합이 에너지·섬유·전기산업 재해보험조합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2010년 1월 1일에 채굴산업 재해보험조합, 채석산업 재해보험, 화학공업 재해보험조합, 제지산업 재해보험조합, 피혁산업 재해보험조합, 설탕산업 재해보험조합 등이 통합하여 원료·화학공업 재해보험조합이 출범하였다. 같은 시기에 에너지·섬유·전기산업 재해보험조합과 인쇄·종이 가공산업 재해보험조합이 에너지·섬유·전기·미디어 제작산업 재해보험조합으로, 차량운송산업 재해보험조합과 해양산업 재해보험조합이 수송·교통경제산업 재해보험조합(운수산업 산재보험조합)으로 통합되었다. 전철·전차·철도산업 재해보험조합과 행정재해보험조합 역시 통합되어 새로운 행정재해보험조합으로 출범하였다.²³¹⁾

[표 3-36] 부문별 재해보험 운영기관²³²⁾

	재해보험 운영기관
산업별 직종조합(BG)	건설업 직종조합(BG BAU)
	에너지, 직물, 전기, 미디어산업 직종조합(BG ETEM)
	목재 및 금속산업 직종조합 (BG HM)
	도소매 및 유통산업 직종조합 (BG HW)
	식품산업 직종조합 (BG BGN)
	원자재 및 화학산업 직종조합 (BG RCI)
	운송산업 직종조합 (BG Verkehr)
	보건복지산업 직종조합 (BGW)
	행정부문 직종조합 (VBG)

23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편), 주요국 산재보험제도 - 독일편, 2011, 5쪽.

232) 박지순·오세웅·황원재·박수경, 해외 선진 산재보험제도 심층 조사·연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 17쪽 참조.

	재해보험 운영기관
공공재해보험	연방청, 철도청 재해보험공단
농업사회보험	농업사회보험조합(LBG)
기타	독일 공공재해보험연합(DGUV)

2) 보험가입현황

① 자영업자의 법정 재해보험 가입

사업주가 피고용자인 근로자의 재해보험을 위하여 관할 직종조합(BG)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인데 반하여, 사업주 자신을 위해서는 가입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스스로 임의가입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연히 법정 재해보험의 의무가입자가 아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역시 사업주로서 재해보험에 임의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독일에 있어서 독립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은 법정재해보험 보다 민간재해보험에 가입을 선택하는 경우가 보험혜택이 크다고 하겠다. 다만, 법정 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선택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사업주가 법정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직종조합(BG)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직종조합(BG)은 임의 가입한 사업주에 부과할 연간보험료를 결정한다. 사업주의 납입보험료는 보험총액과 사업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인 경우 총 보험료는 대략 3만유로의 최저 보험료총액과 약 8만 5천유로의 최대 보험료총액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위험등급은 직종조합에서 사업에 따라 정한 등급에 따른다.

그러나 독일에서 정확한 자영업자의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개별 직종조합(BG)에서 피보험 자영업자든 독립적 자영업자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1인 자영업자의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재해보험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법정 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산업부문 직종조합에 가입된 사업주 수는 다음 표의 왼쪽부터 건설부문 직종(BG BAU)과 식품산업 직종조합(BGN)의 경우 대략 5만명, 도소매 및 유통산업 직종조합(BG HW)과 보건복지산업 직종조합(BGW)은 30만명, 에너지, 직물, 전기, 미디어산업 직종조합(BG ETEM)과 행정부문 직종조합(VBG)은 약 10만명, 운송산업 직종조합(BG Verkehr)은 약 15만명, 목재 및 금속산업 직종조합(BG HM)은 약 4만명 정도에 이르렀다. 다만, 원자재 및 화학산업 직종조합(BG RCI)은 매우 저조한 가입률을 보였다. 아울러 각 산업분야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수는 도소매 및 유통산업 직종조합(BG HW)과 보건복지산업 직종조합(BGW)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5만명 미만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연방노동사회부(BMAS) 자료에 의하면, 마이크로 센서스 조사와는 차이가 있지만 소득활동자의 1%, 대략 44만명이 플랫폼노동자(Crowdworker)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건설 및 숙박업 분야의 관할 직종조합(BG)에 의하면 가입된 사업장 518,000개 중에서 285,000개는 피고용인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재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³³⁾

[그림 3-11] 2010년 직종조합 피보험자인 사업주



출처) 독일 법정재해보험 통계보고서 참조.

233) Frankfurter Allgemeine, Uber, Myhammer und Co. sollen Sozialabgaben zahlen, 03.01.2018.

[표 3-37] 법정 재해보험 - 수입, 지출 및 자산

	수입		지출							연말 자산
	총액	기여금 (보험료)	총액	급여지출	그 중				기타 지출 ¹	
					연금	치료	휴업급여	재해 예방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2013	14,652	87.3	14,675	10,884	51.5	30.3	6.2	10.1	3,791	19,830
2014	14,776	87.8	14,758	11,082	50.7	30.8	6.2	10.4	3,676	20,278
2015	14,976	88.0	14,989	11,293	50.1	31.2	6.2	10.5	3,696	20,572

학생재해보험 제외

¹ 응급치료를 위한 급여, 병원치료, 의치 기타 치료비용

출처: 연방노동사회부(재인용: 연방통계청, 통계연보 2017, S. 236)

② 자영업자의 민간 재해보험 가입

원칙적으로 독일의 자영업자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 재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법정 재해보험에 임의가입하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양자에 모두 가입할 수도 있다. 특히, 민간보험의 경우 법정 재해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 이외에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휴가 중 체류한 외국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민간 재해보험은 재해보험급여를 제공한다.

독일의 민간 재해보험회사가 보험자로서 자신들의 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 한, 가입유형이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사회보험과 다른 민간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가 상당히 다양하고 급여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스스로 다수의 상품을 면밀히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자영업자들은 단체로 민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체재해보험은 사업

주와 경영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최소한의 피보험자 수는 보험자인 재해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명에서 3명을 기준으로 한다. 단체보험의 특성상 계약상 피보험자를 열거하거나 열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체보험료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세제혜택의 대상이 된다.²³⁴⁾

3) 보험급여 현황

① 자영업자의 법정 재해보험 급여

자영업자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개인적인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보험총액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수령하고 있는 연금 등의 급여 외에 재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총액(Versicherungssumme)은 일괄적으로 연간 총소득의 3배 정도 수준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젊을수록 보험총액을 높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 생활수준을 고려 10만 유로 정도면 적절한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30세의 남성으로 연간 총소득이 4만 유로인 경우 최소한 12만 유로가 적정하며, 소득의 5배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보험총액은 구체적으로 최소 3만 유로에서 최대 8만 5천 유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의 보험료와 보험총액을 법정 연금보험의 보험료에 연동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그 밖에 개별적인 재해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결근하게 된 날로부터 22일 후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완전재해연금과 부분재해연금이 지급되며, 피보험자의 사망 시 배우자연금과 자녀연금이 지급된다.

독일의 법정 재해보험의 피보험자와 연금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2017년 연방통계청에서 제시한 통계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4) Rhion Versicherungen AG(Hrsg.), Private- und gewerbliche Unfallversicherung, Rhion Versicherungen AG, 4/2014, S. 9.

[표 3-38] 법정 재해보험-피보험자와 연금현황

	피보험자	연말의 연금현황			
		총 액	구분		
	1,000		수치	휴업과 질병으로 인한 연금	배우자연금
		%			
2013	64217	917265	86.3	12.3	1.4
2014	65048	902236	86.4	12.3	1.3
2015	65898	884361	86.4	12.3	1.3
2015년 중에서 산업 직종조합	52551	718164	85.8	12.9	1.3
농업 직종조합	3285	86698	89.6	9.3	1.1
공공부문 재해보험 운영기관 ¹	10063	79499	89.2	9.7	1.1

¹ 소방관재해보험금고, 체신·통신 재해금고
출처: 연방노동사회부(개인용: 연방통계청, 통계연보 2017, S. 236)

② 자영업자의 민간 재해보험 급여

자영업자를 위한 민간 재해보험의 경우, 실제 가입 시 ‘등급조항(Progressionsklausel)’에 대한 합의를 대체로 함께 체결하게 된다. 여기서 ‘등급조항’은 보험급여가 특정 장애등급까지는 일정하게 상승하지만, 특정 등급에 도달하면 과도한 비율로 증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225% 등급과 10만 유로의 보험총액을 체결한 경우 100% 장애등급까지는 22만 5천 유로, 등급이 없으면 10만 유로만 수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민간 재해보험의 보험자는 225%에서 500% 사이의 등급을 제공한다.²³⁵⁾

물론, 재해보험 등급을 체결하는 것이 유익한지는 개별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영의 수공업자나 자영의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같이 장애등급이 높을 위험

235) Henrich, Unfallversicherung für Selbständige, in: finanxfach24, 15.02.2018.

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조항에 합의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높은 보험 총액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의 수준도 낮게 책정된다. 즉, 민간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개별적인 재해위험도에 따라 책정되는데, 자영업자로서 신체적 활동이 적거나 거의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면 되지만, 신체적 활동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취미로 위험한 스포츠 활동하는 경우까지 보험료 산정에 고려된다. 아울러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충분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연령과 소득을 고려하여 보험총액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30세 이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총소득의 6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4배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추정된다.²³⁶⁾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법체계 및 입법목적

독일은 130년이 넘는 오랜 산재보험제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산재보험법 역시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일 양국과 달리 독일의 산재보험법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모든 비임금근로자의 재해보호를 기본적인 입법목적으로 하는 보편적인 재해보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컨대 적용대상을 ‘취업자’, ‘피보험자’와 같은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매우 다양한 유형의 비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일종의 국민재해보험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2) 적용범위

법문상 판단할 때 독일에서는 일부 자영업적으로 종사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업주 및 그 배우자를 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 하는 매우 포괄적인 자영업자

236) Ebenda.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산재보험 가입 시 업종별로 더 세부적인 가입 요건이 있는 지까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법문상으로는 가장 광범위한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포괄적인 적용범위 규정은 제도가 매우 단순해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고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자영업자에게 보험가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수 확대와 가입률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의 적용범위 확대 방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호에 관한 노력이 오랫동안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독일의 유사근로자, 외관자영업자 개념의 도입과 ‘취업자 지위확인절차’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문제를 해결하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가입자 수 및 가입률

독일의 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자 총수는 약 64만명, 가입률은 15%(전체 자영업자 수 약 440만을 기준으로 계산)이다. 이는 일본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독일 역시 공적 산재보험제도가 자영업자 산재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가장 포괄적인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고 제도 시행의 역사가 매우 길어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이기에 자영업자의 법정산재보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절대적인 가입자 수와 가입률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는 임의가입제 하에서는 적용범위만 넓어서는 가입자 수가 자동으로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자영업자 가입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독일의 자영업자가 보기에 공적 산재보험혜택이 자영업자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민간보험을 많이 가입하기 때문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의 경우 자영업자 민간보험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점에서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자영업자 재해보호를 위한 법정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경험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4절 이탈리아

1. 자영업자의 개념

이탈리아는 민법에서 종속노동자²³⁷⁾와 독립노동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중 독립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민법 제2222조에서 “특정 업무나 용역을 종속관계 없이 주로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독립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다.²³⁸⁾ 이러한 자영업자에는 “독립계약자, 전문직, 소규모 사업자, 준종속노동자(프로젝트 계약노동자) 등”²³⁹⁾이 포함 된다고 한다.

237) 종속노동자에 대해 민법 제2094조는 “종속 노동의 제공자란 보수의 대가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 하에서 제공하면서 기업 내에서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Dispositivo dell'art. 2094 Codice Civile : È prestatore di lavoro subordinato (1) chi si obbliga mediante retribuzione a collaborare nell'impresa, prestando il proprio lavoro intellettuale o manuale alle dipendenze e sotto la direzione dell'imprenditore)., 신수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연구 - 이탈리아의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관련 해외사례검토(1) 2018. 5. 8., 69쪽에서 재인용.

238) Dispositivo dell'art. 2222 Codice Civile : Quando una persona si obbliga a compiere verso un corrispettivo un'opera o un servizio, con lavoro prevalentemente proprio e senza vincolo di subordinazione nei confronti del committente, si applicano le norme di questo capo, salvo che il rapporto abbia una disciplina particolare nel libro IV, 신수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연구 - 이탈리아의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관련 해외사례검토(1) 2018. 5. 8., 70쪽에서 재인용.

Self-employed workers. Workers who, in consideration of a certain remuneration, undertake to perform a piece of work or to provide a service, primarily by their own effort and without a relationship of subordination with respect to the principal (Article 2222, Italian Civil Code). [https://content.next.westlaw.com/Document/I2ef1289e1ed511e38578f7ccc38dcbec/View/FullText.html?contextData=\(sc.Default\)&transitionType=Default&firstPage=true&bhcp=1](https://content.next.westlaw.com/Document/I2ef1289e1ed511e38578f7ccc38dcbec/View/FullText.html?contextData=(sc.Default)&transitionType=Default&firstPage=true&bhcp=1)(2018. 9.20. 검색)

239) 신수정, 앞의 자료, 70쪽.

[표 3-39] 이탈리아에서 자영업자(독립노동자)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²⁴⁰⁾

유형	의미
독립계약자(도급계약자)	본인의 위험부담으로 필요한 수단과 관리업무를 조직하여 업무나 용역을 완성할 의무가 있는 사람(민법 1655조) ²⁴¹⁾
전문직(professionisti)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종속관계 없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약사 등
소규모 사업자(piccoli imprenditori)	구 파산법 제1조 제2항상 자본금 9십만 리라(460 유로) 이하에 최저액의 과세를 하고 있는 사업자(현재 2006년 파산법 개정으로 파산법의 적용이 제외되었음)
준종속노동자 ²⁴²⁾	프로젝트 계약 노동자: 프로젝트 단위 계약에 기초하여 계속해서 조율되는 노동자(lavoratori coordinati e continuativi)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종속노동자와 독립노동자(자영업자)의 사이에 준종속 노동자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준종속 노동자(lavoratore parasubordinato)는 법적 의미에서의 종속성은 없지만 종속노동자와 사회적, 경제적 유사성(즉, 경제적 종속성이나 계약 입장의 취약성 등)을 가지는 자로 정의되고, 판례와 학설에 의해 전개되는 개념이었으나 1973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준종속노동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정법화 되었다.²⁴³⁾ 이와 같은 준종속노동관계에서의 핵심은 “계속해서 조율되는 협력적 노동관계(Collaborazioni Coordinate e Continuative; Co.Co.Co. 이하 ‘코코코’)”의 존재 여부인데, 이 ‘코코코’의 부당한 이용과 종속노동의 위장을 규제하기 위해 2003년 9월 10일 법률 제276호 제61조에서 프로젝트

240) 신수정, 앞의 자료, 70-71쪽.

241) L'appalto è il contratto col quale una parte assume, con organizzazione dei mezzi necessari e con gestione a proprio rischio, il compimento di una opera o di un servizio verso un corrispettivo in danaro. 신수정, 앞의 자료, 70쪽에서 재인용.

242)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된다.

243) 이탈리아에서는 개별적 노동분쟁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에 의하여 “종속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배적으로, 계속해서 조율되는 사업을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실현되는 협력적 관계”, 즉 준종속적 노동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도 종속 노동관계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노동분쟁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민사소송법 제409조 제3호)는 것이다. 신수정, 앞의 자료, 72쪽.

노동(lavoro a progetto; Co.Co.Pro. 이하 ‘코코프로’)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그 후 2012년 6월 28일 법률 제92호(Fornero법)에 의해 프로젝트 노동계약(Contratto di lavoro a progetto)으로 수정되는 등²⁴⁴⁾ 지속적으로 그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이탈리아 의회는 법률 81/2017(Act No. 81/2017)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률의 핵심은 비기업적인 자영 취업자(non-entrepreneurial self-employed workers)의 새로운 권리에 관한 것과 ICT 모바일에 기초한 작업 (ICT-mobile based work)에 적용할 고용 조건을 다루었다. 자영취업자에 대한 보호는 2가지 그룹으로 분류되었는데, 전문직 (professionals)과 고객(사용자)에 의해 조정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those performing activities coordinated by the client)이다. 먼저 전문직(변호사, 건축가 등)은 부가가치사업 자등록이 의무이며 고용주의 지시 밖에서 독립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득세와 사회 보장비를 직접부담하며 종속노동자(employees)에게 부여되는 사회보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들의 사회보장은 변호사협회와 같은 전문직 협회의 기금에 의해 커버된다(전문직 협회가 없는 디자이너 또는 통역사들은 국가사회보장기구(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ecurity, INPS)에 의해 보장됨). 두 번째 그룹은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 노동자, 국제적으로는 이들을 종속자영자(dependent self-employment)로 정의되며, 고객(사용자)과 관계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일부 노동권이 커버된다. 이들은 특히 “가짜 자영업자(bogus self-employment)”의 사례에 비추어, 그리고 젊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전망 악화 문제에서 이들 그룹의 업무 조건에 대해 20년 동안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해왔다.

스마트 워킹 작업자에 대해 동 법률은 종속노동관계의 형식으로 간주하고 고용주들이 스마트 워커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스마트 워킹 배치는 개인적인 계약에 기초해야 하며, 그 계약의 내용에 사무실(회사) 밖에서의 작업수행에 관한 규칙, 고용주에 의한 통제와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종속노동자에 의해 사용되는 작업도구,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들의 산재보험은 약간의 예외를 조건으로 일터로 가는 것과 일터로부터 돌아오는 기간 동안 그들이 선택한 작업장소에서의

244) 신수정, 앞의 자료, 73-74쪽.

재해는 보험에 의해 커버된다.²⁴⁵⁾

다음으로 자영업자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장인기업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정의(범위)는 이탈리아 중앙통계청과 1991년에 제정된 중소기업보호법 (Interventi per l'innovazione e lo sviluppo delle piccole imprese)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중소기업을 제조업 종업원 250인 이하, 서비스업 종업원 95인 이하의 기업으로 정의하여 종업원 수 기준만 사용하고 있으나²⁴⁶⁾, 후자의 경우 종업원 수와 자본금 기준 두 가지를 사용하여 공업부문은 종업원 200인 이하, 감가상각 및 금융자산평가를 빼 투하 자본금 200억 리라 이하, 서비스업 부문(상업부문·첨단 제3차 산업 포함)은 종업원 75명 이하, 감가상각 및 금융자산평가를 빼 투하 자본금 75억 리라 이하의 중소기업(중소기업보호법 제1조 제2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²⁴⁷⁾

장인기업은 통상 장인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가족기업을 말하는데, 역사적 건축물 및 그림 등 예술적 측쪽이 강조되는 직종, 그 도시의 소비재 생산판매 직종(가죽, 의복, 수제화 등), 음식점, 소매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한다.²⁴⁸⁾ 1985년에 장인기업기본법(Legge per le promozioni delle imprese degli artigiani)을 제정하여 기존에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다루었던 장인기업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장인기업기본법에 장인기업의 범주가 정해져 있고, 주정부위원회의 특별인증을 받은 사람이 장인이 된다. 장인기업기본법상 장인기업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40]과 같다.

245) Italy: New rules to protect self-employed workers and regulate ICT-based mobile work, <https://www.eurofound.europa.eu/printpdf/publications/article/2017/italy-new-rules-to-protect-self-employed-workers-and-regulate-ict-based-mobile-work> (2018. 09. 20. 검색)

246) 이러한 중소기업의 정의는 EU의 중소기업(SMEs) 정의인 “종업원 수 250인 미만, 연간 매출액 최대 5천만 유로 또는 자산 총액 4천 3백만 유로 이하 기업(SMEs are defin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s having less than 250 persons employed. They should also have an annual turnover of up to EUR 50 million, or a balance sheet total of no more than EUR 43 million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https://ec.europa.eu/eurostat/web/structural-business-statistics/structural-business-statistics/sme> 2018.9.14.검색)에서 종업원 수 기준만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7) 신수정, 앞의 자료, 74쪽.

248) 신수정, 앞의 자료, 74쪽.

[표 3-40] 이탈리아 장인기업기본법상 장인기업의 주요 특징²⁴⁹⁾

장인기업자의 정의(제2조)	개인적, 직업적, 자격자로서의 장인기업을 경영하고 그 운영과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생산 과정에서 주로 본인 자신의 노동과 수공으로 활동하는 사람
업종제한(제3조)	완제품 및 반제품의 생산, 또는 농업·상업·상품의 유통 증개 및 그 보조·음식업을 제외한 서비스의 공급으로 제한
종업원 수 제한(제4조)	(i) 연속해서 동일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는 기업: 18명 미만 (ii) 연속해서 동일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전체가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기업: 9명 미만 (iii) 예술·진통·맞춤형 의류 생산 분야: 32명 이하 (iv) 운송 관련: 8명 이하 (v) 건설 분야: 10명 이하
조직형태	유한책임회사(Srl) 형태로 설립 가능(설립 시 주식회사(Spa) 형태 불가능, 단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회사로 전환 가능)

[표 3-40]의 장인기업자의 정의를 볼 때 장인기업자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장인기업이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한 경우도 대다수의 회원(또는 2명 중 1명)이 작업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주식 및 의사결정기구를 보유하는 경우 장인기업법의 적용을 받아 장인기업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의 정의를 개인사업체로 한정한다면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가진 장인기업은 자영업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종업원 수 기준으로 볼 때 장인기업의 규모(장인기업의 95%는 전체 종업원 수 10명 미만²⁵⁰⁾)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종사업종의 범위가 수공업 위주로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2. 자영업자 현황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이탈리아 전체 인구는 6055만명이다.²⁵¹⁾ [표 3-41]에서 보듯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2,758천명이다.²⁵²⁾

249) 신수정, 앞의 자료, 74-75쪽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함.

250) 신수정, 앞의 자료, 76쪽.

251)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name_desc=true(2018.9.17. 검색)

252) 2,593만명(2017년 기준),

[표 3-41] 이탈리아의 경제활동 인구(2016년)

분 야	사람 수(단위: 천명)	비 율
농업	884	3.9%
공업	5,945	26.2%
금속	4,541	20.0%
건설	1,404	6.2%
서비스업	15,929	41.8%
상업	3,242	25.1%
숙식업	1,395	
운송업	1,085	
정보통신업	562	16.7%
재정, 보험업	649	
민간 서비스	2,591	5.5%
공공 서비스	1,262	
교육업	1,543	14.8%
의료 및 사회보험	1,831	
가족(돌봄)서비스	759	3.3%
기타 서비스	1,010	4.4%
합계(농·공업·서비스업)	22,758	100.0%
직종별	22,523	100.0%
기술 및 자격	7,866	34.6%
상업 및 서비스 운영	6,952	30.5%
장인 및 직공	5,182	22.8%
자격 없는 개인	2,523	11.1%

자료: Istat(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이탈리아 통계청), 2017년 백서 표 4.2 경제활동 및 직종별 고용, 2008년, 2015년, 2016년(천 명, %), p.149., 신수정, 앞의 자료, 79쪽 재인용.

자영업자 수는 [표 3-42] 고용유형에 따른 노동자 분류상 2014년 독립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 약 492만명이며, 이중 진정자영업자 약 462만명, 가족경영(가족종사자)자 약 30만명이다. 자영업자 수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전체 경제활동인구 수에 대한 자영업자 비율을 계산하면 $492\text{만명} \div 2,275\text{만명} \times 100 = 21.6\%$ 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상당히 높다. 여기에 특수고용 노동자, 즉 종속적 자영업자 약 22만 명을 자영업자에 포함시키면 전체 자영업자 수는 514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표 3-42] 고용유형에 따른 노동자 분류

(단위: 명)

연도	종속 노동자	독립노동자			외부인				임시 고용
		진정 자영업	가족 경영	합계	관리자	특수 고용	기타	합계	
2011	11,304,118	4,791,687	328,281	5,119,968	95,468	301,877	24,584	421,929	123,237
2012	11,648,406	4,750,493	323,311	5,073,804	104,631	320,915	37,695	463,241	154,290
2013	11,392,124	4,719,400	315,267	5,034,666	102,328	237,795	28,818	368,941	156,676
2014	11,270,574	4,621,590	297,145	4,918,735	98,062	222,913	23,593	344,568	175,466

자료: Istat, Annuario Statistico Italiano 2016, Prospetto 8.1 Lavoratori delle imprese per tipo di rapporto, Anni 2011-2014, p.264.

한편, 이탈리아에서 대표적으로 자영업자에 포함될 수 있는 장인기업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장인기업 수는 약 140만명(전체 기업 수의 약 35%),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체 GDP의 12%, 전체 고용의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²⁵³⁾ [표 3-42]에 따르면 장인 및 직공(장인기업의 근로자)의 수는 5,182천명으로 전체 직종에서 약 22.8%를 차지하고 있다.

3.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및 운영 현황

(1) 개 관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고 유럽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발달된 편으로 평가된다.²⁵⁴⁾ 근로자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헌법 제38조는 “근로

253) 신수정, 앞의 자료, 76쪽.

254) Edmondo Salinaro, 이탈리아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자영업자 및 준종속적 근로자,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1월호,

자들은 사고, 질병, 장애, 노령,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적절한 보험에 담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자국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시민과 동등한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²⁵⁵⁾ 이탈리아 산재보험제도는 1898년 법률 제80호를 통해 최초로 강제적인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²⁵⁶⁾ 이후 관련 법제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산재보험에 관한 현행 주요 법원(法源)은 1965년 6월 30일 대통령령 1124호로 제정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련된 기본규정」(이하 ‘65년 기본규정’이라 함)이다.²⁵⁷⁾ 65년 기본규정(수권입법에 기초하여 정부가 기존의 법규를 정리통합해 대통령령의 형태로 공포하는 것)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공업부문의 강제산재보험, 제2장 농업부문의 강제산재보험, 제3장 외국선박승선 선원에 관한 특별제도, 제4장 특정근로자에 관한 규정이다.²⁵⁸⁾ 이 법률 제1조 1문에서 “본 장에서 규정하는 조건 하에서 기계(근로자가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 작동하지 않는 것), 프레스기계 및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기구 또는 장치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상기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를 사용하는 공업, 연구소, 또는 작업노무역무를 하려고 배치한 작업장소에서 고용되는 모든 자에 대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활동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이어서 구체적인 적용대상 작업이 열거되어 있다. 제1조 제1문의 내용을 통해 이탈리아 역시 보험적용의 인적 범위에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사하는 자”, “~고용되는 모든 자”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선택하여 인적적용 범위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뒤에 나오는 인적적용대상을 규정한 제3절의 절 명칭을 “피보험자”라는 보다 상위의 개념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를 열거한 제4조에서 “보험에는 다음의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후 종속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인적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노동연구원, 69쪽.

255) Edmondo Salinaro, 69쪽.

256) 근로복지공단, 이탈리아산재보험, 2004, 1쪽. 참고로 이 자료는 2003년 3월 일본의 산재보상연구회가 작성한 “이탈리아 산재보상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257) 근로복지공단, 앞의 자료, 52쪽.

258) 근로복지공단, 앞의 자료, 56쪽.

이탈리아는 산재보험법의 기본적인 입법목적은 임금근로자 보호에 한정하지 않는 입법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65년 기본규정의 적용대상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자영업자 역시 강제보험대상자이다.

65년 기본규정은 이후 새로운 법률과 명령에 의해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80년 말부터는 새로운 기본규정의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중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관련된 것은 가정근로자 및 가족종사원에 대한 보험적용확대(1971.12.31. 대통령령 1403호), 가내근로자에 대한 보험적용확대(1973.12.18. 법률 877호), 독립노동자에 대한 자동급여원칙 폐지(1997.12.27. 법률449호) 등이다. 한편, 기본규정이 아닌 위임입법 형식으로 의미 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2000. 2. 23. 입법명령 제38호, 이하 2000년 입법명령)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관련하여 동 입법명령 38호에서 자영업자에 속할 수 있는 준종속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도입하였다.²⁵⁹⁾

(2) 적용범위

이탈리아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보험급여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이중의 제한, 즉 적용대상업무에 관한 제한과 보호주체에 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업무와 적용대상주체 두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탈리아가 산재보험제도를 만들 때부터 산재보상의 근거를 “직업상 위험(rischio professionale)”에 두고,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재해가 아니라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65년 기본 규정 1조에 규정된 업무에 종사하는, 기본규정 4조 등에서 규정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의미이다.²⁶⁰⁾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부분의 적용대상업무는 재해 위험이 비교적 큰 산업부문의 일부 작업이 포함되고, 서비스업 중 은행과 보험업은 적용대상업무에서

259) 근로복지공단, 앞의 자료, 52-54쪽.

260) 근로복지공단, 앞의 자료, 1-2쪽.

제외되어 있으며²⁶¹⁾, 농림수산업 부문의 경우 거의 모든 작업이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농림수산업에 대한 적용대상업무는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보호주체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법령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주체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적용대상업무(작업)

적용대상업무는 크게 65년 기본규정 제1조에 따른 공업부문의 적용대상업무와 기본규정 제2장에 따른 농림업 부문 적용대상업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업부문의 적용대상업무는 다시 기계, 기구 또는 장치(이하 ‘기계 등’이라 함)를 이용한 작업과 기계의 이용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작업 28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러한 28가지 열거는 한정적인 것으로 확대해석은 허용되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적용대상업무에 포함될지에 대한 여러 판례가 있다고 한다.²⁶²⁾ 구체적인 적용대상업무를 [표 3-43]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3] 이탈리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업무

공업부문	
(1) 기계 등을 이용하는 작업(65년 기본규정 제1장 제1조)	
① 기계(근로자가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 작동시키지 않는 것), 프레스기계 및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기구 또는 장치에 종사하는 업무	
② 상기의 기계 등을 사용하는 공업, 연구소, 또는 작업·노무·역무를 하려고 배치한 작업장에서의 작업	
(2) 주로 기계의 이용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작업(28가지)	
1	도로·수도 그 외 공공토목시설 일반을 포함하는 건조물의 건설·보전수리·해체작업. 이들 시설의 설치·청소·장식·정비 및 건조물의 완성을 위한 조립자재의 조립작업, 또는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철수(撤水)·제설·수목의 손질·제초작업

261)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위임입법에 따라 상업 금융서비스업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작업으로 포함되었다.

262) 근로복지공단, 앞의 자료, 6쪽.

2	실내 또는 야외에서 설비의 설치·보전·수리·개조·철거작업 및 1항에서 규정하는 기계·기구·설비의 해체·조립·보전·수리·검사 작업
3	농지개척 또는 토지개량, 토사 및 산간분지의 정비, 수원·수로·유수로의 조정 또는 설치의 실시 및 보전 또는 운영작업. 보전작업에는 용수로의 제초 및 지하도예의 배수를 포함
4	갱외 또는 갱내에서의 발굴작업. 발파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모든 작업
5	철도, 노면전차, 트로리버스, 로프웨이, 케이블카의 부설, 보전, 수리작업 또는 그 운영
6	가스, 수도, 전력의 생산, 추출, 변형, 공급, 배급작업(전신·무선전신, 전화·무선전화기업, TV사업에 관한 작업도 포함), 전선 및 도관의 부설, 수리, 유지 및 철거, 파괴침의 설치, 수리 및 철거
7	육상수송작업. 단 기계 또는 동물을 이용할 때에 한정
8	상품 또는 자재의 보관창고의 운영에 관한 작업
9	차, 배, 비행기 보관을 위한 격납작업 및 기계적인 기관의(야외의 경우도 포함) 주차작업
10	하역
11	바다, 갯벌, 호수, 하천, 하늘의 항행에 관한 작업. 단 항공규정에 관한 1923. 8. 23. 칙령(1926. 1. 31. 법753호로 전환)의 34조가 규정하는 근로자는 제외
12	선박 또는 예인선에 의한 어업(해면동물, 산호, 진주, 참치도 포함하고 그 방법은 상관없음). 늪과 갯벌에서의 양식, 홍합양식, 굴양식
13	폭발성의, 현재 폭발중의, 인화성의, 독성의, 부식성의, 연소성의, 방사성의 물질 또는 제품의 생산, 처리, 사용 또는 운송작업 및 이러한 물질이나 제품의 보관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작업. 인화성물질은 섭씨 125도 미만의 인화점을 가진 물질을 말하며, 원유, 광물유 및 광물유회유는 어떤 경우라도 인화성물질로 간주함)
14	식물의 벌채, 재단, 운송, 투입작업
15	금속·기계공장(주조장을 포함)의 작업
16	피혁 공장의 작업
17	유리공장 및 도자기 제조에 관한 작업
18	광산, 채석, 이탄, 채염 작업. 채굴한 것의 처리 및 가공은 보관장소에서 실행된 것이라도 이것에 포함됨
19	시멘트, 석탄, 백묵 및 연와(벽돌)의 제조 작업
20	선박 또는 작은 배의 건조, 해체, 수리작업 및 선박 또는 작은 배 또는 그 적화의 회수 작업
21	도축장 또는 육옥(肉屋)에서의 작업
22	소화작업, 단 국가 소방단의 직원은 제외

23	구조작업
24	민간의 경비작업, 수렵금지구역 또는 어렵금지구역의 감시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포함
25	시의 청소작업
26	동물의 사육, 번식 및 감호작업.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의 작업을 포함
27	일반인을 위한 흥행의 설치준비, 시연 또는 실연작업. 유원지의 설치준비 또는 운영작업. 단 영화관 및 극장에서 장내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28	교육기관에서 실습 및 실무의 수행작업 기계 등을 이용한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기계 등에서 직접 발생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모두 기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공업부문 2(2000년 위임입법 제1조)	
1	공업: 제조채굴기계설치, 에너지가스 및 물의 생산 및 공급, 수송 및 통신, 어업, 흥행에 관한 활동 및 이상을 보조하는 관련 활동
2	수공업
3	서비스업: 여행업을 포함한 상업,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의 생산, 중개 및 제공에 관한 활동 및 이상을 보조하는 관련활동
4	기타 활동: 앞의 1, 2, 3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의한 활동 등
농업부문(65년 기본규정 제2장 206조~208조)	
농림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경작, 조림, 동물사육 목적의 활동 및 관련 활동(돼지, 새, 토끼, 물고기 사육, 식료용 야생동물의 사육 및 양봉, 양잠 기타 관련 활동은 언제나 농림으로 간주) - 토지경작, 조림, 가축 사육 및 농림기업가 활동에 관한 모든 작업은 생물 이외의 힘으로 작동하는 기계나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직접 작동하지 않는 기계 이용 시 또는 토지관리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농림작업으로 간주; - 농업제품의 가공 또는 양도 목적의 관련 작업, 보충적 작업 또는 보수작업이 농림기업의 소유지에서 이루어지거나 농림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 채소밭 및 정원의 경작작업
임업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등을 이용한 농림작업, 식림, 파종, 벌목 등 모든 삼림재배작업 등; - 식물재배 등
오직 가정적 목적의 노동활동	
오직 가정적 목적으로 하는 노동활동은 가족용 또는 개인용 자동차 운전수만 보험의무 있음. 단 가족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그 수행하는 작업이 65년 기본규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유상으로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됨(1971.12.31. 대통령령 1403호 1조 1항 e호)

이상의 이탈리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업무는 일부 서비스 부문 작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체로 공업부문과 농림어업부문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28가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은행업이나 보험업은 적용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여기에 종사하는 종속근로자도 산재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²⁶³⁾ 그러나 2000년 위임법 38호 제1절 전국산재직업병보험공사의 보험료에 관한 규정 제1조(사업의 적용범위) 제1항에서 65년 기본규정 제1조(공업부문에서 보호 활동에 관한 규정)……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다음 4가지 사업은 보험료와의 관계에서 기본규정 제1장에서 정한 공업사업이라 한다.”고 규정하면서 a)~d)까지 4가지 사업을 열거하고, 동조 제2항에서 “기본규정 제1조에서 정한 보호활동(적용대상업무)은 제1항에서 정한 4가지 사업에 관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4가지 사업은 다음과 같다.

- a) 제조~~ 관해서는 공업이라 한다.
- b) 1985. 8. 8. 법률 443호(수공업자에 관한 법) 및 ~~~ 관해서는 수공업이라 한다.
- c) 여행업을 포함한 상업,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의 생산중개 및 제공에 관한 활동 및 이상(以上)을 보조하는 관련활동에 관해서는 서비스업이라 한다.
- d) a), b) 및 c)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 ~~~~관해서는 그 밖의 활동이라 한다.

이상의 규정을 해석하면, 상기 4가지 사업은 보험료와의 관계, 예컨대 보험료의 산정 등에 관해서는 기본규정 제1장에서 정한 공업사업으로 보고 제2장의 농업부문의 보험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상기 4가지 사업은 적용대상 업무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해야 하므로 적용대상업무에 포함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은행업과 보험업을 포함한 서비스업도 적용대상업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263) 근로복지공단, 앞의 자료, 4쪽.

2) 적용대상주체

적용대상주체, 즉 피보험자(또는 수급인)범위는 65년 기본규정 제3절 피보험자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에 한한다. 이와 관련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앞서 언급한 제1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에 관해 “……기구 또는 장치에 종사하는 자……작업장소에서 고용되는 모든 자”라고 규정하여 피보험자의 범위를 종속근로자에 한정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탈리아 산재보험제도는 종속근로자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자영업자 등 나머지 일하는 사람을 예외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모든 일하는 자를 동등하게 적용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주체는 65년 기본규정 제1장 제4조 및 제2장 농업부문 제205조, 그리고 새롭게 적용대상주체를 확대한 특별법상 관련 규정을 기초로 정리하면 다음 [표 3-44]와 같다.

[표 3-44] 이탈리아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주체의²⁶⁴⁾

1. 종속근로자	타인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보수(형태는 상관없음)를 받고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자
2. 감독자	부하직원인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적으로 영구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그 임무상 부하직원인 근로자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자
3. 수공업 직인(장인) ²⁶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공업기업에서 상시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직인. 고유의 직인활동에 관계된 위험만 보험의 대상이 됨(판례에 의하면 기업의 조직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에 관계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음. 예) 직인이 고객이 있는 곳에 그 지시명령을 얻기 위해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님) - 관계기업에서 상시육체노동을 제공하며, 기본규정 제1장 보험업무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없는 수공업 직인에 대해서는 1966.1.1.부터 기본규정 적용(기본규정 제1장 제199조 2항)
4. 견습근로자	법률에서 견습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는 자
5. 교원 또는 학생	보험대상은 교육활동 일반에 관한 위험이 아니라 전문기술적 실험의 실시와 작업실습에 관련된 위험. 직업교육, 재교육, (기업내 것도 포함) 직업훈련코스 또는 (그 설립방법과 운영에 관계없이) 현장에서의 교습소강사 및 수강생 및 조수, 용무원 및 기술적·실무적 또는 작업에 관한 실험 또는 실습에 종사하는 담당자

264) 근로복지공단, 앞의 자료, 7-11쪽.

265) 직인(職人, 영어: journeyman, 독일어: Geselle)은 서양 전통 수공업 체계에서, 도제 과정을 마친 숙련공을 말

6. 사용자의 배우자, 자녀 및 양자, 그 외의 친족, 인족(姻族), 준양자, 피탁아	보수의 유무에 관계 없이 육체노동 및 비육체노동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제공하는 자
7. 협동조합의 조합원	협동조합 그 외의 모든 회사(명칭, 설립방법, 운영방법과 상관없이 사실상의 것도 포함)의 사원으로 보수 유무에 상관없이 육체노동 및 비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자
8. 병원, 시설 등에 수용된 자 및 그 감독자	요양소, 호스피스, 병원, 부조복지시설에 수용된 자로 이러한 시설의 내부업무 또는 작업활동에 관해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작업의 하나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업무활동의 지도자 또는 감독자
9. 형무소 등에 수용된 자	범죄예방 또는 형벌에 관한 기관 또는 시설에 수감된 자로 이러한 기관 또는 시설의 내부업무 또는 직업활동에 관해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작업의 하나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업무활동의 지도자 또는 감독자
10. 세일즈맨, 외교관 및 소비세징세자	직원적 고용관계에 있어도 그 직무의 수행에 관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상시 이용하는 자는 피보험자에 포함됨(판결에 따르면 자동차를 상시 이용하면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예컨대 약품의 광고자도 피보험자에 포함)
11. 사제, 수도사, 수도녀	사제, 수도사 및 수도녀로서 교황청과 이탈리아 사이에 체결된 정교 조약에서 규정하는 교회단체, 종교단체 및 교회와는 다른 제3자에 종속하여 육체노동 또는 비육체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 자
12. 선박 또는 인선의 승조원	해운업 및 어업에 관해서는 (유람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포함) 선박 또는 인선의 승무원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보수를 받고 있는 자.
13. 가내근로자	가내근로자의 정의는 가내근로자에 대한 보험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1973년 법률 877호 1조 적용. 동법 제2조는 유해물질을 이용하는 활동에 대한 가내노동 금지, 사업의 재구축계획 등에 의해 해고와 휴업조치를 취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조치로부터 1년간은 가내노동의 이용 금지, 다만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가내노동을 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
14. 철도 및 시내전차의 역, 정류소 및 건물목에서의 청부인(assuntore)	1965년 2월 3일 법 14호 9조에 의해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이 인정되었으며, 보험의무는 위탁기업에 부여됨
15. 가사업무종사 근로자, 정리·청소업무종사 근로자	1971.12.31. 대통령령 1403호에 의해 피보험자에 포함되었으며, 사용자의 밑에서 유상의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요건

한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일감을 받는다. 직인이 한 곳에 정착하여 자기 가게를 내고 제자로 도제를 거느리게 되면 장인이 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7%81%EC%9D%B8>(2018.9.18. 검색)

16. 외국근무 이탈리아 근로자	1987.10.3. 법398호에서 사용자가 이탈리아인이든 외국인인든 상관없이 이탈리아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과 조약이 없는 EU권 외의 국가에서 근무하는 이탈리아인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
17. 외국인근로자	EU권 외 근로자에 대해 1986. 12. 30. 법943호에서 이탈리아 합법 거주자로서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해 이탈리아인 근로자와 균등한 대우와 완전하게 평등한 권리 보장
18. 가사종사자	주거 내에서 건강의 보호 및 가정내 재해보험의 창설에 관한 법률(1999.12.3. 법률493호)에 따라 관습적인 상태로서 가사노동을 하는 18이상 65세 이하의 자(제7조 3항) ²⁶⁶⁾
19. 관리직	사무직원증의 상급관리직으로서 65년 기본규정 제1조의 보호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2000년 입법명령 제4조) ²⁶⁷⁾
20. 준종속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속성이 있는 청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65년 기본규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일시적이지 않은 자기의 직무수행을 위해 스스로 직접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 준종속근로자란 ① 특정한 자와 거래하고 있지만 종속되어 있지 않고, ② 관계가 장기인 동시에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③ 노동하는 측에는 조직적인 수단의 소유는 필요하지 않고, ④ 정기 또는 사전에 정한 금액의 보수가 지급되고, ⑤ 법적 기초가 당사자가 체결한 서면에 의해 명확한 계약에 있고, ⑥ 본질적으로 직업적 또는 예술적인 내용을 갖는다는 특징을 가진 자(예, 감사·회계사, 변호사·세무사; 이사(집행 임원이 아닌 자), 단체·위원회 회원; 신문·잡지 기고자; 공유물 관리자; 교원(종속노동이 아닌 자); 기타 협동적이고 연속적인 노동관계(2000년 입법명령 제5조)²⁶⁸⁾
21. 직업 스포츠선수	기본규정 9조의 사용자에 종속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직업적 스포츠 선수(선수, 코치, 감독, 경기준비자가 해당됨)
22. 농업 종사자	① 농림사업 종사하는 상근 또는 임시 근로자; ② 지주, 반소작농, 소작인 및 그 부인 및 자녀로 각 기업에서 상시 육체노동 제공자; ③ 농림사업의 작업 감독자; ④ 농림사업 경영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집단도지농(賭地農)(65년 기본규정 205조)

266) 가사종사자의 피보험자 요건은 I) 2001.3.1.시점에서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ii) 임시적이 아니라 종속성 없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내 활동으로 가족구성원 및 가족이 체재하는 가정의 보살핌을 목적으로 한 것; iii)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있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을 것 세 가지이다. 보험사고는 가사노동을 원인으로 한 재해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33%이상의 영구적 노동불능이 발생한 것이며, 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되고 보험료는 정액으로 2만 5천 리라(약 15,000원)이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급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이 900만 리라 이하인 자, 연간수입이 1800만 리라 이하 가족의 일원인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 부담함. 근로복지공단, 앞의 자료, 36쪽.

267) 근로복지공단, 앞의 자료, 39쪽.

268) 근로복지공단, 앞의 자료, 39-40쪽.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주체	
X선 및 방사선 노출 의사	X선 및 방사선에 노출된 의사의 강제보험에 관한 규정(1958.2.20. 법률93 및 1960.8.4. 대통령령 1055호)
소규모 어업종사자	해상 및 내수상의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를 위한 규정 (1958.3.31. 법률 250호)
국가행정종사 피용자	국가의 행정에 종사하는 피용자를 위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1939.1.19. 및 1940.9.27.의 부령)
국유철도 근로자	국유철도의 근로자에 관한 보상과 연금의 지급 및 그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1938.3.10. 칙령 1054호 및 1938.9.7. 칙령 1655호)
국가 우편사업 종사자	국가의 우편사업 종사자를 위한 재해보상 규정(1938.6.16. 칙령 1275호 및 1955.12.21. 법률 1350호)
국영전화사업 종사자	국영전화사업의 종사자 재해보상 규정(1938.6.16. 칙령 1274호 및 1955.12.21. 법률 1350호)
※ 국가공무원 및 국영기업의 근로자, 해운업 및 어업 근로자 및 수감자 (이하 국가공무원 등)	- 기본규정 제190조에서 기본규정 제1장의 규정이 좌측의 국가공무원 등 및 제127조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반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 등도 산재보험가입대상인 것으로 보임 ²⁶⁹⁾

이상의 적용대상주체 중 장인, 자영업어부, 자영업농림업 종사자 및 그 가족종사자 정도가 자영업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장인이 운영하는 장인기업의 경우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장인기업도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²⁷⁰⁾

준종속 노동자의 경우 이미 그 명칭에서 보듯이 자영업자보다는 종속노동자에 가까운 자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서 첫째,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특고노동자처럼 고용주(3분의 2 분담)와 준종속노동자(3분의 1)가 분담하도록 하면서 그 비율도 고용주가 높다는 점, 둘째, 준종속노동자에게 업무(작업)을 의뢰한 고용주가

269) 기본규정 제1장에서 규율하는 보험은 전국산재보험공사(INAIL)에서 운영한다. 다만, 해운업 및 어업 종사자 및 선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선상무선통신원(별도의 금고(Casse)에서 보험을 실시), 정보통신부의 독립기업 근로자 및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수감자는 전국산재보험공사(INAIL)에서 보험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함(제6절 보험기관 제127조).

270) 2001년 법률 제57호 제13조에 의해서 2001년 4월 1일부터 다수의 회원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Srl)에 장인 자격을 인정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장인기업도 산재보험적용 대상이 되었다(1985년 8월 8일자 법률 제443호 장인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제5조의 수정).

<https://www.inps.it/nuovoportaleinps/default.aspx?itemdir=43256> (2018.10.16. 검색)

기본규정에서 정한 보험 관련 사업주의 의무를 전부 부담토록 하고 있다는 점, 셋째, 준종속근로자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보험료 부과 기초가 되는 것은 실제 수령한 임금으로 한다는 점²⁷¹⁾ 등을 제시할 수 있다.

(3) 가입방식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준종속노동자, 사제 등 법령에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사람은 모두 강제가입 된다. 특히 비임금근로자 전체에 대해 예외없이 강제 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4) 보험료

기본규정 제27조에서 “보험비용은 사용자만 부담한다.”고 명시하여 종속근로자의 보험료 전부를 사용자가 부담할 것을 밝히고 있다. 보험료는 1년 간 또는 해당보험료의 납부 대응기간에 사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수액에 기초하여 1연도 또는 이보다 단기의 작업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보험기관(INAIL)에 선불로 납부해야 해야 하며, 보험료 산정기초 결정 시 사용자가 지급한 실제 지급보수액을 사용한다(기본규정 제28조). 여기서 “보수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에 종속되어 현금이나 현물로 모든 형태의 공제액을 포함해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제29조) 평균급여 또는 간주급여가 규정되어 있는 직종은 이를 보수의 결정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30조), 이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요율표 및 그 적용방법은 전국산재보험공사(INAIL)의 결의에 기초하여 노동·사회보장장관 명령에 의해 결정된다.²⁷²⁾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정 역시 동일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예컨대 장인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는 매년 장관령으로 정해지는데, 2018년 현재 1일 최저 소득은 48.20유로이고, 1년은 1일치에 300을 곱한 14,460유로이다.²⁷³⁾ 위험등급에

271) 65년 기본규정 제5조.

272) 65년 기본규정 제40조 제1항.

273) 신수정, 앞의 자료, 103쪽.

따른 장인의 최소보험료는 [표 3-45]와 같다.

[표 3-45] 장인의 최소보험료

위험등급 ²⁷⁴⁾	연간 최소 보험료
	유로
1	81.90(한화 약 106,000원)
2	170.90
3	335.90
4	525.30
5	736.70(한화 955,000원)
6	946.30
7	1,162.70
8	1,278.30
9	1,756.10(한화 2,280,000원)

자료: 신수정, 앞의 자료, 103쪽.

최저 위험등급인 1등급의 연간 최소 보험료는 81.90(한화 약 106,000원)유로로 이를 월 보험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83유로(한화 약 8,833원)로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최고 위험등급인 9등급의 연간 최소 보험료는 1,756.10(한화 2,280,000원)유로로 이를 월 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146.3유로(한화 약 190,000원)로 비교적 높다할 것이다.

(5) 보험급여의 대상 및 급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재해만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데, 산재로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65년 기본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험은 노동 할 때에 (in occasione di lavoro) 급격한 원인(causa violenta)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이나 절대적 또는 부분적인 영구적 노동불능 또는 3일 이상의 결근을 초래하는 절대적인 일시적

274) 장인의 보험료를 위험등급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업종별로 위험등급이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노동불능이 발생할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²⁷⁵⁾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급격한 원인’(즉 급속하고 시간적으로 축약된 작용에 의해), ‘노동할 때에’(광의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판례는 재해발생의 ‘위험’이 노동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함), 그리고 ‘노동불능’(근로자의 노동능력을 감퇴 또는 상실시키는 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함) 3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²⁷⁶⁾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급여에 대해서도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업부문의 급여규정이 적용된다.²⁷⁷⁾ 공업부문의 구체적인 급여의 종류는 ① 일시적 노동불능에 대한 휴업급여; ② 영구적 노동불능에 대한 연금; ③ 신체적 도움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한 개호수당; ④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 및 일시금; ⑤ 진료를 포함한 내·외과적 요양; ⑥ 보장구의 제공이다.²⁷⁸⁾

(6) 자영업자 산재보험 운영 현황

이탈리아의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현황, 산재발생 건수, 보험급여현황 등 관련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산업 및 연도별 산재발생 건수에 관한 통계만 소개한다.

[표 3-46]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 산업 산재발생 총 건수는 414,794건이며, 이중 자영업자와 관련된 ‘가족 경영 등의 독립노동’의 경우 40건으로 전체 산재발생 건수의 0.01%에 불과하다.²⁷⁹⁾

[표 3-46] 이탈리아의 산업 및 연도별 산재발생 건수

275) 65년 기본규정 제2조, 제210조.

276) 근로복지공단, 앞의 자료, 12-15쪽.

277) 65년 기본규정 제212조.

278) 65년 기본규정 제66조.

279) [표 3-46]에서 ‘가족경영 등의 독립노동’항목의 산재발생 건수가 앞서 살펴본 이탈리아산재보험제도상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 전체 중 산재발생 건수로 보기에 그 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한 통계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밝힌다.

분 야	2012	2013	2014	2015	2016
농 업	3,729 (0.75%)	3,373 (0.75%)	3,164 (0.74%)	2,837 (0.69%)	2,603 (0.63%)
광 업	724 (0.14%)	637 (0.14%)	554 (0.13%)	469 (0.11%)	504 (0.12%)
산 업	96,572 (19.33%)	85,889 (19.12%)	80,923 (18.90%)	76,755 (18.72%)	73,924 (17.82%)
전기, 가스, 증기사업	1,348 (0.27%)	1,107 (0.25%)	1,111 (0.26%)	987 (0.24%)	927 (0.22%)
상하수도, 재활용사업	10,563 (2.11%)	9,966 (2.22%)	9,559 (2.23%)	8,999 (2.19%)	8,831 (2.14%)
건설업	52,394 (10.49%)	43,985 (9.79%)	39,129 (9.14%)	36,126 (8.81%)	33,428 (8.06%)
자동차매매 및 수리업	47,344 (9.48%)	42,303 (9.42%)	39,761 (9.29%)	37,734 (9.20%)	36,682 (8.84%)
운송 및 창고업	41,314 (9.48%)	38,148 (8.49%)	36,626 (8.55%)	33,944 (8.28%)	32,457 (7.82%)
숙박 및 접객업	24,038 (4.81%)	21,178 (4.71%)	20,811 (4.86%)	19,344 (4.72%)	18,911 (4.56%)
정보통신업	3,170 (0.63%)	2,533 (0.56%)	2,657 (0.62%)	2,411 (0.59%)	2,345 (0.57%)
재정 및 보험업	2,619 (0.52%)	2,058 (0.46%)	1,893 (0.44%)	1,805 (0.44%)	1,717 (0.41%)
부동산업	3,230 (0.65%)	2,881 (0.64%)	2,814 (0.66%)	2,618 (0.64%)	2,488 (0.60%)
전문, 과학기술업	6,283 (1.26%)	6,148 (1.37%)	5,744 (1.34%)	5,467 (1.33%)	5,708 (1.38%)
여행 및 기업지원업무	23,787 (4.76%)	22,400 (4.99%)	21,622 (5.05%)	20,243 (4.94%)	19,482 (4.70%)
공공행정, 국방업무	17,871 (3.58%)	16,131 (3.59%)	14,891 (3.48%)	13,732 (3.35%)	11,753 (2.83%)

분 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업무	4,403 (0.88%)	4,130 (0.92%)	4,427 (1.03%)	4,236 (1.03%)	4,200 (1.01%)
의료 및 사회보험업	37,746 (7.56%)	35,181 (7.83%)	35,801 (8.36%)	33,319 (8.12%)	29,994 (7.23%)
문화, 체육, 예술업	4,247 (0.85%)	3,804 (0.85%)	3,675 (0.86%)	3,416 (0.83%)	3,465 (0.84%)
기타 서비스업	6,457 (1.29%)	5,638 (1.26%)	5,569 (1.30%)	5,169 (1.26%)	4,840 (1.17%)
가족경영 등의 독립 노동	66 (0.01%)	44 (0.01%)	47 (0.01%)	48 (0.01%)	40 (0.01%)
그 외 단체 및 기관	71 (0.01%)	75 (0.02%)	57 (0.01%)	78 (0.02%)	80 (0.02%)
정해지지 않음	111,573 (22.33%)	101,554 (22.61%)	97,359 (22.74%)	100,374 (24.47%)	120,415 (29.03%)
합 계	499,549 (100.0%)	499,163 (100.0%)	428,194 (100.0%)	410,111 (100.0%)	414,794 (100.0%)

자료: INAIL, Relazione annuale 2016, Appendice statistica, 2017, p.11., 신수정, 앞의 자료, 87쪽에서 재인용.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우선 자영업자의 개념정의와 관련 이탈리아의 경우 산재보험법령에는 없지만 민법에서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노동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두고 있는데, 이중 독립노동자의 개념이 자영업자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영업자에는 독립계약자, 전문직, 소규모 사업자, 준종속 노동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중 준종속 노동자는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중간지대의 취업자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탈리아 자영업자의 취업자 중 비율은 약 21%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산재보험 관련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체계 및 입법목적

이탈리아 산재보험법은 독일 산재보험법과 유사하게 국민재해보험제도 형식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개념을 사용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호 대상에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비임금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 적용범위

이탈리아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은 작업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작업과 종사자의 유형을 법정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고용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수공업직인(장인), 농림업종사자, 소규모 어업종사자 등 특정 업종 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공업직인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규모가 유사하나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주로 수공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좁다할 것이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탈리아 산재보험법상 적용범위는 크게 참고할 사례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될 수 있는 준종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산재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가입방식

이탈리아 산재보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보험적용대상 자영업자(준종속 노동자 포함) 또한 의무보험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임금근로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보험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법령에서 보험적용대상 작업 및 종사자로 규정되면 이들 작업 및 종사자의 재해위험도는 높다고 판단된 것이므로 법령의

무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탈리아 사례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의가입방식을 취하는데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4) 보험료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다. 장인 등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장인의 위험등급별 연간 최소 보험료에서 최저 1등급의 연간보험료는 81.90유로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편, 준종속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가 2/3를, 준종속 노동자가 1/3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용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제5절 호 주

1. 개 관

호주는 총 인구 약 2200만명으로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으며, 실업률이 낮은 편이다(2017년 11월 기준 5.4%). 일자리를 구하기가 비교적 쉽고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10%정도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여부는 호주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²⁸⁰⁾

호주는 현재 6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노동재해보험제도가 이들 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퀸즈랜드(Queensland), 서호주(Western Australia), 남호주(South Australia), 태즈

280) 정소영, 호주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 (3), 한국법제연구원, 2018.7.24., 12-13쪽.

매니아(Tasmania) 등 6개 주의 노동재해보험제도와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호주 수도자치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연방정부(Commonwealth), 해상근로자(Seafarers), 군인의 노동재해보험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들 노동재해보험제도 중에서 뉴사우스 웨일스, 빅토리아 2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서호주, 남호주(SA), 퀸즈랜드, 태즈매니아, 노던 테리토리, 호주수도자치구(ACT)에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²⁸¹⁾ 이하에서는 자영업자 노동재해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주들 중 남호주의 산재보험제도 등 일부 주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한다.

2. 남호주의 자영업자 노동재해보험제도

(1) 법체계 및 입법목적

남호주의 산재보험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은 “2014년 취업복귀법(Return to Work Act 2014)”이다. 이 법의 기본목적은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취업자(workers)를 지원하는 제도(scheme)를 만드는 것에 두고, 구체적으로 업무상 건강이익의 실현, 재해로부터의 회복, 업무복귀 등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²⁸²⁾ 이외에 부수적인 입법목적으로 일터에서 재해를 당한 취업자(workers)가 고품질의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 고용주(employers)의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부담되도록 하여 노동재해의 충격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것, 고용주(employers)의 이익과 취업자(workers)의 이익의 합리적인 균형 제공, 주(State)와 지역사회에 대한 노동재해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 노동재해 발생의 감소를 위한 활동의 지원,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하고 최대한 적대

281) <https://www.finder.com.au/income-protection-or-workers-compensation-for-sole-traders>(2018.10. 12. 검색)

282) 3—Objects of Act

- (1) The object of this Act is to establish a scheme that supports workers who suffer injuries at work and that has as its primary objective to provide early intervention in respect of claims so as to ensure that action is taken to support workers—
- (a) in realising the health benefits of work; and
 - (b) in recovering from injury; and
 - (c) in returning to work (including, if required, after retraining); and
 - (d) in being restored to the community when return to work is not possible.

적인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취업자(workers)가 작업중 재해를 당했을 때의 분쟁을 감소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²⁸³⁾

이러한 입법목적에서 두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법의 주요 인적 적용대상을 종속노동자(employee)에 한정하지 않기 위해 종속노동자보다 더 넓은 개념인 취업자(worker)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법 제4조 용어의 해석(Interpretation) 중 ‘고용(employment)’의 정의에 노동계약(a contract of service)에 따라 행해지는 노동(work); 그리고 (b) 공사(The Corporation)가 이 법의 보호를 확대한 자영업자의 노동(the work of a self-employed person)²⁸⁴⁾을 포함하여 고용의 의미를 자영업자의 노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 법의 입법목적으로 전통적인 재해보험제도의 입법목적(재해근로자보상과 재활 업무 등)에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재해의 충격이 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 노동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까지 입법목적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호주의 경우 노동자재해보험을 전통적인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문제를 넘어 주와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경제적 문제, 사회안전망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이러한 인식하에서 자영업자 또한 재해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283) 3—Objects of Act(2) In connection with subsection (1), the other objectives that apply with respect to this Act are—

- (a) to ensure that workers who suffer injuries at work receive high-quality service, are treated with dignity, and are supported financially; and
- (b) to ensure that employers' costs are contained within reasonable limits so that the impact of work injuries on South Australian businesses is minimised; and
- (c) to provide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workers and the interests of employers; and
- (d) to reduce the overall social and economic cost of work injuries to the State and to the community; and
- (e) to support activities that are aimed at reducing the incidence of work injuries; and
- (f) to reduce disputation when workers are injured at work by improving the quality of decision-making and by reducing adversarial contests to the greatest possible extent.

284) South Australia, Return to Work Act 2014, 4—Interpretation, employment includes—(a) work done under a contract of service; and (b) the work of a self-employed person to whom the Corporation has extended the protection of this Act; and 이하 생략.

(2) 자영업자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및 적용요건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4년 취업복귀법에 따르면 남호주에서 일상적으로 일을 하거나 남호주에 근거하고 있는 취업자(workers)를 고용한 기업주는 해당 취업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ReturnToWorkSA에 노동재해보험(work injury insurance cover)에 대해 신고해야 하고, 고용한 취업자에게 지급한 보수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예외적으로 2018-19년 회계연도에 총 12,809 달러 미만을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기업주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²⁸⁵⁾ 다만, 대규모 회사의 경우 ReturnToWorkSA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자체적인 노동재해보험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사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고용규모 등의 법정 요건을 검토하여 승인한다(자체적인 노재보험을 운영하는 기업을 Self-insured employer라고 부른다).²⁸⁶⁾

자영업자의 노동재해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자영취업자(self-employed worker) 또는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들 자영취업자는 “공사(The Corporation)²⁸⁷⁾가 175조에 따라 이 법의 보호를 확대한 사람”²⁸⁸⁾으로서 공사는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s)의 신청에 따라 이법(또는 이 법의 특정부분의)의 보호를 자영업자들에게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은 공사가 정한 제한 조건 등에 따라 승인될 수 있다.²⁸⁹⁾

285) <https://www.rtsa.com/insurance/insurance-with-us/register> (2018. 10. 10. 검색)

286) South Australia, Return to Work Act 2014, 129—Self-insured employers

(1) Subject to this section, an employer or a group of employers may apply to the Corporation for registration as a self-insured employer or as a group of self-insured employers.

287)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남호주 노동복귀공사, 즉 ReturnToWorkSA를 의미한다.(Corporation means the Return to Work Corporation of South Australia)

288) South Australia, Return to Work Act 2014, 4—Interpretation, self-employed worker means a person to whom the Corporation has extended the protection of this Act pursuant to section 175;

289) South Australia, Return to Work Act 2014, 175—Extension of the application of Act to self-employed persons

(1) The Corporation may, on the application of a person who is self-employed, extend to that person the protection of this Act (or of specified parts of this Act).

(2)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may be granted by the Corporation subject to such conditions and limitations as the Corporation thinks fit and any such condition or limitation will, to the extent of any inconsistency, prevail ov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https://www.legislation.sa.gov.au/LZ/V/A/2014/RETURN%20TO%20WORK%20ACT%202014_16/2014.16.UN.PDF(2018.10.08.검색)

이러한 원칙하에 노동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복귀법에서는 노동재해보험의 신고대상이 되는 취업자(definition of a worker)는 (a) 노동계약(contract of service)에 따라 업무를 완성하는 사람[종속노동자(employee) 여부와 관계없이]; (b) 부록 1에서 취업자라고 규정한 사람; (c) 자영취업자(a self-employed worker), 그리고 前 취업자 및 이미 고인이 된 취업자의 합법적인 개인 대표를 포함한다.²⁹⁰⁾ 이들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취업복귀법상 노동재해보험의 인적 적용대상은 통상적인 종속노동자(employee)뿐만 아니라 비종속취업자, 법령에서 취업자로 간주하는 사람, 자영취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취업복귀법상 ‘노동계약(a contract of service)’이란 (a) 다른 한 사람(고용주)이 한 사람의 취업자를 고용하는 계약 또는 (b) 한 사람(취업자)이 기술된 업무 또는 기술된 유형의 업무를 다른 한 사람을 위해 하기로 하는 하나의 계약, 약정 또는 양해각서(이하 계약 등), 또는 (c) 견습생계약 또는 (d) 한 사람(취업자)이 다른 한 사람(고용주)로부터 거래(trade) 또는 직업에서의 재직교육훈련을 받는 내용의 계약 등 또는 한 사람(취업자)이 고용주가 보수를 지급하는 교육훈련 기간에 참여하겠다는 계약 등을 의미한다.²⁹¹⁾ 이중 (a)는 통상적인 노동계약을 의미하고, (b)는 일종의 도급계약 관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규정한 계약으로 이해된다. 이를 종합하면 취업복귀법은 ‘노동계약(contract of service)’의 정의를 통상적인 고용주와 종속노동자 간의 노동계약보다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종속노동자가 아닌 자영계약자(Self-employed contractors)와 기타의 사람들에게까지 보험을 확대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90) South Australia, Return to Work Act 2014, 4-Interpretation, worker means -

- (a) a person by whom work is done under a contract of service (whether or not as an employee);
- (b) a person who is a worker by virtue of Schedule 1;
- (c) a self-employed worker, and includes a former worker and the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of a deceased worker;

291) South Australia, Return to Work Act 2014, 4-Interpretation, contract of service means -

- (a) a contract under which 1 person (the worker) is employed by another (the employer); or
- (b) a contract, arrangement or understanding under which 1 person (the worker) works for another in prescribed work or work of a prescribed class; or
- (c) a contract of apprenticeship; or
- (d) a contract, arrangement or understanding under which a person (the worker) -
 - (i) receives on-the-job training in a trade or vocation from another (the employer); and
 - (ii) is during the period of that training remunerated by the employer;

- 건설 공사(buliding work)(벽 또는 바닥 타일작업 제외)
- 청소작업(cleaning work),
- 택시 또는 유사한 자동차의 운전
- 상업적 용도가 아닌 차량을 운전해 주거나 태워주고 수수료 또는 보상을 받는 일
- 연예인으로서의 공연
- 재택근무자에게 적용되는 보상 또는 산업계약(an award or industrial agreement)에 의해 재택근무자의 작업이 통제되는 경우의 재택근무자(outworkers)로서 업무를 수행
- 일부 성직자
- 허가받은 기수가 수행 한 승마 작업.

그러나 앞서 취업복지법 제175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업종의, 모든 조직형태의 자영업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즉 자영계약자와 기타의 사람들만 취업자로 간주(deemed workers)하여 취업복지법상 보험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사(ReturnToWorkSA)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적용대상이 되는 자영계약자와 기타의 사람들은 다음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안별로(case by case basis) 판단된다.²⁹²⁾

사업주가 상기의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즉 자영계약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주는 자영계약자의 고용주로 간주되어 노동재해보험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영계약자가 보험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예컨대 건설공사 분야에서 자영계약자가 보험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자영계약자가 자기 계산으로 작업을 할 것²⁹³⁾, (2) 사업주(도급인)의 거래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작업을 할 것, (3) 최소한 계약상 작업을 개인적으로 할 것, (4) 자영계약자가 계약상 작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취업자(간주취업자를 포함)를 고용한 경우가 아닐 것²⁹⁴⁾, (5) 자영계약자가 공급한 재료의 가치가 전체 계약가치의 4% 또는 123 달러를 초

292) <https://www.rtsa.com/insurance/insurance-with-us/register> (2018. 10. 10. 검색)

293) 즉 자영계약자가 모회사(proprietary limited company)를 위해 작업을 하거나 모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작업을 하는 경우, 즉 타인을 위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닐 것을 말한다.

294) 사업주(도급인)와 보험적용을 받는 자영계약자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2014년 취업복지법상 고용주로, 자영계약자를 취업자로 간주하여 노동재해보험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자영계약자는 이 법에 따른 고용주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South Australia, Return to Work Regulations 2015 under the Return to Work Act 2014(이하 Regulation이라함) 5 (8) of the Return to Work Regulations 2015 (the Regulations)

과하지 않을 것(둘 중 더 큰 금액 적용), (6) 자영업계약자가 작업목적으로 소유 또는 빌린 장비의 평가가액이 규정된 가액²⁹⁵⁾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청소작업의 경우 (5)의 재료 가액의 기준이 약간 다른 점, (6)의 조건이 없다는 점만 빼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²⁹⁶⁾ 택시 또는 유사한 자동차 운전업 또한 1인에 의해 작업이 수행될 것 등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다.²⁹⁷⁾

이상의 기준을 통해 볼 때 남호주의 취업복귀법상 보험적용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 청소작업, 택시 등 자동차 운전업, 연예인, 재택근무자 등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소규모 1인 자영업계약자 및 성직자, 승마기수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자영업계약자는 독립자영업자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와 비슷한 유형의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독립자영업자의 노재보험 적용여부가 불분명하다. ‘취업복귀법’에서 자영업자 (self-employed person)의 신청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공사가 확대적용

states: For the purposes of section 4(4) of the Act, a prescribed circumstance is where a person (the principal) contracts with another person (the contractor) who is not registered as an employer under the Act.). 이처럼 보험적용을 받는 자영업계약자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계약자임을 사업주가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사업주가 자신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계약자에게 RTWSA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RTWSA에 등록되지 않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계약자를 고용하면 그 자영업계약자가 고용한 취업자에 대한 고용주로 간주되어 노동재해보험 가입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Section 4(4) of the Act - states: Where in a prescribed industry or in prescribed circumstances a person (the principal) contracts with another person (the contractor) for the performance by the contractor of work undertaken by the principal, the principal will,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e taken to be the employer of workers employed by the contractor.]

295) Regulation 5(1)(a)(v) of the Return to Work Regulations 2015에 따른 장비의 평가가액표는 다음과 같다. Building work (other than wall or floor tiling), A guide to deemed workers, <https://www.rtwsa.com/insurance/insurance-with-us/premium-calculations/who-is-a-worker> (2018.10.10. 검색)

연도	가액
2017	\$19,437
2016	\$19,204
2015	\$18,988
2014	\$18,593
2013	\$18,235

296) Cleaning work, A guide to deemed workers, <https://www.rtwsa.com/insurance/insurance-with-us/premium-calculations/who-is-a-worker> (2018.10.10. 검색)

297) Taxi drivers, A guide to deemed workers, <https://www.rtwsa.com/insurance/insurance-with-us/premium-calculations/who-is-a-worker> (2018.10.10. 검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기 언급한 일부 1인 자영업도급계약자 이외에 확대적용되는 자영업자를 취업복지법의 Regulation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일부 자영업계약자만 보험적용이 되고 독립자영업자의 경우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두고 이를 보험관리기구에서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자영업자 재해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보험료: 자영업계약자를 중심으로

자영업계약자의 보험료는 이들 자영업계약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고용주로 자영업계약자를 사실상 임금근로자로 간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영업계약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전체 산업분류에 따른 세부업종별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건설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계약자의 경우 세부 작업별로 지급 받은 보수의 100달러당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예컨대 100달러당 도장 및 인테리어 작업은 3.892%, 냉난방 작업은 2.691%, 지붕잇기 작업(Roofing Services)은 6.555% 등이다. 택시 등 자동차 운전업은 3.362%, 공연예술운영(Performing Arts Operation)은 1.362%이다.²⁹⁸⁾ 한편, 남호주 노동재해보험 가입자 전체 평균 보험요율은 2018-19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취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약 1.7%(1.8%에서 감소됨)라고 한다.

3. 그밖의 주의 자영업자 노동재해보험제도

퀸즈랜드 주의 경우, “퀸즈랜드 취업자 보상과 재활 법(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과 이 법의 Regulation²⁹⁹⁾ 등에서 노동재해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298) ReturnToWorkSA, Industry premium rates 2018-19, <https://www.rtwsa.com/insurance/insurance-with-us/premium-calculations/industry-classifications-and-rates> (2018.10.12. 검색)

299)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Regulation 2014”이며 2014년 개정본이 가장 최신이다.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html/inforce/current/sl-2014-0189#sec.3> (2018. 10. 30. 최종검색). 이러한 법률과 Regulation 이외에 Guide가 있으며 이 가이드에는 세부 적용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법의 적용대상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이다. 후자에는 자원봉사자들 등(Volunteers ect.), 지역사회봉사 등을 하는 사람(Persons performing community service etc.), 학생(Students), 자격 있는 사람들(적격자: Eligible persons), 기타 사람들(Other persons), 사망한 취업자(a deceased worker)의 배우자·가족 및 부양가족(Spouses, members of the family and dependants) 등이 포함된다. 이중 ‘적격자’를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급자(a contractor), 개인자영업자(a self-employed individual), 법인기업의 이사(a director of a corporation), 수탁자(a trustee), 파트너십의 구성원(a member of a partnership)이 포함된다.³⁰⁰⁾ 이들 비임금근로자들은 州 재해보험운영기관인 ‘WorkCover’와의 보험가입계약을 통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³⁰¹⁾

퀸즈랜드 주에서 노재보험운영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약 162,000 명의 고용주(employer)가 노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었고, 2017-18년 동안에는 취소된 정책과 새로운 정책의 변동에 의해 약 169,000명의 고용주가 적용대상이 되었다.³⁰²⁾

[표 3-47]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재해보험청구 수 통계인데, 대다수의 청구(99.6%)는 취업자(workers), 즉 ‘고용된 사람들(피고용자)’을 위한 청구이며, 자영업자의 청구 수는 수십 건에 불과해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할 것이다. 그리고 전년대비 전체 청구률은 1.6%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7-2018년에 ‘고용된 사람들’의 수가 4%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청구률은 5.5%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³⁰³⁾

300) 관련 법조문: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Division 3 Persons entitled to compensation other than workers, Subdivision 4 Eligible persons, 23 Meaning of eligible person: An eligible person is an individual who, other than as a worker, receives remuneration or other benefit for performing work, or providing services as—(a)a contractor; or (b)a self-employed individual; or (c)a director of a corporation; or (d)a trustee; or (e)a member of a partnership.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html/inforce/current/act-2003-027#ch.1-pt.4-div.3> (2018.10.12. 검색)

301) 이들 ‘적격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세부요건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보험운영기관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

302) The State of Queensland 2018, Queensland workers’compensation scheme statistics 2017 - 18, 7쪽, https://www.worksafe.qld.gov.au/_data/assets/pdf_file/0003/167628/wcr-stat-report-2017-18.pdf (2018. 10. 30. 검색)

303) The State of Queensland 2018, Queensland workers’compensation scheme statistics 2017 - 18, 5쪽,

[표 3-47] 2016-17 및 2017-18년 보험유형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수

보험유형	2016-17	2017-18	증감률(%)
고용된 사람들(employed people)	98,211	96,589	-1.7
자원 봉사자, 산업 배치/근로 체험, 보험계약 (법 제26조)	272	268	-1.5
작업장개인재해보험 (자영업자, 근로감독자)	77	81	5.2
가사근로자(Household workers)	21	29	38.1
청구합계	98,581	96,967	-1.6

자료: The State of Queensland 2018, Queensland workers' compensation scheme statistics 2017 - 18, 4 Number of claims lodged by insurance type 2016-17 and 2017-18, 7쪽.

한편, 2017-18년 기준 피고용자 1000명 당 청구 수는 39.6명(3.96%)이며,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소요기간이 평균 8.1일, 청구에 대한 기각률의 경우 육체적 재해에 대한 기각률은 5.8%(즉 인용률 94.2%), 심리적 및 정신적 재해(psychological and psychiatric)에 대한 기각률은 62.4%(인용률은 37.6%)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³⁰⁴⁾ 또한 2017-18년 기준 심사결정한 총 건수는 79,351건이며 92.1%가 인용되었고 7.9%가 기각되어 대부분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평균 심사결정 소요기간은 6.5일로 나타나고 있다.³⁰⁵⁾

서호주 주(Western Australia)의 경우, 취업자 보상 및 재해관리법(Workers' Compensation and Injury Management Act 1981)에서 노동재해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상 보험적용 대상은 취업자(worker)이며, 이 취업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일반적인 종속노동자 이외의 사람에게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즉 종속근로자 이외에 일정한 조건 하에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in some circumstances)], 한 명 이상의 고용주를

304) The State of Queensland 2018, Queensland workers' compensation scheme statistics 2017 - 18, 3 Scheme at a glance, 6쪽.

305) The State of Queensland 2018, Queensland workers' compensation scheme statistics 2017 - 18, 18 Decisions made and average time to decide by decision type and injury type 2017-18, 18쪽.

위해 일하는 사람(work for more than one employer) 등 자영업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험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⁰⁶⁾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호주는 국가차원의 산재보험제도는 없으나 각 주별 산재보험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다수의 주에서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도입하고 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부 주의 산재보험법령에서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의 유형 및 적용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세부 내용은 각 주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남호주 주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특징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체계 및 입법목적

남호주의 산재보험법은 법률 제명부터 우리나라와 일본과 상당히 다른 ‘취업복귀법(Return to Work Act)’이라는 독특한 제명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목적 역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employee)의 보호에 한정하지 않고 ‘취업자(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취업자를 취업복귀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 취업자 개념에 전통적인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포섭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employment)’의 개념도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의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노동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을 사용하여 상기 취업자(worker) 개념과 상응하여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남호주의 산재보험법의 입법체계, 취업자(worker), 확장된 고용(employment) 개념 도입을 통한 보험적용대상 규정방식은 향후 우리가 전통적인 임금근로자 보호 위주의 산재보험법제에서 벗어나 독립자영업자, 종속적 자영업자, 기타 재해보호가 필요한

306) 정소영, 앞의 자료, 34-35쪽.

모든 취업자로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제로 산재보험법령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참고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2) 적용범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할 수 있는 1인 도급계약자만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있고, 독립자영업자의 경우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두고 이를 보험관리기구에서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는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상당히 좁다고 할 수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자영업계약자는 1인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자체 재료 및 장비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 받는 등 사실상 1인 노무제공자 수준으로 한정되는 등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이에 따라 보험적용이 되는 1인 도급계약자를 거의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로 보고 이들의 보험금을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1인 도급계약자의 보험적용을 위한 세부요건과 보험금 부담 관계 등은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절 국가 간 비교

1. 자영업자 개념정의 관련

자영업자의 개념정의에 관해 조사대상국가에서는 대체로 임금근로자가 아니며 자기계정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EU에서의 개념정의와 유사한 자영업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영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예컨대 자영업자 통계를 작성할 때 무급가족종사자도 자영업자 통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서 우리나라, 일본, 이탈리아 등은 제외하지만 OECD, EU에서는 포함시켜 논하고 있다.

자영업자 통계를 작성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구분하는 점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자영업자 정책 수립에 있어 고용원의 유무는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다르게 설계할 것인지는 국가 간에 통일된 기준은 없어 보인다.

자영업자 범위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수의 외국의 자영업자 통계상 자영업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의 사업주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를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보면, 자영업자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도 포함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물론 그 수가 적어 통계상 의미는 크지 않지만) 자영업자 통계에 포함된 자영업자 수보다 더 많은 사업주가 자영업자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 관련 법령에서 자영업자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를 두는 경우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주로 보험적용이 되는 자영업자의 유형 및 적용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탈리아 민법에서 종속근로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서 독립노동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법에서 정의한 것이 아니기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질을 모든 가진 중간지대의 종속적 자영업자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유사근로자, 외관자영업자, 준종속적 근로자, 자영계약자 등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찾는데 있어 이들 외국의 용어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도입 현황 총평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도입현황에 대해 도입여부 등을 중심으로 개관한 후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검토하였다.

우선 유럽 국가 대부분은 구체적인 보험적용범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만 도입되어 있는 것 같고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자영업자 산재보험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사회보험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유럽 중심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에서 도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자영업자 산재보험 제도 도입 여부만을 가지고는 개별 국가의 제도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각 국가의 세부적인 적용범위, 적용요건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국가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쟁점 검토에 앞서 전체적인 제도 도입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그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은 임금근로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특별가입 형식으로 독립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산재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제도가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독일은 취업자, 피보험자 개념을 도입하여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 전체에 대해 국민재해보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대해서도 보편적인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피보험자 개념을 도입하고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적용을 하고 있지만 보험적용대상을 위험도가 높은 작업과 직종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실제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범위는 그다지 넓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되었다.

호주의 경우 국가차원의 단일한 산재보험제도는 없으나 각 주별로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6개 주 중 4개의 주에서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주별로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다르고 대체로 적용대상은 독립자영업자보다는 종속적 자영업자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할 것이다.

이들 국가 외에 본 연구에서 상세히 조사하지 않았지만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의 경우 국가보험제도라는 하나의 통합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된 산재보험제도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가 없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산재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험제도하에서 여러 가지 급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의 산재보상 급여 성격인 산업재해 장애급여는 수급대상이 아니지만³⁰⁷⁾ 무능력 급여(*invalidity Benefit*) 등 다른 급여를 통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독립된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가 없다는 곳이 곧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 역시 독립된 산재보험제도가 없지만 건강보험, 상병급여보험, 장애보험 등을 통해 재해원인에 관계없이 산업재해와 일반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보험을 민영화하는 개혁이 단행되었으며, 특히 자영업자의 산재보상을 위한 자영업자장애연금은 2006년부터 자영업자의 의무가입이 폐지되고 일반 민영장애보험에 가입하거나 다양한 전문직종단체에서 제공하는 집단형 개인장애보험의 가입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였다.³⁰⁸⁾ 네덜란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공적산재보험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상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총평하에 이하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외국 사례를 종합비교 분석한다.

307) 윤성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영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3), 전문가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8, 64쪽. 다만, 일부 문헌에서는 산업재해 장애급여는 원칙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이지만 자영업자도 국가보험 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의 납부대상이면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2012, 251~252쪽.

3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네덜란드, 2012, 212쪽.

3.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쟁점 비교

국가마다 상이한 산재보험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고 그 의미 또한 실제와는 다르게 파악될 수 있는 등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 쟁점에 관한 국가 간 비교분석은 현행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 대안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도출한 현행 우리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국가별 제도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쟁점은 법체계·입법목적·적용범위 등을 통해본 산재보험법상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위상,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입방식·가입절차·보험료·운영현황 등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나씩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산재보험법상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위상

먼저 각국의 산재보험법의 제명, 법체계, 입법목적, 적용범위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가들이 산재보험법상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는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특히 현행 우리의 산재보험법이 임금근로자의 보호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보호를 제한하는 현행 법체계의 개선을 검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의 국가로 묶을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한국과 일본으로 양국은 거의 유사하게 노동법상 임금근로자의 보호에 치중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 보호라는 소극적인 위상을 설정하고 있다.³⁰⁹⁾ 즉 양국은 산재보험법을 노동법과 직접 연계하여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 조항에서 그 대상을 노동법상 임금근로자로 한정하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본래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보호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법체계가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법체계하에서는

309) 물론 법률 제명에 있어서는 일본이 제명에 (임금)노동자라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어 일본이 우리보다 더 노동법상 노동자의 보호가 일본 노재보험법의 입법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법적용대상이 노동법상 임금근로자의 정의에 속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노동법상 임금근로자의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보호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법을 해석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다랄 것이다.

두 번째는 독일과 이탈리아로 산재보험법을 노동법과 분리하여 사회보험법적 각도에서 피보험자 개념을 사용하여,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보호를 임금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예외로 취급하는, 원칙과 예외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작업 중 재해를 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 보호를 원칙으로 하여 접근하는 유형이다. 이에 따라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양국 간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임금근로자인지 비임금근로자인지 관계없이 재해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일단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고, 다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즉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당연가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임의가입으로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보호방법이나 절차는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중간적 유형 또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호주사례이다. 예컨대 호주의 남호주 주는 산재보험법의 제 명부터 임금근로자 산재보상이라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취업복귀법’이라는 매우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에서 보호의 대상을 ‘취업자(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취업자의 정의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병렬적으로 기술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전통적인 이분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만, 현재에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일부 자영업자로 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좁혀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남호주 사례는 기본적인 법체계를 종사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재해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게 공적 산재보험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준종속 자영업자 등 기존의 임금근로자 보호 위주로 설계된 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처음부터 보편적인 적용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입법모델로서 참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3-48] 각국의 산재보험법상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위상 비교

국 가	근거법률의 제명	법체계 (노동법과의 관계 등)	입법목적	원칙적 적용대상	자영업자 산재보험의 위상
한 국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노동법 기초로 법체계 구성	노동법상 임금근로자 재해 예방·보상·재 활 및 복귀 지원	임금근로자	예외적 적용확대
일 본	노동자재해보 상보험법	한국과 유사	한국과 유사	한국과 유사	한국과 유사
독 일	산재보험법	사회법전의 일부로 서 노동법과 분리된 독자적 법체계	피보험자의 산재 예 방·보상·회복	피보험자	피보험자 중 하나로 일반적용대상
이 탈 리 아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 한 강제보험 에 관련된 기 본규정	노동법과 분리된 독 자적 법체계	별도의 입법목적 조 항 없음	피보험자	예외적 적용이 아닌 자영업자 중 고위험 도 작업자만 적용
호 주 (남호주)	취업복귀법 (Return to Work Act)	노동법과 분리된 독 자적 법체계	작업 중 피재취업자 (worker)의 지원	취업자 (worker)	임금근로자, 자영업 자를 포함하는 취업 자 개념을 사용, 단 자영업자에 대해서 는 확대적용개념으 로 위상설정

출처: 필자 정리

이외에 공적 산재보험제도에서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아예 배제하는 네덜란드 같은 입법사례도 있고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입법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비교적 상세히 조사한 몇 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검토를 해도 상당히 다양한 산재보험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개별 국가의 산재보험법상 자영업자 산재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산재보험제도에서 자영업자 관련 구체적인 쟁점들을 하나씩 비교 분석한다.

(2) 적용범위

본 연구에서 비교적 세부적으로 조사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적용범위와 기준을 비교검토 한다. 각 국가의 자영업자 보험적용범위와 기준은 다음의 세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업종에 대한 포괄적 적용인가 아니면 일부 업종에 한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인가(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2) 농업부문, 비농업 부문으로 나누어 양자를 모두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농업부문만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농업부문 적용여부), 3) 가족종사자 적용여부, 4) 개인사업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까지 포함할 것인지(기업형태별 차등적용여부), 5)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자에 한정할 것인지, 고용원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하는 고용원의 수의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고용원의 유무), 6) 독립자영업자만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중간지대에 있는 자영업자까지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특수형태근로자 적용범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자영업자의 적용범위가 결정되고 있다.

1)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첫 번째 이슈는 전체 업종을 적용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일부 업종에 한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①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국가

첫 번째 유형은 모든 업종의 자영업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업종을 예외적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독일, 호주의 일부 주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가장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영업자

의 경우 개인의원의 의사, 수의사, 약사 등만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업종의 자영업자를 보험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은 보험적용범위를 정할 때 업종기준이 아니라 재해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민재해보험 성격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퀸즈랜드 주는 독일처럼 국민재해보험제도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도급계약자, 자영업자인 개인, 파트너십의 동업자 등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업종별로 적용대상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호주의 남호주는 법령에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아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종속적 자영업자라 볼 수 있는 자영업계약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그 적용대상을 구체적인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포함한다면 호주 역시 일부 업종 적용국가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호주는 현재 시점에서 독립자영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적용가능성만 열어두고 아직 구체적으로 적용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사실상 자영업계약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일부업종 적용국가에 포함된다 고도 할 수 있다.³¹⁰⁾

②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는 국가

두 번째 유형은 자영업자의 산재보험가입이 허용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일부 업종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주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업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지만,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일 양국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업종제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0) [표 3-1]에 보면 호주는 ‘일부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일 양국 이외에 이탈리아의 경우도 한일 양국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적용업종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을 수공업 직인, 농림수산업의 자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이 중 수공업 직인, 즉 장인의 경우 장인기업법에서 장인으로 규정한 업종의 종사자만 장인기업자로 보기 때문에 이들 장인기업에 속하지 않는 음식점, 숙박업 등 서비스업 자영업자는 적용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만 보험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³¹¹⁾

이와 같은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비농림어업분야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범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인 자영업자의 적용범위와 관련,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분야는 운송업, 토목건설업, 금속제조가공업(일본의 가내근로자 및 그 보조자) 등이며, 일본에서 가입을 허용하는 의약품배치판매자, 재활용품사업자, 개호(돌봄)종사자, 가사지원종사자 등은 우리나라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예술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일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숙박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는 양국 모두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경우 수공업 직인, 즉 장인기업의 사업주가 대표적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인데, 장인기업기본법상 장인기업의 정의, 업종제한, 종업원 수 제한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적용이 되는 장인기업은 일부 제조업(의류제조업 포함), 운송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장인기업인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농업·상업·상품의 유통, 중개 및 그 보조·음식업은 적용제외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농림어업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이탈리아의 적용범위가 더 좁은 것으로 판단된다.

311) [표 3-1]에 보면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직업에서의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평가한 내용과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농업부문 적용여부

농업부문(임업 및 어업 포함)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비농업 부문과 농업부문 모두의 자영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호주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는 농업부문 종사자도 가입이 허용되지만, 1인 자영업주의 경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1인 자영업주에 대해서는 비농업부문의 일부 업종만 선별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의도적으로 농업부문의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을 배제하고자 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제3장의 도입부에 있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현황표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국가는 세르비아(농부 제외) 정도이며,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은 농업부문 역시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가족종사자 적용여부

가족종사자 적용여부의 경우 일본,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 다수의 국가에서 자영업자의 가족종사자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호주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국가에서 가족종사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역시 가족종사자의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4) 기업형태별 차등적용여부

앞서 살펴본 대로 통계수치에 포함되는 자영업자는 주로 개인사업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법인기업의 사업주는 자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법인기업의 사업주는 제외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영업자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정할 때 개인사업주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법인기업의 사업주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개인기업의 사업주로 한정하고

법인기업의 사업주를 제외하는 국가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5) 고용원의 유무

고용원의 유무를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차등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일 양국에서처럼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외국사례는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먼저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의 경우 일본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준을 사용하여 일본이 더 완화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사실상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가 업종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한일 양국 모두 적용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양국 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업종도 있지만 한쪽에서만 적용되는 업종도 있어 어느 국가가 더 넓게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남호주의 1인 자영업계약자에 대해서는 고용원이 없을 것을 보험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독립자영업자의 고용원 유무에 따른 적용범위 차등문제와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자 역시 산재보험적용 요건으로 고용원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둘의 경우는 중간지대에 있는 종속적 자영업자는 독립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자성이 강해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용원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범위

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국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유형은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남호주가 여기에 속하는데, 다만 양국 간 구체적인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 보험적용기준, 직종 및 노무제공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부 적용기준을 비교해 보면 남호주의 적용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남호주에서 보험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자영업계약자는 근로자성이 아주 강하여 사실상 임금근로자와 거의 유사하게 취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이탈리아처럼 법령에서 준종속 노동자 개념을 도입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과 호주의 퀸즐랜드 주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유형은 일본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관해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나 보험운영당국의 해석을 통해 사안별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이다.

이들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국가의 적용방식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호를 더 넓게 해 주고 있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 각각의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깊이 다루지 않고 기본적인 현황만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상의 비교분석과 함께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별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나름대로 종합하면 [표 3-48]과 같다.

[표 3-48] 국가별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통합

국가	한 국	일 본	독 일	이탈리아	호주		
					남호주(SA)	서호주(WA)	
독 립 자 영 업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종제한 없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고용주 ○ 14개 업종의 1인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건설기계사업자 - 퀵서비스업자 및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사람 - 예술인 -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종제한 없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사 업주 및 그 가족 종사자 ○ 일부 업종의 1인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자(개인 택시, 덤프트럭, 오토바이 택배기사, 토바이 택배기사, 자진기 화물운송업자 등) - 토목·건설 등업자 - 어선 수산동식물 채포(探捕)업자 - 임업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사업주 및 그 가족종사자(최소규모의 농업자영자는 신청에 의하여 보험가입의무를 면제) - 연해자영어부 및 그 가족종사자 -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의 업무종사자(예,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간호사, 산파, 마사지사, 혈액 검사실의 화학자, 발관리자, 언어치료사, 의사가 아닌 심리치료사, 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공업 직인 - 농림업종사자 - 소규모 어업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 적용대상 이나 실제 적용여 부는 보험기구가 결정토록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퀸즈랜드 ○ ‘적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자영업자 - 수탁자 - 파트너십의 구성원 	미적용

국가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호주	
					남호주(SA)	퀸즈랜드
<p>국가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금속 제조업자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자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자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자 - 전기장비 제조업자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자 - 자동차정비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배치판매자 - 재활용품사업자 - 선원법상 선원의 사업 - 농축산업 종사자 및 가족종사자 - 지정농업기계작업 종사자 및 가족종사자 - 가내근로자 및 그 보조자(프레스기, 기계 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 한정) - 개호(돌봄)종사자 - 기사지원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물리치료사 등) - 비영리 재가 간병인 (영리직 민간 간병서비스 사업주는 제외) - 가내공용운영자와 중간관리자 및 그 배우자 - 직종단체의 정관을 통해 법정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주 및 그 배우자를 의무가입자로 설정 가능 (다만, 산재보험은 영기관이 사업주 의무보험 도입여부, 도입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면제가 능성 설정 가능) 				

국가	한 국	일 본	독 일	이탈리아	호주	
					남호주(SA)	퀸즈랜드
			<p>○ 임의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의하여 의무가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업주와 그 배우자(다만 가사운영자, 비영업 목적 내륙어업 또는 양봉업의 사업주, 비영업 목적 축산업자¹¹²) 및 그 배우자, 어업손님 및 사냥손님 제외) - 유사사업주: 자본회사 또는 인적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주와 유사하게 자영업적으로 종사하는 			서호주(WA)

312) 제123조 제1항 제2호: 토지경영을 하지 않고 가축 또는 유용동물을 성장, 비육 또는 축산물 획득의 목적을 위해 사육하는 사업. 독일 산재보험법 해설서, 근로복지공단, 2005, 660쪽.

국가	한 국	일 본	독 일	이탈리아	호주	
					남호주(SA)	퀸즈랜드
중 속 적 자 영 업 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 기사 - 학습지교사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전속 쿼서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전속)	노재보험법에 규정 없음	자(예,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서 지배인의 지위 에 있는 자) - 단체협약별상 '유 사근로자' ³¹³⁾	준중속근로자(도 급계약자)	○ 자영계약자 - 건설 공사 (벽·바닥 타일작업 제외) - 청소작업 - 택시 등 자동차 운전 - 비용을 받고 비상업적 용도의 차량운전서비스 또는 차량에 태워주는 서비스업	○ 도급계약자 하도급계약자 ○ 한 명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³¹⁴⁾

313)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의 임무종사자(예,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간호사, 산파, 마사지사, 혈액검사실의 화학자, 발관리자, 언어치료사, 의사)가 아닌 심리치료사, 간병사, 물리치료사 등도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여지가 있음.

314) 독립자영업자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	한 국	일 본	독 일	이탈리아	호주	
					남호주(SA)	퀸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으로서의 공연 - 재택근무자 - 일부 성직자 - 허가받은 기수가 수행한 승마작업 	
적 용 제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상거 열거 된 1인자영업자 이외의 업종 종사자(숙박업, 음식점 등 서비스업 사업주) ○ 종속: 열거된 직 종 이외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상거 열거 된 1인자영업자 이외의 업종종사자(예술퉐인, 자동차 정비업자, 숙박업, 음식점 등 주로 서비스업 사업주) ○ 종속: 시안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자영업자로 일하는 비교적 수입이 좋은 의사, 치과 의사, 약사, 수의사, 심리학자 ○ 종속: 심리치료사, 아동 및 심리치료사, 자연요법 치료사 ○ 종속: 시안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요식업, 유통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 종사자 ○ 종속: 도급계약자 이외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모든 업종의 개인자영업자 ○ 종속: 도급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모든 업종의 종사자 ○ 종속: 상거 열거된 자 이외의 자

자료: 필자 정리

(3) 가입방식: 의무 또는 임의

독립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방식은 대체로 임의가입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제3장 도입부의 [표 3-1]에서 각국의 전반적인 조사에서도 확인되었고, 본 연구에서 상세 조사한 국가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 일본, 호주는 모두 독립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임의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독립자영업자이면 모두 의무가입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의 공적 산재보험제도 자체가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라는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작업 및 업종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은 조금 독특한데, 일반적인 사업주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농림어업사업주, 간호사 등 사회복지보건의료기간의 자영업적 종사자³¹⁵⁾, 가내공업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의무가입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회정책적 측면, 공공이익에 봉사 등이 제시되고 있다.³¹⁶⁾

(4) 보험료

산재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는 특히 그럴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 독립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비교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험금 계산 등에 대한 외국자료 접근이 어려워 많은 사례를 검토하지 못했으며,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비교적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여기서 양국의 독립자영업자 보험료 부담 수준을 상호비교

315)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강제가입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316) 농업사업주를 법정 의무가입자로 규정한 목적은 “사회정책 근거에서 이 그룹을 법적 산재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험법적 근거 위에 세워진 조합의 자기부조 의미”에서라고 한다.(근로복지공단, 독일 산재보험법 해설서, 18쪽) 연해자영업어부의 경우 “영세사업주인 자영 선박주와 어업자를 편입시킨 것은 사회복지적 이유로 해당사업의 규모가 작고 작업이 위험하며 그 때문에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앞의 자료, 22쪽) 보건의료시설의 간호사 등을 법정 의무가입자로 규정한 이유는 “이들이 공공의 이익과 복지에 봉사하기 때문이며”(앞의 자료, 36쪽), 또한 이들의 수입이 비교적 적고 법정 의무가입자로 하지 않으면 이들의 산재를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산재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초보수액 구간은 우리나라는 12 등급으로 하루 평균임금 최저 57,135원(연간 20,568,600원)에서 최고 205,686원(연간 74,046,96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16 등급으로 급여기초일액 최저 3,500엔(연간 1,277,500엔)에서 최고 25,000엔(연간 9,125,000엔)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양자를 비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세분화 되어 있고 최고 금액은 높지만 최저 금액은 더 낮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내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기 16등급보다 더 낮은 급부기초일액 2,000엔, 2,500엔, 3,000엔 3 등급을 추가하여 더욱 낮은 보험료 구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보험금 구간이 더 다양하고 특히 최저 평균임금을 한국보다 약 2만원 낮은 3,500엔을 설정함으로써 일부 수급 항목의 혜택이 보험료와 연동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지만 매우 낮은 보험료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보험금을 내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금 부담의 정도는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상기 하루 평균임금 등급과 함께 업종별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일부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보험료율을 비교하고 이들 보험료율과 하루평균임금을 이용하여 실제 보험금 부담액을 계산하여 양국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보험료의 계산 전에 한일 양국 모두 자영업자 산재보험 보험료율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종속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보험료율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다른 점은 우선 중소기업사업주의 요율과 1인 자영업자의 요율을 우리나라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모두 종속근로자용 요율표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일본은 중소기업 사업주용 요율표와 1인자영업자 요율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은 동종 사업에 대한 양자의 요율 또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임업 사업의 경우 단일요율인데 중소기업사업주(제1종 특별가입자) 및 종속근로자의 요율은 60/1000인 반면 제2종 특별가입자(일인친방 등)의 요율은 이보다 낮은 52/1000이다. 또한 일본은 중소기업사업주

의 보험요율이 좀 더 세분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제2종 특별가입자의 요율은 단일요율이다). 예컨대 건설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단일 요율 39/1000이지만, 일본의 경우 같은 사업내에서 더욱 세분화하여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건설사업을 수력발전시설 등(62/1000), 기계장치의 조립 등(6.5/1000) 세부 사업마다 상당히 다른 요율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종업종에 대한 실제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예컨대 자동차여객운수업의 경우 먼저 한국의 자영업자가 최저 등급(연간 20,568,600원)을 선택하면 동 업종의 보험요율 20/1000을 적용하면 연간 보험료는 411,372원(월 34,218원)이며, 일본의 경우 최저 등급(연간 1,277,500엔)을 선택하면 제2종 특별가입요율 중 자동차여객화물운송사업의 요율 12/1000을 적용하면 연간 보험료는 15,330엔(월1277.5엔)이다. 양자를 비교하면 한국의 자영업자가 약 2 배가량 많은 보험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업종의 요율이 일본이 낮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최저 하루평균임금이 한국보다 낮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비교검토를 통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료 등급을 더 세분화하고 최저 등급의 보험료를 우리보다 낮게 책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여 가입을 꺼릴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가입문턱을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을 각 사업주의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요율책정의 합리성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정교한 보험료 산정방식의 설계는 더 많은 가입자의 유치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보험료 산정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가입절차 등 운영관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영업자 산재보험은 대부분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적용범위, 보험료, 가입절차 등 운영관리시스템과 같이 제도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어떻게 설계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제도의 설계에 따라 실제 어떻게 집행관리 되느냐에 따라 가

입률 등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핵심 요소인 적용범위, 보험료와 함께 가입절차 등 운영관리시스템을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쟁점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한계 등으로 주로 일본의 노재보험제도상 자영업자 가입절차만 상세히 검토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례는 우리의 가입절차 등 운영관리 측면의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자영업자 보험가입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가입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보험사무조합이라는 보험사무대행기구를 통해 하도록 강제하여 가입 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인 사업주 역시 개별적으로 직접 가입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특정가입단체를 통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사업주의 가입절차에서와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에서 이와 같이 자영업자의 보험사무처리 대행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달리 직종조합 등과 같은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이 매우 잘 조직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자영업자 보험가입절차 등 운영관리시스템은 아래에서 보듯이 비교적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현재 사업주 본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가입절차제도의 개선에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가입자 수 및 가입률

각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 및 가입률, 보험수급자 수 및 수급률 등은 각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동 제도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다수 국가의 관련 통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다른 통계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통계 정도만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약 170만명, 전체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률은 약 20% 내외의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독일은 약 64만명, 약 15% 정도가 가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2만명 가입자 수, 1%가 안 되는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다.

일본과 독일의 비교를 통해 주목해야 할 점은 적용범위면에서 독일이 일본보다 더 넓게 설계되어 있지만 일본의 전체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낮은 보험료, 대행기구 또는 단체를 통한 가입절차 등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관리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다만, 독일이 제도 시행 역사가 오래되었고, 또 적용범위 또한 더 넓지만 일본보다 가입자 수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자영업자 재해보호를 위한 법정 산재보험제도보다 관련 민간보험 제도가 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 산재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적 산재보험제도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간보험 제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법정 산재보험제도 못지않게 자영업자의 산재보호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법정 산재보험제도에서 자영업자를 보호를 강화할 실익이 없을 것이다. 상세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독일과 호주의 경우 자영업자 재해보호를 위한 민간보험이 공적 산재보험만큼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또한 자영업자들이 민간보험을 활용하는 것을 일정 정도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독일과 호주의 사례는 향후 민간보험을 통한 자영업자 재해보호 강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제4장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제1절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강화 필요성 검토

제2절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제3절 장기적 개선방향

제4장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제1절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강화 필요성 검토

구체적인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기 전에 자영업자 산재보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의 방향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에 대한 공적 산재보험의 보호가 확대·강화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총론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난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자영업자에 대한 공적산재보험 제공의 당위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현행 우리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매우 소극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뒤에서 제시하는 기술적인 개선방안보다 자영업자 공적산재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엄격히 말하면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는 독립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과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문제로 나뉘어져 있고 양자의 성질이 다소 상이한 관계로 두 제도를 구분해서 봐야하는데 여기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먼저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강화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취약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강화라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 예상되는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외국의 적지 않은 국가가 독립자영업자에 대한 공적산재보험을 도입하고 있지 않고, 설령 자영업자 산재보험을 도입하고 있다고

분류되는 국가가 다수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도입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고, 단순히 도입 국가가 많다는 것이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높은 수준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에 이와 같은 외국사례를 바로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강화를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 산재보험제도의 본래 취지가 임금근로자의 산재보호에 있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법제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 독립자영업자는 말그대로 스스로 자신의 재해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에 민간보험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독립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강화가 기존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반대 근거는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는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서,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고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노동환경에서 유사한 노동재해위험을 안고 일하고 있기에 이들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자영업자의 노동재해위험에 대한 다른 보호장치(사회복지시스템, 민간재해보험 등)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아직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확대·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확대·강화의 목표는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가능하면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부담을 지고 공적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지 자영업자를 산재보험제도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확대·강화가 기존 근로자의 산재보험제도상 보호를 침해하거나 약화할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오히려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확대·강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전체 산재보험제도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 임금근로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현행 산재보험법이 임금근로자 보호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논하듯이 이와 같은 현행 법제는 외국의 산재보험법제와 다소 동떨어진 입법례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현행 산재보험법을 비임금근로자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총론적 인식하에 이하에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상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확대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기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개선방향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서는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인 저조한 가입률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범위 확대, 보험료 부담 인하, 가입절차 개선 등 가입자 수와 가입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 제도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 방향으로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이 노동법과 직접 연계되어 임금근로자 보호 위주로 설계된 법체계를 취업자 또는 피보험자 개념을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법체계 전체를 완전히 재설계함으로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임금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제2절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1. 적용범위 확대

먼저 우리나라의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독일보다는 좁지만 일본과는 비슷하거나 조금 좁다고 할 수 있고, 이탈리아와 호주보다는 더 넓은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아주 협소한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충분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조한 가입률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선방안은 기존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안과 모든 사업주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하는 독일식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기준 완화 또는 삭제

우선 현행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를 없애거나 일본과 같이 300명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여 대부분의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용원의 여부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고(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산재보험제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외의 국가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³¹⁷⁾ 물론 현행 50인 미만 상시근로자에서 300미만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실제 적용대상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 실질적인 적용범위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지만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또한 고용원의 존재 여부와 자영업자(사업주)가 산재를 당할 가능성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고용원의 유무가 산재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원의 유무 또는 그 수에 따라 보험적용대상을 달리한다면, 일반적으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종속근로자처럼 직접 작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고용원이 있는, 특히 다수의 고용원이 있어 위험작업을 적게 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사업주보다 산재위험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다면 1인 자영업자의 산재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보다 1인 자영업자의 보험적용대상을 더 넓게 설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현행 제도는 반대로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주에게는 업종 제한 없이 보험가입을 허용하지만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현행 제도 자체가 고용원의 수와 적용범위 설정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17) 이탈리아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인 장인기업의 경우 장인기업의 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시근로자 수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근로자 수 기준은 장인기업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아니라 장인기업의 요건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의 근본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호주에서도 1인 도급계약자에게만 보험가입을 허용하는데 여기서 1인 도급계약자로 한정된 배경은 도급계약자를 종속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역시 그 취지가 한일 양국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가입대상이 된다 면 잠재가입자의 전체 수를 증가시켜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인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1인 자영업자의 업종 제한 폐지

다음으로, 현행 1인 자영업자의 가입업종 제한을 없애 원하는 1인 자영업자 모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1인 자영업자의 산재위험률이 임금근로자 못지않게 높고 산재사고 건수도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실증데이터가 없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인 이하 사업장의 통계분석을 하였으며³¹⁸⁾ 그 결과 1인 이하 사업장에서 실제로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그 비율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 4-1]에서 보듯이 재해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재해자 수 통계를 바탕으로 1인 이하 사업장(1인 이하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를 보면 2017년 사업장 수 1,086,720개, 근로자수는 827,491명이며, 평균 상시 근로자수는 0.761명)의 재해자 수를 계산하였으며, 2016년 12,797명, 2017년 13,624명이다. 최근 3년 간 비교적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 전체 수급자 368명과 비교하면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로 보호되는 1인 사업주는 매우 극소수일 수 있으며, 특히 전체 수급자 368명에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고,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2/3가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임을 감안하면 1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호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인 이하 사업장과 임금근로자의 재해율을 비교해 봐도 1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율이 임금근로자의 재해율보다 훨씬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인 이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2016년 기준으로 798,139명, 2017년 기준으로 827,491명으로 나누면 비율이 0.015%이다. 이를 임금근로자의 재해율과 비교하면

318) 조희학, 1인 사업장 재해현황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워크숍 자료, 2018년.

2016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수는 18,431,716명³¹⁹⁾, 재해자수는 2012년 기준 92,256명³²⁰⁾이며 이를 기초로 재해율을 계산하면 0.005%이다. 1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율이 3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1] 최근 3년간 1인 사업장 현황 및 재해자 수

(단위/ 명)

년 도	1인 이하 사업장수	근로자수	1사업장당 평균근로자수	재해자 수	1인 사업장 이상 상시 근로자수
2015	1,036,474	766,951	0.739961639	13,667	10,232
2016	1,062,986	798,139	0.750846201	12,797	10,511
2017	1,086,720	827,491	0.761457413	13,624	10,572

주1) 재해자 수는 1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0이 포함 될 수 있으므로 평균 근로자수와 결과가 다름
자료: 조흥학, 1인 사업장 재해현황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워크숍 자료, 2018, 8쪽.

한편, 세부적인 재해유형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전체 재해자 중 사고부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1만 2천 명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업무상 사고사망자도 150여명 수준으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망자 수가 매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2] 최근 3년간 1인 사업장의 재해자 수 및 재해유형

(단위/ 명)

년도/ 재해자구분	사고부상자	업무상사고 사망자	그 외사고 사망자	질병이환자	질병사망자	총 합계
2015	12,838	163	40	567	59	13,667

319) 근로복지공단,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208쪽.

320) 근로복지공단,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277쪽.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해자수 통계란이 비어 있고 2012년 재해자수까지만 표기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2012년 재해자수와 2016년 전체 임금근로자 수를 사용하여 재해율을 계산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해자 수 9만명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년도/ 재해자구분	사고부상자	업무상사고 사망자	그 외사고 사망자	질병이환자	질병사망자	총 합계
2016	12,031	146	35	529	56	12,797
2017	12,752	149	38	622	63	13,624
총합계	37,621	458	113	1,718	178	40,088

주1) 2015년 ~ 2017년 기준 1인 이하 사업장 현황

주2) 그 외 사고사망자란 - 운수, 창고, 통신업 제외, 폭력행위, 체육행사 등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망

주3) 재해자 정보는 승인된 모든 재해자를 포함

자료: 조희학, 1인 사업장 재해현황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워크숍 자료, 2018년, 9쪽.

이와 같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의 필요성을 우리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별가입제도를 도입한 이래 1인 자영업자의 산재가입 가능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선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족할 수 있고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가입업종을 제한하는 논리적 근거가 약해 보이고, 전체 자영업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가입업종 제한이 전체 잠재가입자 풀을 감소시켜 절대 가입자 수와 전체 자영업자 중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는 원인일 수 있기에 1인 자영업자의 업종제한을 완전히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은 실무부담이 늘어나고, 보험재정 안정성 문제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일정 정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임의가입 방식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본인이 보험가입 필요성을 인식했을 때만 가입할 것이므로 갑자기 대규모로 가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측면에서 1인 자영업자의 가입업종 제한 철폐가 큰 행정적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³²¹⁾

321) 사실 자영업자 산재보험을 임의가입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자발적 가입이라는 측면에서 자영업자가 민간보험을

이처럼 1인 자영업자의 업종제한을 원칙적으로 철폐하면 농업부문도 자연스럽게 적용 대상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주와 동등한 적용범위가 되어 제도의 정합성이 높아질 것이다.

(3)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에서 사업주 산재보험제도로 확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한다면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사업주 및 그 가족종사자’로 하고 제도의 명칭 또한 ‘사업주 산재보험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적용범위만 확대하는 방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산재보험제도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은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존재한다. 그 근거로서, 우선 상세 조사대상 국가 중 중소기업 사업주에 한정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사례는 일본과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제도를 설계한 한국뿐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심지어 자영업자 비중이 낮고 적용범위를 좁게 운영하고 있는 호주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한정하는 제도 설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중소기업 사업주에 한정하여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아마도 우리나라의 당초 산재보험법 입법목적이 임금근로자의 보호에 있었기에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대상으로 정하다보니 중소기업 사업주, 그것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임), 어차피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대기업 사업주 등 공적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필요성이 낮은 사업주에게 특별한 부담이 되지 않고, 만약 이들 대기업 사업주가 가입한다면 오히려 보험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³²²⁾ 전체 산재보험

가입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자영업자가 공적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자영업자의 소득(수입)에 기반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소득노출로 인한 여러 가지 조세부담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민간보험 가입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322)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대기업 사업주의 산재사고 발생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어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대기업 사업주의 재해위험정도는 중소기업 사업주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임의가입 유지, 가족종사자 포함 필요

먼저 의무가입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이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 임의냐 의무냐는 보험료 부담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임의 방식은 수급자 본인 부담, 의무 방식은 주로 사용자-종속근로자 관계에서 사용자 부담이 각각 원칙이다. 따라서 완전한 독립자영업자는 본인 외의 다른 보험료 부담 주체가 없기에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준종속노동자 또는 도급계약자 등 중간지대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즉 노동자성의 강약에 따라 종속노동자로 취급하여 의무가입하게 하고, 보험료는 사용자로 하여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거나(호주의 남호주 등), 이탈리아처럼 사용자 2/3, 도급계약자 1/3을 분담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종사자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가족종사자를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가족종사자는 가입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보험료 등급의 다양화, 최저보험료 인하

현행 자영업자 보험금 부담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인 하루평균임금 등급 구간에 더 낮은 금액의 구간을 신설하여 보험금 부담을 우려하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능한 경우에 요율도 동종사업이라도 세부 사업 또는 작업마다 더 세분화 하여 낮은 요율 구간을 추가하는 등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 보험금 구간을 확대함으로써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유사한 민간보험 상품의 보험료 부담과 혜택 수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유사한 보험금 부담

으로 민간보험의 혜택이 더 크다면 자영업자는 당연히 민간보험 가입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관련 사회보험료 부담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금 제공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를 하지 못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추후 연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종속적 자영업자(준종속노동자, 도급계약자, 유사근로자 등)의 보험료 부담은 위에서 설명한 독립자영업자의 상황과 달리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예컨대 호주의 경우 건설공사, 청소작업 등의 1인 도급계약자의 보험료를 도급인(사용자)이 100%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유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자의 부담을 2/3, 1/3로 각각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 비율은 우리나라의 유사한 종속적 자영업자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단체가입을 통한 가입절차 편리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적용범위의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보험가입 절차 등 보험제도운영관리측면의 개선도 중요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현재 개인적 가입으로 되어 있는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을 자영업자 단체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같이 지원기관을 통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의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무대행기구 또는 노재보험조합 등 단체를 통해 해야 하고 이들 기구 또는 단체가 자영업자 개인의 산재보험 가입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절차를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쉽게 산재보험 가입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실적 등에 따라 정부가 보험사무대행기구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대행기구가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자영업자 산재보험 운영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징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보험사무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행기관을 통한 보험사무처리는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산재보험 사무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자영업자 가입자 수 확대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입절차 등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현행 개인가입절차를 보험사무대행기구 또는 단체를 통한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제언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예시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범위·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예시)

현 행	개정안(1안)	개정안(2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근로자를 …… 같다)”란 다음 각 호의 …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근로자를 …… 같다)”란 다음 각 호의 …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적용제외 사업주의 범위) ①~③(삭제) 법 제124조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현 행	개정안(1안)	개정안(2안)
<p>사업주</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사람은 제외한다.</p> <p>가. ~ 아. (내용생략)</p> <p>② 제1항…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50명 미만의 … 본다.</p> <p>③ 제1항… 50명 미만의 … 본다.</p>	<p>사업주 <u>및 그 가족종사자</u></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u>및 그 가족종사자</u>. 다만, ……사람은 제외한다.</p> <p>가. ~ 아.</p> <p>② 제1항…중·소기업 사업주가 <u>300명</u> 이상의 … <u>300명</u> 미만의 … 본다.</p> <p>③ 제1항… <u>300명</u> 미만의 … 본다.</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포함한다. ……)는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포함한다. ……)로서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노동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자는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그 가족종사자 포함)(근로자를 ……포함한다. ……)로서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노동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자는 ……가입할 수 있다. 단, 대통</p>

현 행	개정안(1안)	개정안(2안)
	구하고 그 사업주 및 그 가족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명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된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 및 그 가족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제3절 장기적 개선방향

임금근로자 보호 위주로 법체계가 설계되어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강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소위 국민재해보험제도를 위한 법체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예외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일반적용대상으로 그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 살펴본 외국사례에서 일본만 우리처럼 임금근로자 위주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비록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의 수준은 매우 다르지만 최소한 법체계에 있어서는 비임금근로자를 ‘예외’가 아닌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대체적인 입법 흐름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국민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고, 입법의 틀만 놓고 본다면 호주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의 입법체계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이보다는 좀 더 좁은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호주의 입법체계를 참고하여 우리의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호주의 남호주의 ‘취업복귀법’의 입법목적, 적용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취업자

(worker)' 개념을 사용하고 여기에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독립자영업자, 종속적 자영업자, 기타 비임금근로자 중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취업자 개념의 도입에 따라 '확장된 고용(employment)' 개념의 도입 등은 입법기술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종속적 자영업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규율문제도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을 확대하여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임금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 종속적 자영업자를 가입 방식, 보험료 부담 수준 및 주체, 가입절차 등 구체적인 보호의 수준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적용대상별로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오랫동안 계속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취약한 사회안전망 구축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체 취업자 중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강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세부 과제 중 하나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외국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및 그 운영현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영업자의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본, 독일 등의 가입자 수와 가입률을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현행 우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만큼 낮은 제도 활용도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씩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 사업주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절차로 인한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등 운영관리측면의 문제점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외국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국가 간 비교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단기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적용범위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등급 구간 다양화, 가입절차 개선 등을 제시하였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산재보험법체계의 개선을 통한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용범위 측면에서 현행 우리의 고용원 유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업종제한은 그 합리성이 부족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을 제외하면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1인 자영업자의 가입업종제한은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제도를 사업주 산재보험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둘째, 보험료와 관련하여 자영업자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등급의 보험료를 낮추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보험료 등급 구간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자영업자의 가입률 저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행 제도하에서 사업주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가입절차라고 판단하고 일본의 사례처럼 보험가입 시 보험대행기구나 업종단체를 통해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가입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단기적, 기술적인 개선방안 이외에 장기적으로는 현행 임금근로자 보호 중심의 산재보험법체계를 임금근로자 및 다양한 유형의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산재보험법을 근로기준법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법체계로 확립하고 기본적인 적용대상을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취업자’ 또는 ‘피보험자’로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장기적 개선방안과 각종 외국 사례 자료는 향후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하여 우리의 산재보험제도 전반을 개선하는데 일정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진의 능력 부족과 자료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그 중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부분이 해외사례 조사·분석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을 제외하고는 상세히 조사·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적용요건, 보험료 산정방식, 가입절차, 가입자 수 등 관련 운영현황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이들에 관한 국가 간 비교·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 사례의 경우 오해했거나 잘 못 정리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보완작업은 다음 후속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본 연구에서는 주로 독립자영업자의 산재보험에 집중하다보니 현재 산재보험제도 전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호 문제는 자영업자 산재보험 카테고리에서 함께 논할 수 있긴 하지만 독립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그리고 양자의 제도적 성질에 상이한 점이 많아 별도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역시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 정원석, 박정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2017.11.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방안 연구”, 2017.9.
- 최정수, 박현정, 비공식취업통계 개발 (I), 2005년 12월
- 전병욱,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법률, 2017.
-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 고용노동부, 2018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7.
- 고용노동부,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2017.12.
- 조희학, 1인 사업장 재해현황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워크숍 자료, 2018년
- 박은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법적 보호, 월간 노동리뷰 2018년 2월호
- 박찬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을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2018년 7월호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2),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8.7.4.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외 선진 산재보험제도 심층 조사·연구[독일·일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12.
- 윤조덕,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2012.3.)
- 신수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연구 - 이탈리아의 사례 -, 한국법제연구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관련 해외사례검토(1) 2018.5.8.

- Edmondo Salinaro, 이탈리아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자영업자 및 준종속적 근로자,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근로복지공단, 이탈리아산재보험, 2004.
- 정소영,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 (3), 2018.7.24.
- 윤성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영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 해외사례 검토(3), 전문가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8.
- ‘통계프리즘, 자영업자의 일자리 추이, 월간노동리뷰, 2009년 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20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네덜란드, 2012.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편), 해외 선진 산재보험제도 조사 연구 - 일본, 독일, 2016.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편), 주요국 산재보험제도 - 독일편, 2011.
- 근로복지공단(편역), 독일산재보험법 해설, 2006.
- 김영미,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46집, 2014.5 .
- 김영미,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김상호,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999.
- 김상호 · 박지순 · 김영문,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산재보험 적용 및 운영방안, 고용노동부 보고서, 2012.
- 김수환 · 김형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20권 제1호, 2017.4.
- 박명준, 독일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의 사회보험, 국제노동브리프, 2013.12.
- 박지순 · 오세웅 · 황원재 · 박수경, 해외 선진 산재보험제도 심층 조사 · 연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
- 전광석, 독일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2008.

Review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David Hunter, ILO, ESA/STAT/AC.289/35, 13 May 2015, p.7.

DIRECTIVE 2010/4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July 2010,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men and women engaged in an activity in a self-employed capacity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6/613/EEC.

OECD Factbook 2015-201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p.126.

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adopted by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January 1993), para.9.

Self-employment rates, As a percentage of total employment by gender, OECD (2016), OECD Factbook 2015-201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factbook-2015-en> (2018. 04. 03. 검색)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2016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sia, 2016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merica, 2016

中小企業庁(2015), 『小規模企業白書2015』, 3면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基本集計)2017年平均(速報), 2018年

厚生労働省(2016), 『平成27年度労働者災害補償保険事業年報』, 26쪽

総務省(2015), 「平成26年経済センサス-基礎調査」, 中小企業庁(2017), 『最近の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政策について』

후생노동성, 도도부현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이하 후생노동성 등이라 함),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해외파견자 용>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rousai/040324-7.html>
(2018.8.30. 검색)}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 <중소사업주용>, 3쪽,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rousai/dl/040324-5.pdf>

自動車を使用して行う旅客又は貨物の運送の事業に係る特別加入の取扱いについて(平成25年3月1日), (基発0301第1号)(都道府県労働局長あて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長通知), 후생노동성 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일인친방 등 기타자영업자 용>, 3쪽.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rousai/dl/040324-6.pdf>
(2018.8.30. 검색)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hoken/dl/040330-4g.pdf>
(2018.8.30. 검색),

후생노동성, 특별가입제도 안내서<특정작업종사자 용>, 3면,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rousai/dl/040324-8.pdf>
(2018.8.30. 검색)

労働新聞社編, 『労働保険事務組合の実務 平成30年版』, 労働新聞社, 2018, 92면.

労働新聞社編, 『労働保険事務組合の実務 平成30年版』, 労働新聞社, 2018, 98-100쪽 참조.

石井道子, 労働保険事務組合制度の特徴と課題、関西社会保障法研究会, 2018.11.10., 10쪽.

厚生労働省(2017), 『平成28年度労働者災害補償保険事業年報』, 27쪽.

- 후생노동성, 산재 보험 특별 가입 제도에 대해(労災保険の特別加入 制度 について),
<https://jsite.mhlw.go.jp/yamagata-roudoukyoku/var/rev0/0114/4700/2018227153946.pdf>
 (2018.10. 20. 검색)
- 후생노동성, “特別加入団体一覧表”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rousai/kanyu.html
 (2018. 10. 20. 검색)
-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rousai/kanyu.html
 (2018. 10. 20. 검색)
- BMW, Wirtschaftsmotor Mittelstand Zahlen und Fakten zu den deutschen KMU, 2017.
- Brenke, Karl, Selbständige Beschäftigung geht zurück, DIW Wochenbericht, Nr.36, 2015.
- Brenke, Karl/Beznoska, Martin, Solo-Selbständige in Deutschland - Strukturen und Erwerbsverläufe, Forschungsbericht 465 - DIW ECON, Mai 2016.
- Buschhoff, Karin Schulze/Schmidt, Claudia, Neue Selbständige im europäischen Vergleich, Hans Boecler Stiftung,
- Dietrich, Hans/ Patzina, Alexander, Vor allem Geringqualifizierte und Berufseinsteiger gehören zu den Risikogruppen, IAB-Kurzbericht, 1/2017.
- Eichenhofer, Eberhard, Sozialrecht, 6. Auflage, 2007.
- ERGP. Private Unfallversicherungen bei Selbständigen - Ergebnisse einer repräsentativen Studie von Forsa, November 2009.
- Frankfurter Allgemeine, Uber, Myhammer und Co. sollen Sozialabgaben zahlen, 03.01.2018.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unternehmen/uber-myhammer-und-co-unfallversicherer-fordern-sozialabgaben-zahlung-15370667.html>)
- Henrich, Cynthia, Unfallversicherung für Selbständige, in: finanzchef24, 15.02.2018.
 (<https://www.finanzenchef24.de/wissen/versicherungsratgeber/unfallversicherung>)

Hinkel, Heidemarie, Fraktion DIE LINKE AK II, 21. Juni 2007.

Kokemoor, Axel, Sozialrecht, 7. Auflage, Vahlen, 2016.

Rhion Versicherungen AG(Hrsg.), Private- und gewerbliche Unfallversicherung, Rhion Versicherungen AG, 4/2014.

(https://www.rhion.de/fileadmin/redaktion/DOWNLOADS/Test_VF0316_Unfall_0814.pdf)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2017.

인터넷 사이트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조사용어, 자영업자 (지역별고용조사 2017년)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138378698> (검색일: 2018.4.3.)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111630548> (검색일: 2018.4.3.)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094332536> (검색일: 2018.4.3.)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094332536> (검색일: 2018.4.3.)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i/6/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2&cd=L053

http://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2&keyWord=1&cd=SL3974&sTt= (검색일: 2018.3.5.)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152675048> (검색일: 2018.4.3.)

통계청 조사용어 개념 중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014년)”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103494873> (검색일: 2018.4.3.)

통계청 조사용어 종사자 유형 구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16년)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152675048> (검색일: 2018.4.3.)

지은실, 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9XXX9202081> (검색일: 2018.4.3.).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152675048> (검색일: 2018.4.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검색일: 2018.4.3.)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i/6/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2&cd=L053 (검색일: 2018.4.6.)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Self-employed> (2018.04.18. 검색)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stat/documents/normativeinstrument/wcms_087562.pdf (검색일: 2018.4.6.)

<http://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1986> (검색일: 2018.4.3.)

<https://en.wikipedia.org/wiki/Self-employment> (검색일: 2018.4.9.)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99 (검색일: 2018.4.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검색일: 2018.4.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검색일: 2018.04.1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검색일: 2018.04.17.)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5253&pageNo=5&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2018.7.20. 검색)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98 (2018.10.30. 검색).

http://211.253.148.167:8083/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B20503&dbUser=nsisupdb (2018.9. 13.검색)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TX_11811_A009&vw_cd=MT_OTITLE&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H2 (검색일: 2018.05.02.)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 붙임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현황 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1118> (2018.10.30.검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대법원 판례 시 ‘사용종속관계’ 중요 근거, 2017.10.06. 23:20,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684#09ne> (2018.10.30. 검색)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spec/spec2.jsp> (2018.10.30. 검색)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spec/spec3.jsp> (2018.10.30. 검색)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31&tstat=00000110001&cycle=7&year=20170&month=0&tclass1=000001040276&tclass2=000001040283&tclass3=000001040284&result_back=1 (2018.9.3.검색)

[https://content.next.westlaw.com/Document/I2ef1289e1ed511e38578f7ccc38dcbee/View/FullText.html?contextData=\(sc.Default\)&transitionType=Default&firstPage=true&bhcp=1](https://content.next.westlaw.com/Document/I2ef1289e1ed511e38578f7ccc38dcbee/View/FullText.html?contextData=(sc.Default)&transitionType=Default&firstPage=true&bhcp=1)
(2018. 9.20. 검색)

Italy: New rules to protect self-employed workers and regulate ICT-based mobile work,
<https://www.eurofound.europa.eu/printpdf/publications/article/2017/italy-new-rules-to-protect-self-employed-workers-and-regulate-ict-based-mobile-work> (2018. 09. 20. 검색)
 (https://ec.europa.eu/eurostat/web/structural-business-statistics/structural-business-statistics/sme
 2018.9.14.검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name_desc=true (2018.9.17. 검색)
 2,593만명(2017년 기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1_OECD
 (2018.10.12.검색)

Istat(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이탈리아 통계청), 2017년 백서 표 4.2 경제활동 및
 직종별 고용, 2008년, 2015년, 2016년(천 명, %), p.149

<https://www.inps.it/nuovoportaleinps/default.aspx?itemdir=43256> (2018.10.16. 검색)

<https://www.finder.com.au/income-protection-or-workers-compensation-for-sole-traders>
 (2018.10. 12. 검색)

<https://www.rtwsa.com/insurance/insurance-with-us/register> (2018. 10. 10. 검색)

https://www.legislation.sa.gov.au/LZ/V/A/2014/RETURN%20TO%20WORK%20ACT%202014_16/2014.16.UN.PDF (2018.10.08.검색)

<https://www.rtwsa.com/insurance/insurance-with-us/register> (2018. 10. 10. 검색)

<https://www.rtwsa.com/insurance/insurance-with-us/premium-calculations/who-is-a-worker>
 (2018.10.10. 검색)

Cleaning work,A guide to deemed workers,

<https://www.rtwsa.com/insurance/insurance-with-us/premium-calculations/who-is-a-worker>
 (2018.10.10. 검색)

Taxi drivers, A guide to deemed workers,

<https://www.rtwsa.com/insurance/insurance-with-us/premium-calculations/who-is-a-worker>

(2018.10.10. 검색)

ReturnToWorkSA, Industry premium rates 2018-19,

<https://www.rtwsa.com/insurance/insurance-with-us/premium-calculations/industry-classifications-and-rates>

(2018.10.12. 검색)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html/inforce/current/sl-2014-0189#sec.3>

(2018. 10. 30. 최종검색).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html/inforce/current/act-2003-027#ch.1-pt.4-div.3>

(2018.10.12. 검색)

The State of Queensland 2018, Queensland workers' compensation scheme statistics 2017 - 18, 7쪽,

https://www.worksafe.qld.gov.au/__data/assets/pdf_file/0003/167628/wcr-stat-report2017-18.pdf

(2018. 10. 30. 검색)

<http://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2018. 10. 30. 검색)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부 록

부 록

1.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서 양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7. 12. 28.>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특種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X' 표시 합니다.

가입번호	가입일	처리기간 7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장인	우편물 수령지	휴대전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등록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보험가입신청내역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 원
업무 내용	근로시간	부터 까지
사업주 직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아니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도운행차량운행법」에 []예, []아니오	
	본인의 주거지에 임유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예, []아니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예, []아니오	
	본인의 주거지에 임유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예, []아니오	
	자동차의 종류 []노선버스, []비노선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아니오	
	자동차의 종류 []화물자동차(1톤 초과), []화물자동차(1톤 이하), []특수자동차 ()	
[]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아니오	
[] 서비스업자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자동차(1톤 초과),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자동차(1톤 초과), []특수자동차 ()	
[] 서비스기사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자동차(1톤 초과),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자동차(1톤 초과), []특수자동차 ()	
	본인의 주거지에 임유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여부 []예, []아니오	
	예술 분야 []무용, []민속, []사건, []건축, []음악, []국악, []미술, []연극, []영화, []연예, []문화, []기타	
	예술활동 유형 []창작, []실연, []기술지원	
	계약자명	
	계약기간 ~ 계약금액 원	
[] 대리운전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여부 []자동차속 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주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험가입자)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보수율 목록으로 하는 계약 관련 서류(예술인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처리 사항(이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승인 []불승인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3.12.30>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특種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X' 표시 합니다.

가입번호	가입일	처리기간 7일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 원
	업무 내용	
	근로시간	부터 까지
특정업무 종사 여부	[] 분직직업을 수행하는 업무 [] 전통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연(납) 업무 [] 용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특정업무 종사경력	최초 종사연월	년 월
	종사 기간의 합계	년 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험가입자) 년 월 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건강진단서(사업주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멤버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사항(이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승인 []불승인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일본의 산재보험특별가입신청서 양식

(1) 중소기업주용(제1종 특별가입)

労働者災害補償保険 特別加入申請書 (中小事業主等)

就業種別 36211

◎裏面の注意事項を読んでから記載してください。
※印の欄は記載しないください。(職員が記載します。)

① 申請に係る事業の労働保険番号

府	県	市	区	町	村	支	庁	第	一	号	第	一	号
---	---	---	---	---	---	---	---	---	---	---	---	---	---

※受付年月日 平成 7年 0月 0日

② 事業主の氏名 (法人その他の団体であるときはその名称)

③ 由緒に係る事業

名称(フリガナ) _____
 名称(漢字) _____
 事業場の所在地 _____

④ 特別加入予定者 加入予定者数 計 _____ 名 *この用紙に記載しきれない場合には、別紙に記載すること。

特別加入予定者	業務の内容	除染作業	従事する特定業務	業務歴
フリガナ氏名 _____ 1 本人 3 役員 () 5 家族従事者 生年月日 年 月 日	事業主との関係(地位又は続柄) _____ 業務の具体的内容 _____ 労働者の始業及び終業の時刻 時 分 ~ 時 分	1 有 3 無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フリガナ氏名 _____ 1 本人 3 役員 () 5 家族従事者 生年月日 年 月 日	事業主との関係(地位又は続柄) _____ 業務の具体的内容 _____ 労働者の始業及び終業の時刻 時 分 ~ 時 分	1 有 3 無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フリガナ氏名 _____ 1 本人 3 役員 () 5 家族従事者 生年月日 年 月 日	事業主との関係(地位又は続柄) _____ 業務の具体的内容 _____ 労働者の始業及び終業の時刻 時 分 ~ 時 分	1 有 3 無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フリガナ氏名 _____ 1 本人 3 役員 () 5 家族従事者 生年月日 年 月 日	事業主との関係(地位又は続柄) _____ 業務の具体的内容 _____ 労働者の始業及び終業の時刻 時 分 ~ 時 分	1 有 3 無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⑤ 労働保険事務の処理を委託した年月日 _____ 年 月 日

⑥ 労働保険事務組合の証明

上記⑤の日より労働保険事務の処理の委託を受けていることを証明します。

労働保険事務組合 名称 _____
 〒 _____ 電話 () _____
 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 _____
 代表者の氏名 _____ 印

⑦ 特別加入を希望する日(申請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30日以内) _____ 年 月 日

上記のとおり特別加入の申請をします。

〒 _____ 電話 () _____
 年 月 日
 事業主の 住所 _____
 氏名 _____ 印
 (法人その他の団体であるときはその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

折り返す場合は、この所で折り返してください。

(2) 일인친방 등(제2종 특별가입자)

◎裏面の注意事項を読んでから記載してください。

(1) 申請に係る事業の労働保険番号		税 号	所 属 管 轄	基 幹 番 号	枝 番 号
(2) 特別加入団体の名称					
枚中 枚目					
特別加入予定者		業務又は作業の内容			特定業務・給付基礎日額
フリガナ氏名	法第33条第3号に掲げる者との関係	業務又は作業の具体的内容			従事する特定業務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生年月日	1 本人 6 家族従事者 ()				業務歴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フリガナ氏名	法第33条第3号に掲げる者との関係	業務又は作業の具体的内容			従事する特定業務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生年月日	1 本人 6 家族従事者 ()				業務歴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フリガナ氏名	法第33条第3号に掲げる者との関係	業務又は作業の具体的内容			従事する特定業務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生年月日	1 本人 6 家族従事者 ()				業務歴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フリガナ氏名	法第33条第3号に掲げる者との関係	業務又は作業の具体的内容			従事する特定業務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生年月日	1 本人 6 家族従事者 ()				業務歴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フリガナ氏名	法第33条第3号に掲げる者との関係	業務又は作業の具体的内容			従事する特定業務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生年月日	1 本人 6 家族従事者 ()				業務歴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フリガナ氏名	法第33条第3号に掲げる者との関係	業務又は作業の具体的内容			従事する特定業務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生年月日	1 本人 6 家族従事者 ()				業務歴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フリガナ氏名	法第33条第3号に掲げる者との関係	業務又は作業の具体的内容			従事する特定業務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生年月日	1 本人 6 家族従事者 ()				業務歴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フリガナ氏名	法第33条第3号に掲げる者との関係	業務又は作業の具体的内容			従事する特定業務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生年月日	1 本人 6 家族従事者 ()				業務歴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フリガナ氏名	法第33条第3号に掲げる者との関係	業務又は作業の具体的内容			従事する特定業務 1 粉じん 3 振動工具 5 鉛 7 有機溶剤 9 該当なし
生年月日	1 本人 6 家族従事者 ()				業務歴 最初に従事した年月 年 月 従事した期間の合計 年 月 日 希望する給付基礎日額 円

3. 일본의 노재보험특별가입자 현황(2016년)³²³⁾

第 2-2 表 特殊適用状況 (業種別、事業及び作業の種類別中小事業主等特別加入状況)

(平成28年度末現在)

A 中小事業主等

業種	事業主数	家族従事者数	
		人	人
林業	1,937	738	738
漁業	1,635	1,038	1,038
海面漁業	900	500	500
定置網漁業又は海面魚類養殖業	735	538	538
鉱業	284	304	304
金属・非金属鉱業又は石炭鉱業	1	2	2
石灰石鉱業又はドロマイト鉱業	6	8	8
原油又は天然ガス鉱業	1	1	1
採石業	101	108	108
その他の鉱業	175	185	185
建設業	301,716	118,013	118,013
水力発電施設、ずい道等新設事業	10	8	8
道路新設事業	277	162	162
舗装工事事業	1,986	994	994
鉄道又は軌道新設事業	28	18	18
建築事業	207,501	76,996	76,996
機械装置の組立て又は据付けの事業	6,566	2,856	2,856
その他の建設事業	32,335	16,913	16,913
既設建築物設備工事業	53,013	20,066	20,066
製業	100,772	102,230	102,230
食料品製造業	8,386	11,995	11,995
繊維工業又は繊維製品製造業	2,890	3,313	3,313
木材又は木製品製造業	6,590	5,462	5,462
パルプ又は紙製造業	118	152	152
印刷又は製本業	3,799	4,706	4,706
化学工業	1,965	2,435	2,435
ガラス又はセメント製造業	248	291	291
その他の業又は土石製品製造業	1,596	1,289	1,289
金属精錬業	667	320	320
非鉄金属精錬業	180	197	197
金属材料品製造業	435	479	479
鋳物	697	812	812
金属材料品製造業	435	479	479
鋳物	697	812	812
金属製品製造業又は金属加工業	19,235	17,867	17,867
めっき業	563	748	748
機械器具製造業	15,779	15,241	15,241
電気機械器具製造業	6,394	6,038	6,038
輸送用機械器具製造業	16,329	15,895	15,895
船舶製造又は修理工業	2,576	984	984
計量器、光学機械、時計等製造業	1,286	1,582	1,582
その他の製造業	9,184	10,235	10,235
陶磁器製品製造業	135	137	137
洋食器・刀物・手工具等製造業	426	532	532
貴金属製品・装身具等製造業	589	695	695
コンクリート製造業	705	825	825
運輸業	10,487	9,497	9,497
交通運輸事業	1,336	1,603	1,603
貨物取扱事業	9,051	7,813	7,813
港湾貨物取扱事業	61	42	42
港湾荷役業	39	39	39
電気、ガス、水道又は熱供給の事業	150	188	188
その他の事業	214,974	199,711	199,711
清掃、火葬又はと畜の事業	4,746	4,597	4,597
ビルメンテナンス業	5,209	3,170	3,170
その他の各種事業	91,866	77,995	77,995
農業又は海面漁業以外の漁業	14,964	17,956	17,956
9621(土壌の耕作又は植物の保護、植物の害虫駆除の事業)その他の農業	10,934	13,315	13,315
9622(動物の飼育)又は畜産の事業又は養蚕の事業	2,587	2,751	2,751
倉庫・貯蔵・消毒等の事業	1,556	1,149	1,149
通信業、放送業、新聞業又は出版業	850	841	841
卸売業・小売業、飲食店又は宿泊業	90,491	89,554	89,554
9801(医薬品配製販売業)	121	90	90
金融業、保険業又は不動産業	5,292	4,449	4,449
船舶所有者の事業	1,090	878	878
合計	633,045	432,597	432,597

B 一人親方等

事業の種類	団体数	加入者数
個人タクシー・個人貨物運送業者	前第46条の17第1号	179
建設業の一人親方	同条第2号	3,030
漁船による自営漁業者	同条第3号	68
林業の一人親方	同条第4号	108
医薬品の配製販売業者	同条第5号	17
再生資源取扱業者	同条第6号	22
船員法第1条に規定する船員	同条第7号	30
合計	3,454	510,999

C 特定作業従事者

作業の種類	団体数	加入者数
特定農作業従事者	前第46条の18第1号イ	440
指定農業機械作業従事者	同条同号ロ	416
職場適応訓練従事者	同条第2号イ	53
事業主団体等委託訓練従事者	同条同号ロ	103
金属等の加工の作業	同条第3号イ	32
洋食器・刀物等の加工の作業	同条同号ロ	7
履物等の加工の作業	同条同号ハ	5
陶磁器製造の作業	同条同号ニ	1
動力機械による作業	同条同号ホ	13
広壇・食器の加工の作業	同条同号ヘ	1
合計	59	353
労働組合等常勤役員	同条第4号	11
介護作業従事者	同条第5号	294
合計	1,376	114,431

D 海外派遣者

	事業場数		加入者数	
	人	人	人	人
技術協力(JICA等)	76	4,149	8,571	89,414
労働者	8,571	89,414	2,442	6,345
代表者等	11,089	99,908		

E 加入時健康診断実施状況

	じん肺	振動障害	鉛	有機溶剤	計
中小事業主等	1,057	888	20	1,958	3,923
一人親方等	1,758	1,403	64	5,152	8,377
特定作業従事者	4	154	3	1	162
合計	2,819	2,445	87	7,111	12,462

323)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rousai/kanyu.html (2018.10.1. 검색)

4. 일본의 전국 제2종특별가입을 위한 특별가입단체(예시)

지 역	단체명	가입구분
北海道	IM北海道安全協会	一人親方：建設業
北海道	INAXエンジニアリング 北海道施工店建設安全協会	一人親方：建設業
北海道	JA道北なよろ地区 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MK一人親方事務組合	一人親方：建設業
北海道	TMC北海道 農業労災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TSC北海道 建設部会	一人親方：建設業
北海道	あさひかわ農協 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イチヤン地区労災保険 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いぶり中央漁業協同組合	一人親方：漁船による自 営漁業者
北海道	いぶり噴火湾漁業協同組合 伊達支所労災保険加入組合	一人親方：漁船による自 営漁業者
北海道	いわみざわ農協地区労災保険特別加入組 合	特定作業従事者：指定農 業機械作業従事者
北海道	いわみざわ農協地区労災保険特別加入組 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ウトロ漁業協同組合 生産組合	一人親方：漁船による自 営漁業者
北海道	えんゆう特定農作業 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おうむ農協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지 역	단체명	가입구분
北海道	オホーツクはまなす 農業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オホーツク網走地区 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オロロン特定労災保険加入 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オロロン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指定農 業機械作業従事者
北海道	きたみらい農協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きょうわ農協特定農作業 従事者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セーフティパートナーズ 株式会社 北海道事業所	一人親方：建設業
北海道	そらち南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たいせつ 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たきかわ地区特定農作業 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とうや湖 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とうや湖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指定農 業機械作業従事者
北海道	とまこまい広域労災保険 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ながぬま農協地区 労災保険特別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ながぬま農協地区 労災保険特別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指定農 業機械作業従事者

지 역	단체명	가입구분
北海道	ひだか漁業協同組合 三石支所	一人親方：漁船による自 営漁業者
北海道	ひだか漁業協同組合 新冠支所	一人親方：漁船による自 営漁業者
北海道	ひだか漁業協同組合 門別支所	一人親方：漁船による自 営漁業者
北海道	ひだか東農協 特定農作業従事者 特別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ひだか東農業協同組合	特定作業従事者：指定農 業機械作業従事者
北海道	ひやま漁業協同組合 漁船漁業一人親方協議会	一人親方：漁船による自 営漁業者
北海道	ピンネ農協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みついし農協労災保険 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メム地区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ヤマヒサ労災保険組金 北海道支部	一人親方：建設業
北海道	ようてい農協 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阿寒地区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愛別町特定農作業 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旭川大丸ケアサービス株式会社 介護家政婦団体	特定作業従事者：介護作 業従事者

지 역	단체명	가입구분
北海道	旭川地方個人タクシー 協同組合	一人親方：個人タクシー ・個人貨物運送業者
北海道	旭川民主商工会 建設業一人親方 労災保険加入組合	一人親方：建設業
北海道	芦別地区指定機械農作業 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指定農 業機械作業従事者
北海道	芦別地区特定農作業 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伊達市農協 労災保険加入組合	特定作業従事者：特定農 作業従事者
北海道	一人親方 特別加入団体 ティグレ北海道	一人親方：建設業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5. 일본 도쿄도 노동국 일인친방 등 단체 명부(예시)

一人親方等団体名簿

中央署管轄

(2 - 1)

平成30年度 01署

基幹 番号	団体名	郵便 番号	所在地	電話番号	業種
146378	関東中央産業廃棄物 福祉協会	102-0076	千代田区五番町5-6 ピラカーサ五番町 709	5357-1606	特6
292014	神津島漁協 一人親方団体組合	100-0601	神津島村36	04992-8-0007	特3
603901	月島建設業組合	104-0052	中央区月島3-6-1	3531-0335	特2
610726	東管協共済一人親方の会	102-0083	千代田区麴町5-1 NK真和ビル2F	3263-7146	特2

一人親方等団体名簿

中央署管轄

(2 - 1)

平成30年度 01署

基幹 番号	団体名	郵便 番号	所在地	電話番号	業種
611187	友工会	102-0076	千代田区五番町5-6 ピラカーサ五番町 709	5357-1606	特2
620169	関東昇降機工事組合	103-0014	中央区日本橋蛸殻町1 -37 -4 AJ日本橋ビル3階	048-458-5222	特2
620639	東京三工会労災福祉協会	101-0061	千代田区三崎町3-3-1 Tkiビル4階 森 武内 社会保険労務士法人 内	5213-8061	特2
611259	住友林業(株) 林和会	100-8270	千代田区大手町1-3 -2 経団連会館	3214-3792	特2
630170	全建工事技能者組合	101-0027	千代田区神田平河町 1番地 第3東ビル7F	3865-9523	特2
630375	建設業一人親方組合・ 東京	101-0047	千代田区内神田2-3 -9 MECビル 3階	3256-4451	特2
630767	チャレンジ建設業 一人親方の会	101-0037	千代田区神田西福田町 4-3 善幸ビル4階	3526-5410	特2
630778	東京建具一人親方労保 協会	101-0042	千代田区神田東松下町 42	3256-6576	特2
630888	旭興西武関東地区 一人親方組合	103-0004	中央区東日本橋1-1-5 ヒューリック東日本橋ビル8 階	3255-9101	特2
640356	三井住友建設東京建築 支店 真栄会一人親方会	104-0051	中央区佃2-1-6	4582-3185	特2
640511	三和シャッター 取付工事協力会	103-0006	中央区日本橋富沢町10 -16 マイアーク日本橋ビル5 階	5981-6131	特2

一人親方等団体名簿

中央署管轄

(2-1)

平成30年度

01署

基幹番号	団体名	郵便番号	所在地	電話番号	業種
650436	ノバリー一人親方労災保険組合	103-0013	中央区日本橋人形町3-5-4	6661-9346	特2
650547	東京都建設事業 一人親方協会	103-0031	中央区東日本橋2-1 6-4 あきとみビル6階	5829-4349	特2
670161	京橋電設工業 労働保険事務組合	104-0032	中央区八丁堀2-26 -4	3551-9077	特2
670464	IM首都圏安全協会	104-0032	中央区八丁堀3-10 -5 LIXIL東京ビル7階	4335-6731	特2
680277	北野建設(株) 東京地区 北和会 一人親方等団体	104-8116	中央区銀座1-9-2	3562-7379	特2
690157	東京労働福祉協会	104-0051	中央区佃2-19-1- 2704	3534-5198	特2
900168 -001	大和ハウス工業西関東 地区 協力会	102-8112	千代田区飯田橋3-1 3-1 大和ハウス東京ビル	5214-2157	特2
912028 -001	東京都瓦工事職能組合	102-0071	千代田区富士見1-7 -9 東京瓦会館4F	3265-2807	特2

현안분석 18-04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Ⅱ)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18년 10월 28일 인쇄
2018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익현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11,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910-9 93360

저자명(책임)**이 기 평****학 력**

중국 칭화대학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연구
한중 FTA에 대비한 중국의 BIT 모델안
및 기체결 투자협정 연구
한중 FTA 경쟁채터 협상방안 연구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저자명(공동)**김 영 미****학 력**

독일 예나대학 법학박사
(현) 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독일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독일의 건강보험체계와 통일 이후의 제도
변화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독일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BN 978-89-6684-910-9

값 11,000원